

2009년 심포지엄

로스쿨의 현단계를 점검한다.

- 변호사시험과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09년 3월 14일(토) 오후 2시-6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

법과사회이론학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회

< 프 로 그 램 >

1. 등 록 (13:20 ~ 13:40)

2. 개 회 식 (13:40 ~ 14:00)

- ◇ 사 회 : 조 지 만 (총무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개 회 사 : 이 철 우 (부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발표 및 토론

- ◇ 사 회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14:00 ~ 15:40)

* 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

발제 :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최종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제2부 국고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16:00 ~ 18:00)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발제 :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발제 : 신우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희 (인제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주희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제1부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

「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지난 2월 12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2008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하 ‘정부안’¹⁾)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을 가한 「변호사시험법안」(이하 ‘법사위안’²⁾)이 부결된 것을 계기로,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의 「정부안」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문제점을 비판하며 수정안을 제시했고(이하 각각 ‘참여연대안’³⁾, ‘협의회안’⁴⁾), 2008년 12월 1일에 개최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유사한 비판과 제안이 있었지만⁵⁾, 적어도 법사위 내부에서는 그러한 비판과 제안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부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에 큰 이론 없이⁶⁾ 합의했고⁷⁾, 또 원내 절대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안」에 “찬성해달라”고 각별히 당부⁸⁾했기⁸⁾ 때문에, 법안의 부결은 의외의 사태로 받아들여졌다.

더욱 의외인 것은, 본회의에서의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현행 사법시험보다도 과목 수도 더 적”다고 하는 등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과목 수도 더 적고 “현행 사법시험보다도 훨씬 내용이 없는” 시험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험 때문에 “로스쿨 3년 동안 수업 하나도 안 듣고 학원 가서 시험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등 앞뒤도 맞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주장들과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장벽을 만들고 있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에 “가난한 천재들의 신분상승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반대토론의 논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 결국 법안은 재석인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로 부결되었다⁹⁾.

1) 정부, 「변호사시험법안」, 2008.10.20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U0X8R1LOT2W011R5S1O6W4P2W8Z7O7).

2)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 2008.2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U0X8R1LOT2W011R5S1O6W4P2W8Z7O7).

3) 참여연대,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8.11.3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24>).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 수정(안)」, 2008.10.24 (<http://www.leet.or.kr/>).

5) 「제278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1호」, 2008.12.1 (<http://likms.assembly.go.kr/kms-dt/record/data2/278/pdf/278ba0021b.PDF#xml=/xml/123653692111271.xml>).

6) 다만, 법안 부결 이후 법사위 위원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한나라당이 급하다는 이유로 성급히 처리하다 부결되어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로스쿨 가는 길 의외의 복병 만나 첫발부터 어질어질」, 『시사저널』 2009.3.11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63#>).

7) 「제281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 2009.2.12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1/pdf/281ba0004b.PDF).

8) 「로스쿨법, 與 이탈표로 본회의 ‘좌초」, 『연합뉴스』 2009.2.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9938>).

9) 「제281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2009.2.12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

법안 부결 이후 법사위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3월 5일에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제도개선 소위는, 법사위 이외의 의원들의 의견과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3월 20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변호사시험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¹⁰⁾ 법안의 부결로 법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2월 27일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21명이 「변호사시험법안」(이하 「박선영안」)을 발의하여¹¹⁾, 3월 2일에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법」의 제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생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가가 법적으로 미정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 ‘로스쿨’제도의 커다란 맹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변호사시험법」이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는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패가 달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의 「정부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법사위안」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법안의 부결 이후 ‘로스쿨’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혹은 그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판단 위에서, 이 글에서는 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참여연대안」과 「협의회안」을 참조하면서 변호사시험법의 주요 쟁점과 나아가갈 방향에 관해 정리해보기로 한다.

II.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향

한국 ‘로스쿨’제도의 ‘기본설계도’로 기능해온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¹²⁾(이하 「건의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현 제도”로는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되게 된,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이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육’에

data2/281/pdf/281za0006b.PDF).

10) 「제281회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09.2.20 (<http://legislation.na.go.kr/index.jsp>). 제도개선 소위는 “법조인력 임용방식을 포함한 양성제도 개선방안 모색”도 “장기”과제로서 선정하였다. 논의의 순서는 「변호사시험법」 이후로 미루어져 있지만, 판검사 임용이 변호사시험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는 문제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법사위의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1) 박선영 외 21, 「변호사시험법안」, 2009.2.2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OX9K0S2Z2A7A1Y8P0B7A3C1X8K2Y7).

12)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12.31 (http://www.scourt.go.kr/information/jud_rfrm_comm/mtnng_status/1173540_9822.html).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시험’은 그 ‘교육’을 최소한의 형태로 확인하는 절차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은 ‘무겁게’ 만드는 대신 시험은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가위 「건의문」이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충족되어야 할 전제가 있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점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므로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국의 ‘로스쿨’제도는 매우 엄격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과 그 「시행령」은,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1:12 이하, 전임교원 최소 20인 이상, 전임교원 중 실무경력교원 비율 1/5 이상, 법학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 등의 시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의무, 필수 개설 교과목의 지정 등 실로 엄격한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 설치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서 교원에 관한 설치기준 하나만 보더라도, 2003년 8월 현재 ABA(미국법률가협회)의 인증을 받은 미국 로스쿨 183개교 중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로스쿨은 전체의 6.6%인 12개교에 불과하며, 2004년 4월 개교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68개교 중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과대학원은 전체의 31%인 21개교에 불과할 정도이다.

게다가 총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이루어진 인가과정에서 그 기준조차 더욱 엄격해졌다. 인가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는, 특성화,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20과목 이상 외국어 강좌 개설, 여성교수 및 교원 출신대학 다양성 확보, 전임교원 1.5명당 1명의 유급조교 확보, 전임교수 연구실적 5년간 800% 이상, 학생지도센터·육아시설의 설치, 20% 이상 전액장학생, 학생 1인당 실면적 12㎡, 전문도서관 열람석·서고공간·장서수·법학전문사서, 컴퓨터 Lab, 법률데이터베이스, 전용 기숙시설, 법조인 배출실적, 대학전체의 실적, 대학구조개혁 추진실적 등을 일일이 점수화하여 추가하고, 「시행령」의 필수 개설 과목을 필수 개설 필수과목으로, 전임교원 대 학생비율을 1:10으로, 실무경력교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더욱 강화시켜 놓았다¹³⁾. 그 ‘덕분’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러한 초호화판 기준을 초과달성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의 ‘로스쿨’이 되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총입학정원’이라는 특수한 통제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한국에서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국 2,000등 이내’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학생들을 모아 놓고 전 세계 최고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킨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졸업생들로 하여금 ‘무거운’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하는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인 법학교수는 한국에서는 “변호사시험은 필요없다. 로스쿨 졸업으로 충분하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이미 총입학정원제도를 통하여 입학정원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느냐”라고 되묻는다.¹⁴⁾

물론 엄격한 설치기준도 총입학정원도 ‘충실한 교육’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총입학정원이라는 높은 허들을 통과하여 전 세계 최고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킨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입증은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로스쿨’은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점(點)’에서 법률가를 선발하던 제도로부터 ‘로스쿨’이라는

13)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008.10.30.

14) David Lee Mundy, “Yes Graduation Licensure, No Korean Bar Examination?”,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외, 『[국제 심포지엄]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2008.11.17, 99면.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 시스템 속에서 법률가를 길러내는 제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설치·인가 - 교육 - 변호사시험 -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 구성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각각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요소가 돌출해서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요소 중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이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구성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의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학생정원의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그리고 심지어는 “인가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 또한 ‘충실한 교육’을 위해 마련된 장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위의 여러 요소들이 각각 적절하게 기능할 때 비로소 시스템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충실한 교육’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출발점이다. ‘시험’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해오던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 몹시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챙기려면 품이 많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시험’에 의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작동하기 쉽다. 하지만 그래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만일 그럴 요량이면 ‘로스쿨’을 굳이 도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무거운’ 시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로스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시스템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속에서 ‘가벼운’ 시험, 즉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III. 「정부안」의 문제점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는 ‘로스쿨’에 어울리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법안 부결 이후에도 충분히 주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이다.

1. ‘무거운’ 시험

우선 「정부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무거운 시험이 되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의 과목은 선택형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고, 논술형의 경우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 1과목이다. 언뜻 보면 현행 사법시험의 1차(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및 2차(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과목보다 과목수가 줄어든 듯이 보인다. 하지만, 공법 뒤에는 “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 뒤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 뒤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라는 설명이 붙어있다(제9조). 게다가 사법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고 그 사이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실시하는 데 대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도록 되어 있다(제8조 제2항).

* 시험과목 비교

	1차 / 선택형	2차 / 논술형
사법시험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영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정부안」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 민소법), 형사법(형법, 형소법)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소법), 형사법(형법, 형소법), 선택과목 1과목

게다가 「법사위안」에서는 논술형시험에 “실무능력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제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안」에 대해 설명한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에는 어디에도 “실무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왜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는 연수교육 등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이 곧바로 부여된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문서작성 등 실무형 과목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실무관련 문제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고 시험과목의 추가는 시험준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이라는 지적이 각주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¹⁵⁾

2. 법조의 주도

「정부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법조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다시 말해 합격자수의 결정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시험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이다(제15조). 그런데 그 위원장은 사실상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 13명 중 과반수인 7명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제14조 제2·3항). 반면에 4명에 불과한 “법학교수”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 필요도 없고,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 추천을 받을 필요도 없이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4조 제3항).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법무부가 발간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는 다른 조문의 경우와는 달리 제14조에 대해서만은 왜 이러한 조문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이 전혀 실려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례”로서 일본의 「사법시험법」의 관련 조문¹⁶⁾이 인용되어 있을 뿐인데, 그 조문에는 법무부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도 법조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¹⁷⁾

게다가 「법사위안」에서는, 판사·검사 위원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위원 15명 중 9명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의 주도를 더욱 강화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가 제시한 “수정이유”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라는 것이 전부이다¹⁸⁾. 판사·검사 위원을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위원 15명 중 9명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취지의 몰각

15)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 2008.2, 15면.

16) 일본 「사법시험법」 제13조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들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7)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46면.

18)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안 심사보고서」, 2008.2, 27면.

만일 「정부안」이 가결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법시험에서도 치르지 않는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의 선택형 필기시험을 위한 공부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위한 공부의 부담 그리고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의 연속실시에 따른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게 됨으로써, 시험과목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과목들을 공부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실을 떠나 고시학원을 찾는 학생들조차 생겨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는 ‘법정 기술’을 뛰어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사·검사·변호사가 주도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 ‘법정 기술’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들은 지금까지의 ‘로스쿨’ 논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법률가의 숫자를 통제하려고 해왔다는 점에서도 「정부안」은 문제가 있다. 사개위에서 ‘로스쿨’ 숫자통제의 출발점인 총입학정원을 처음 제안하고¹⁹⁾ 그것을 「건의문」 속에서 관철한 것은 대법원이었다. 대한변협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니 총입학정원을 1,200(~1,300)명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²⁰⁾. 「법률」 제정 이후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2007년 10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처음 보고한 “2009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 . . 단계적·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는 안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이었으며, 게다가 “매년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증원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²¹⁾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이 1차보고는 국회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하여 결국 10월 26일에 2차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1차보고에 대해 유일하게 “법조계”는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²²⁾

이러한 경과를 되짚어볼 때, 법조가 주도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이 변호사시험을 더욱 ‘무거운’ 시험으로 만들게 될 것임은 분명하며, 그 점에서도 「정부안」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V. 바람직한 「변호사시험법」의 핵심 요소

1. ‘가벼운’ 시험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에 대한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법학전문

19) 대법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 2004.9.6 (http://www.scourt.go.kr/information/jud_rfrm_com/m/mtnng_status/1172658_9822.html).

20)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 2004.7.5 ;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2004.9.20 ; 대한변협(오욱환), 「로스쿨제도 도입에 관한 우리의 견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法學專門大學院」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료』, 2005.4.21, 183면.

21)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현황 보고」, 2007.10.17.

22)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현황 보고(계속)」, 2008.10.26.

대학원에서는 “실무와의 연계 등을 위해 복수의 법률분야에 걸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본과목은 “복수의 법률분야를 융합하여 출제가 가능하도록” 「정부안」과 같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³⁾ 또한 그러한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게 위해, 「참여연대안」과 같이 예를 들어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라는 식으로 “통합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안」의 ‘선택형 필기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전국에서 2,000등 안에 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택형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관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는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넓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하다고 그 적극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²⁴⁾ 하지만, 8지선다형이라는 ‘초고도의 선택기술’을 요구하는 시험을 통해 과연 그러한 측정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행 사법시험에서도 1차 객관식시험은 2차 주관식시험의 시험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시 말해 채점해야 할 주관식시험 답안수를 최종 합격자수의 5배수 정도에 맞추기 위한 시험관리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별첨 <표 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1981년 이후 사법시험 출원자수, 응시자수 및 1차시험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2차시험 합격률은 20% 전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경우 그렇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총입학정원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의 채점해야 할 논술형 답안의 수가 최종 합격자수의 5배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²⁵⁾

「정부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단답식시험은 합격 결정에는 1/5 밖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수험생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 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⁶⁾ 다만, 일본의 경우 합격자수를 법과대학원 정원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까닭에 합격률이 3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단답식시험은 논문식시험의 채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는 한다. 하지만, 한국은 총입학정원 ‘덕분’에 논술형 필기시험 채점 부담이 애당초 적으므로, 더더구나 선택형 필기시험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다음으로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도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등을 위하여 필수과목 이외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²⁷⁾ 그 도입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표현이 불명확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해 선택과목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런데 특성화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자 그대로 각각 ‘특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별첨 <표 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국제법무, 기업법무, 공익인권법무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특성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는, 비록 특성화분야의 명칭은 같다고 하더라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특성화’를 위해 선택과목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과목의 수는 적어도 25개는 되지 않으면 안

23)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29-30면.

24) 위의 자료, 26면.

25) 단, 합격률을 현저하게, 예를 들어 ‘총입학정원의 50% 이하’로 통제하고,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게 된다면, 늦어도 시험 실시 4년째가 되면 채점해야 할 논술형 답안의 수가 최종 합격자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있다.

26) 後藤昭, 「助走距離とバーの高さは合っているか? - 日本の司法試験制度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외, 『국제 심포지엄]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2008.11.17, 19·25면.

27)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30면.

되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A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없고, 그 시험문제도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A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재학 중에 그 과목을 공부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과목을 또 다시 국가시험으로 쳐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특성화와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선택과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일본의 신사법시험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안」의 시험방법과 시험과목은 일본의 「사법시험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목도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일본 신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은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중 수험자가 미리 선택하는 1과목”이다. 만일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선택과목을 정하게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이들 한정된 선택과목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과목들은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²⁸⁾

2. 교육 주체의 주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확인하는 시험이므로, 그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협의회안」(제13조) 혹은 「참여연대안」(제14조)과 같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 혹은 그에 근접하는 수를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의 추천을 받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위원 중 법조의 비율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안」과 같이 법무부차관을 사실상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위원의 과반수를 법조로 채워할 이유도 없다.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인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애당초 판사·검사가 ‘변호사’ 시험에 관여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후의 판사·검사 임용은 변호사시험과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법시험을 주관해온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의사국가시험 등과 마찬가지로²⁹⁾ 시험 실시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제도의 명기

28)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도 위의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시험 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 ‘로스쿨’에 대한 악영향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설치기준에서는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1:12 이하(실제로는 1:10 이하), 전임교원 최소 20인 이상인 데 대해, 일본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은 1:15 이하, 전임교원 최소 12명 이상이다. 실제로도 일본의 법과대학원 중에는 전임교원이 12인에서 15인 사이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한정하여 시험을 치게 하더라도 ‘로스쿨’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29) 의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에 관한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www.kuksiwon.or.kr/>)이 관장한다.

「정부안」에는 빠져있는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제도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법무부가 주도한 「정부안」에 대한 의구심의 상당 부분은 합격률이 현저하게 낮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위의 III-3에서 적은 것처럼 지금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제도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협의회안」과 같이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라고 법률에 명기하는 것도(제10조 제1항)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수준이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법학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왜 70%나 90%가 아니고 하필 80%인가라는 의문은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정부에게서 얻어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80% 적용”이라는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1차보고서에서이기 때문이다.³⁰⁾

「참여연대안」과 같이 합격률이 아니라 합격점수제도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도(제10조) 방법이다. 다만, 그 경우에는, 역시 「참여연대안」과 같이, 합격점수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또 합격점수가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일정 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1. 제한의 필요성

장기간의 응시로 인해 국가적 인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시기간 혹은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는 단지 시험공부에만 매달렸던 ‘고시낭인’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법학전문석사학위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사자격 없이도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도 기간 혹은 횟수의 제한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즉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의사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90% 이상³¹⁾이 합격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혹은 일정 횟수 동안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만에 하나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응시기간 혹은 횟수의 제한은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

하지만, 「정부안」과 같이 “5년”의 기간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세 차례”로 횟수 제한까지 두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매년 1회 이상”(제4조 제1항) 실시되는 시험을 “5년 내에 세 차례”만 응시하라고 하면, 나머지 적어도 2년 동안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는 이종의 제한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

30)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현황 보고」, 2007.10.17. 연혁적으로 따지면 「법률」 제정 이전에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 80%”를 처음 언급한 것은 대한변협이다.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2004.9.20 참조.

31) 2008년 96.5%, 2009년 93.6%. <http://www.kuksiwon.or.kr/-시험정보-시험통계>.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외에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³²⁾ 하지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면 응시인원이 누적된다고 해서 시험합격률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기간의 제한으로 충분하며 횟수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응시제한은 기간이나 횟수 어느 하나의 제한으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응시횟수보다는 응시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분리의 필요성

하지만, 기간만 제한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과 병행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안」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경우(부칙 제3조 제2항), “5년 내에 세 차례”라고 하는 이중제한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³³⁾

사법시험 응시는 허용하면서 기간만 제한하고 횟수는 제한하지 않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들도 매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5년 내에 네 차례’나 ‘5년 내에 다섯 차례’가 되어도 곤란하다. 변호사시험에 ‘두 차례’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들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당장 시험공부를 위해 강의실을 떠나겠다는 학생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학생들이 자퇴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지 모를 편입학 소동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5년 내에 세 차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생으로 하여금 사법시험 응시의 유혹을 ‘한 차례’ 이하로 억누르게 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서 수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교육지책은 어디까지나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기간에만, 「정부안」에 따른 경우 2017년까지만 설득력을 가진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에도, 사법시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하여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게다가, 변호사시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취지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지금까지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낡은 제도의 핵심인 사법시험제도와는 ‘다른’ 제도이다. 그렇다면, 비록 과도기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시험에 의한 선발’과 21세기의 ‘교육에 의한 양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정부안」이, 사법시험의 병행 실시 기간을 2017년까지로, 사개위 「건의문」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보다 4년이나 늘려 잡은 것도, 그럴 때에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32)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008.10, 4면.

33) 위의 자료, 같은 면.

그 점에서, 「협의회안」(제5조, 부칙 제4조)과 「참여연대안」(제5조, 부칙 제4조)처럼, “세 차례”를 삭제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법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총입학정원보다 더 ‘위헌적’이지는 않다.

다만, “세 차례”의 삭제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추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삭제만 하고 추가는 하지 않는다면, 최악이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들이 ‘마음놓고’ 사법시험도 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적어도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되는 기간 동안은, 「정부안」의 “5년 내에 세 차례”가 상대적으로 낫다.

VI.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여부

1. 예비시험제도 도입 불가

법안 부결 이후 일각에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서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4일에는 전국의 55개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 협의회 준비모임이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³⁴⁾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지난 2월 25일 “예비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와 모순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³⁵⁾

우선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생각할 때,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지금까지의 ‘시험에 의한 선발’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게 될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로스쿨’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전제로 하는 이상, 예비시험은 「박선영안」과 같이 “헌법, 민법, 형법, 영어”만으로 구성되는(부칙 제5조) ‘가벼운’ 시험이 될 수 없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려면, 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의 예비시험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사법시험법」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합격하면 법과대학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으로서(제4조 제1항), 그 응시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구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부칙 제9조). 1차로 단답식시험(헌법·행정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일반교양과목)을 실시하고, 단답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2차로 논문식시험(단답식 과목과 법률실무기초 과목)을 실시하며, 논문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3차로 구술시험(법률실무기초 과목)을 실시한다(제5조).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 이유

34) 「법과대 협의회 “법학도에게 예비시험 보장해야”, 『법률저널로스쿨』, 2009.3.6 (http://www.newslaw.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1005210010&tblName=tblNews&pressNum=00521&pressDate=2009-03-06&photoYN=Y).

35)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2009.2.25, 1면.

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데다,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식과 그 응용능력 및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지를 판정”해야(제5조 제1항)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비시험은 말하자면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이므로 그 합격자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³⁶⁾

한국에서도 예비시험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같은 형태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까지는 예비시험을 실시할 근거가 없으니 도입하더라도 사법시험 폐지 이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험이라면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기 어려울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목과 방법은 사법시험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등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일반교양과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3년간 배우는 기본법학과목은 물론이고 실무기초과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쌍방향·다방향의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은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동등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구술 시험도 치러져야 할 것이다.

예비시험이 실시되면, 사법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과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이고, 다양한 전공의 대학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며, 응시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도 기웃거리게 될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을 가지는 동안은 응시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 혹은 응시횟수 제한을 통과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예비시험을 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없으니 그들 또한 몰리게 될 것이다. 시험과목과 방법은 사법시험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어디까지나 ‘우회로’인만큼 선발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쟁률은 현재의 사법시험보다 더 높을 것이며, 그 결과 ‘고시학원’은 지금보다 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시험과목과 방법을 더 약화시키고 선발인원을 늘려 잡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진학하더라도 굳이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며, 많은 비용만 치른 채 ‘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비시험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낭인’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예비시험 낭인’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2. 총입학정원 폐지의 필요성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자격자에게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로스쿨 총입학정원’이라는 잘못된 제도를 도입한 데 있다. 국가가 총입학정원을 통제해서 그 이상은 절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총입학정원 때문에 대학들이 과열유치 경쟁에 나섰고, 설치인가 기준이 미국이나 일본의 그것보다도 훨씬 높아졌고, 그 결과 수업

36) 일본의 예비시험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中西一裕, 「司法試験予備試験をめぐる諸問題」, 『法曹養成対策室報』 3호, 2008 (<http://www.nichibenren.or.jp/ja/publication/books/data/housou3-1.pdf>) 참조.

로마저 뛰어올라, 국민들의 로스쿨 입학 가능성, 다시 말해 변호사자격 취득 가능성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총입학정원을 폐지하고, 설치인가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호는 충분히 넓어질 수 있다. 그 위에 정부가 이미 약속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대여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로 근무하게 하는 공익변호사제도와 결합하게 되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방법이다. 예비시험 도입론자들은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인 지금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한국사회는 변호사자격에 관한 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도 아니다. 별첨 <표 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평균연령은 만 30세 전후이다. 이것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활비, 책 값, 학원비 걱정 없이 시험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미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변호사자격 취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이미 더 유용하다. 모든 로스쿨은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 정원의 5% 이상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³⁷⁾. 그렇게 해서 선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는 법률가의 길을 꿈꿀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위에서 제시한 총입학정원의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들의 꿈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서, 원하는 국민 누구나가 「교육을 통한 양성」 과정을 거쳐 우수한 법률가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내세워 「교육을 통한 양성」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뿐,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VII. 맺음말

변호사시험이 최소한의 기본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 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시험이 되도록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와 함께, 총입학정원을 폐지하고, 설치인가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야간법학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게 하고, 공익변호사제도와 결합된 경제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험을 쳐야만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을 쳐야만 공부를 한다’라는 낡은 ‘신화’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낡은 ‘신화’를 버리는 것은 단지 법조의 과제만이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법조/비법조의 구별이 의미가 없게 된 법학전문대

37)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007.10.30, 8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결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정원의 6%(125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법」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제정하라」, 2009.2.25, 4면.

학원 교수들의 과제이다. 바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게 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들이 법조의 주도 아래 ‘제정되고 말’ 「변호사시험법」에 맞추어 ‘합격률 1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생각만 한다면, 한국에서의 ‘로스쿨’ 정착은 그만큼 요원하다. 반대로 그들이 ‘이것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이다’라고 변호사 자격의 핵심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변호사시험에서 그 기본을 검정하도록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한다면, 한국의 ‘로스쿨’은 그만큼 빨리 정착되게 될 것이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또 무책임하기도 하다. 법률가의 양성은 법률가의 ‘자기재생산’이다. 자기재생산을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방해한다면, 이미 생명체로서의 자격이 없을 터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어떤 법률가를 가지는가는 곧 국가와 사회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 ‘로스쿨’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변호사시험법」을 올바르게 제정하는 것은, 단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대립구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대립된다. 총입학정원의 구조 속에서 인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이미 ‘독과점의 은총’을 누리는 입장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학부의 법학교육은 더 이상 필요없다’라는 천박한 주장이 횡행하는 가운데, 법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이라는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비로스쿨’ 법과대학들의 입지는 좁아져버렸다. 하지만, 잘못된 구조 때문에 주어지는 ‘특혜’를 즐기는 것도, 잘못된 구조를 더 뒤틀자고 하는 것도 법학교수가 할 일이 아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때 얼마나 뒤틀린 결과가 뒤따르는지는, 지금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것 아닌가?

<표 1> 사법시험 합격자수 및 합격률³⁸⁾

연도	회수	출원자수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최종 합격 자수	최종합 격률 (%)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1963	1	4,176(466)	3,450	1,471	42.64	2,115	41	1.94	41	0.98
1963	2	3,732(1,325)	2,318	1,205	51.98	2,530	45	1.78	45	1.21
1964	3	4,969(1,067)	3,770	781	20.72	1,848	10	0.54	10	0.20
1964	4	4,214(725)	3,251	461	14.18	1,186	22	1.85	22	0.52
1965	5	2,141	2,141	475	22.19	408	16	3.92	16	0.75
1966	6	2,370(423)	1,858	470	25.30	756	19	2.51	19	0.80
1967	7	2,820(430)	2,304	491	21.31	835	5	0.60	5	0.18
1967	8	2,466(161)	1,837	473	25.75	779	83	10.65	83	3.37
1968	9	2,599(396)	2,070	447	21.59	736	37	5.03	37	1.42
1969	10	2,363(372)	2,363	629	26.62	750	34	4.53	34	1.44
1970	11	2,561(511)	2,326	520	22.36	930	33	3.55	33	1.29
1970	12	2,786(408)	2,531	762	30.11	944	50	5.30	49	1.76
1971	13	2,776(709)	2,629	420	15.98	962	80	8.32	81	2.92
1972	14	3,514(377)	3,215	577	17.95	829	80	9.65	80	2.28
1973	15	4,072(503)	3,614	430	11.90	787	60	7.62	60	1.47
1974	16	4,010(376)	3,311	498	15.04	705	60	8.51	60	1.50
1975	17	4,119(452)	3,344	424	12.68	747	60	8.03	59	1.43
1976	18	4,498(376)	3,625	405	11.17	653	60	9.19	61	1.36
1977	19	4,119(452)	4,011	541	13.49	801	80	9.99	80	1.94
1978	20	5,387(488)	4,153	521	12.55	912	100	10.96	100	1.86
1979	21	5,788(479)	4,506	564	12.52	929	120	12.92	120	2.07
1980	22	6,658(502)	4,868	575	11.81	986	141	14.30	141	2.12
1981	23	7,983(523)	6,805	785	11.54	1,227	316	25.75	289	3.62
1982	24	9,272(663)	7,386	830	11.24	1,350	307	22.74	300	3.24
1983	25	9,785(723)	8,450	722	8.54	1,353	306	22.62	300	3.07
1984	26	11,600(621)	9,870	816	8.27	1,365	353	25.86	303	2.61
1985	27	11,743(706)	10,089	755	7.48	1,401	312	22.27	298	2.54
1986	28	13,635(688)	11,708	791	6.76	1,373	309	22.50	300	2.20
1987	29	14,252(711)	11,973	732	6.11	1,381	311	22.52	300	2.10
1988	30	13,568(677)	11,209	818	7.30	1,419	310	21.85	300	2.21
1989	31	13,429(773)	11,237	714	6.35	1,417	311	21.95	300	2.23
1990	32	14,365(676)	11,697	830	7.10	1,425	298	20.91	298	2.07
1991	33	15,540(771)	12,925	741	5.73	1,468	287	19.55	287	1.85
1992	34	16,424(707)	13,958	821	5.88	1,488	288	19.35	288	1.75
1993	35	18,232(759)	15,516	777	5.01	1,492	288	19.30	288	1.58
1994	36	19,006(730)	16,390	850	5.19	1,530	290	18.95	290	1.53
1995	37	20,737(803)	16,879	1,052	6.23	1,856	308	16.59	308	1.49
1996	38	22,771(1,012)	18,572	1,250	6.73	2,198	502	22.84	502	2.20
1997	39	20,551(1,166)	15,568	1,865	11.98	2,949	604	20.48	604	2.94
1998	40	20,755(1,765)	15,670	2,662	16.99	3,558	700	19.67	700	3.37
1999	41	22,964(1,786)	17,301	2,127	12.29	3,554	709	19.95	709	3.09
2000	42	23,249(2,001)	16,218	1,985	12.24	3,762	801	21.29	801	3.45
2001	43	27,625(2,351)	22,365	2,406	10.76	4,578	991	21.65	991	3.59
2002	44	30,024(2,368)	24,707	2,640	10.69	4,764	999	20.97	998	3.32
2003	45	30,146(2,658)	24,491	2,598	10.61	5,012	905	18.06	906	3.01
2004	46	18,894(2,576)	15,446	2,692	17.43	5,028	1,009	20.07	1,009	5.34
2005	47	21,585(2,395)	17,642	2,884	16.35	5,038	1,001	19.87	1,001	4.64
2006	48	21,210(2,575)	17,290	2,665	15.41	5,007	1,002	20.01	994	4.69
2007	49	23,430(2,398)	18,114	2,808	15.50	5,024	1,008	20.06	1,011 (6) ³⁹⁾	4.31
합계		574,913	466,971	53,756	11.51	94,145	16,061	17.06	15,911	2.77

38) 이 표는 대법원,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 공개토론회(2003. 7. 25)결과보고서 -』(2003) 204면의 표 및 법무부 사법시험 사이트(<http://www.moj.go.kr/barexam/>)-자료실-통계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39) 2007년 최종합격자수 중 괄호 안의 수는, 1981년 및 1982년에 시국관련 시위전력을 이유로 제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 중, 법무부가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함으로써 추가합격한 사람들의 수이다.

* 출원자수 중 괄호 안의 수는 1차시험 면제자수임. 단, 1965의 출원자수는 1차시험 면제자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임.

** 최종합격률 = 최종합격자수 / 출원자수

<표 2>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분야⁴⁰⁾

대 학 명	정 원	특 성 화 분 야
서 울 대	150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고 려 대	120	GPL(국제법무)
성균관대	120	기업법무
연 세 대	120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이화여대	100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 양 대	100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경 희 대	60	글로벌 기업법무
서울시립대	50	조세법
아 주 대	50	중소기업법무
인 하 대	50	물류법, 지적재산권
중 앙 대	50	문화법
한국외대	5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강 원 대	40	환경
건 국 대	40	부동산관련법
서 강 대	40	기업법(세부특성화 : 금융법)
충 남 대	100	지적재산권
충 북 대	70	과학기술법
전 남 대	120	공익인권법
전 북 대	80	동북아법
원 광 대	60	의생명과학법
제 주 대	40	국제법무
경 북 대	120	IT법
영 남 대	70	공익·인권
부 산 대	120	금융·해운통상
동 아 대	80	국제상거래법

다.
4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초안)」, 2009.3.

<표 3> 사법연수생 연령구성⁴¹⁾

입소연 도	기수	연 령 별 (입소당시 기준)				계	평균 연령
		24세 이하	25-27세	28-30세	31세 이상		
1983	14기	43	110	71	87	311	28.45
1984	15기	57	107	56	79	299	28.01
1985	16기	71	100	76	60	307	27.61
1986	17기	147	86	54	22	309	25.63
1987	18기	131	83	49	33	296	25.71
1988	19기	119	81	56	47	303	26.31
1989	20기	74	110	61	59	304	27.31
1990	21기	79(26.3)	105(35)	60(20)	56(18.7)	300	25.72
1991	22기	57(19.2)	127(42.8)	53(17.8)	60(20.2)	297	27.52
1992	23기	72(24.9)	94(32.5)	69(23.9)	54(18.7)	289	27.35
1993	24기	39(13.3)	92(31.4)	80(27.3)	82(27.9)	293	28.35
1994	25기	53(18.7)	101(35.6)	80(28.2)	50(17.6)	284	27.37
1995	26기	34(11.7)	95(32.7)	90(30.9)	72(24.7)	291	28.18
1996	27기	30(9.5)	105(33.3)	100(37.7)	80(25.4)	315	28.48
1997	28기	39(7.9)	143(28.8)	142(28.6)	172(34.7)	496	29.20
1998	29기	50(8.4)	151(25.5)	163(27.5)	228(38.5)	592	29.58
1999	30기	57(8.2)	200(28.8)	208(30)	226(33)	694	29.25
2000	31기	44(6.13)	217(30.26)	223(31.10)	233(32.51)	717	29.29
2001	32기	70(8.74)	219(27.34)	237(29.59)	275(34.33)	800	29.22
2002	33기	44(4.51)	210(21.51)	293(30.02)	429(43.96)	976	31.21
2003	34기	51(5.24)	239(24.59)	301(30.97)	381(39.20)	972	29.95
2004	35기					887	30.17
2005	36기					987	29.88

*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별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41) 이 표는 2007년 2월 20일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의 관련 사이트(<http://jrti.scourt.go.kr/intro/situation.asp?flag=6>)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009년 3월 12일 현재, 관련 자료는 위의 사이트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또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교수, 교직원, 법관만이 회원가입”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료실” 이외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의 다른 사이트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표 4> 「변호사시험법」 조문대비표

정부안 (2008.10.20)	법사위안 (2009.2.12)	박신영안 (2009.2.27)	협의회안 (2008.11.3)	참여연대안 (2008.11.3)
<p>법률명 : 변호사시험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p> <p>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p>	<p>법률명 : 변호사시험법</p> <p>제1조 (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과동)</p> <p>제3조(과동)</p> <p>제4조(과동)</p> <p>제5조(과동)</p>	<p>법률명 : 변호사시험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제3조(시험실시기관) ①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4조(과동)</p> <p>제5조(과동)</p>	<p>법률명 : 변호사자격시험법</p> <p>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p> <p>제3조(정부인과 동일)</p> <p>제4조(과동)</p> <p>제5조(과동)</p>	

<p>러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보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p>러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포함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보조윤리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제6조(좌동)</p>	<p>제6조(좌동)</p>
<p>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p>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p>제7조(응시기간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보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p>	<p>제7조(응시기간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보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p>	<p>제7조(응시기간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보조윤리 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p>

<p>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의 말일부터 5년 내에 세 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는 것으로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p>②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p>
<p>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날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p>②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성적 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은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적 정제과목,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는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p>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적 정제과목,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는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
<p>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날의 말일부터 5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험과목) ① 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적 정제과목, 분석, 추론, 해결 및 논술의 능력을 판정하는 시험으로서,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는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함하는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

<p>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p>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합격점수, 각 과목별 합격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
<p>3.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정적순으로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1항의 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합격점수, 각 과목별 합격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배점의 5할을, 합격점수는 전 과목 배점합계의 8할을 초과할 수 없다.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p>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및 그 밖의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정한다.</p> <p>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 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범조윤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p> <p>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11조(좌동)</p> <p>제12조(좌동)</p> <p>제13조(좌동)</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p>	<p>제11조(좌동)</p> <p>제12조(좌동)</p> <p>제13조(좌동)</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국법학교수회의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3.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p>	<p>제11조(좌동)</p> <p>제12조(좌동)</p> <p>제13조(좌동)</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7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p>	<p>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11조(좌동)</p> <p>제12조(경부안과 동일)</p> <p>제13조(경부안과 동일)</p> <p>제14조(변호사자격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자격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6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p>
<p>정한다.</p> <p>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 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범조윤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p> <p>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제11조(좌동)</p> <p>제12조(좌동)</p> <p>제13조(좌동)</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국법학교수회의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3.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p>	<p>제11조(좌동)</p> <p>제12조(좌동)</p> <p>제13조(좌동)</p> <p>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7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p>	<p>제11조(좌동)</p> <p>제12조(경부안 제12조 삭제)</p> <p>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출제를 담당하는 시험위원과 채점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겸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11조(좌동)</p> <p>제12조(경부안과 동일)</p> <p>제13조(경부안과 동일)</p> <p>제14조(변호사자격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자격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6명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p>

<p>다) 4명 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1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4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면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다) 4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4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위원이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 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명 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5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체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4조(과동)</p>	<p>제15조(과동)</p>
<p>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5조(정부안과 동인)</p>	<p>제15조(과동)</p>	<p>제15조(과동)</p>	<p>제16조(과동)</p>

<p>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에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에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에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에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에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	---	---	---	---	---	---	---	---	---	--	--	--	--

<p>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체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범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 법은 폐지한다.</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제19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부칙</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좌동)</p> <p>제4조(좌동)</p> <p>제3조(사법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별)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p> <p>제4조(좌동)</p>
<p>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체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범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 법은 폐지한다.</p> <p>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부칙</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좌동)</p> <p>제4조(좌동)</p>	<p>제19조(좌동)</p> <p>제20조(좌동)</p> <p>부칙</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좌동)</p> <p>제4조(좌동)</p>	<p>제20조(좌동)</p> <p>제21조(좌동)</p> <p>부칙</p> <p>제1조(좌동)</p> <p>제2조(좌동)</p> <p>제3조(좌동)</p> <p>제4조(좌동)</p> <p>제3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p>

<p>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②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p>		<p>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제2항 삭제)</p> <p>제5조(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총입학정원을 4,000명 이상으로 정하고, 그 최초입학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도 이 법에 따른 시험(이하 “변호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p> <p>② 예비시험의 시험실시기관, 시험의 실시 및 공고 등은 이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사법시험법」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중이거나 졸업한 사람과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p> <p>③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과목은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며, 총독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 이 경우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해당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소명방법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④ 예비시험의 합격 결정은 이 법</p>	<p>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제2항 삭제)</p> <p>제4조(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p> <p>(제2항 삭제)</p> <p>제4조(법학전문대학원 재적자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	--	---	---	---

<p>제4조(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범시험법」에 따른 사범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범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제5조(좌동)</p>	<p>제10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은 “예비시험”으로 보고, 법조윤리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p> <p>⑤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은 “예비시험에 합격한”으로 본다.</p>	<p>제5조(좌동)</p>	<p>제5조(좌동)</p>
<p>제5조(사범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범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범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범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좌동)</p>	<p>제6조(좌동)</p>	<p>제6조(좌동)</p>	<p>제5조(좌동)</p>
<p>제6조(사범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범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범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범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좌동)</p>	<p>제7조(좌동)</p>	<p>제6조(좌동)</p>	<p>제6조(좌동)</p>
<p>제6조(사범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범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범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범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 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좌동)</p>	<p>제7조(좌동)</p>	<p>제6조(좌동)</p>	<p>제6조(좌동)</p>

(정부안 제5조 삭제)

토 론 문

신 양 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1. 들어가는 말

법전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도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과거의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안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 밝힌다.

2. 개별적 검토

(1) 일반적 검토사항

전체적으로 협의회의 안에 동의한다. 예컨대 시험실시기관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의사, 한의사 등의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약칭 '국시원')과 같이 별도의 시험관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험실시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위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예정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응시기간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5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근거가 합격률의 문제인지 고시낭인 양산의 문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후자라면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제도화시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제한의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시험과목

① 필기시험 외에 법조윤리시험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필기 이외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구술시험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술시험에서 굳이 법조윤리만 평가하기보다는 법조윤리를 포함하여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②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협의회 안처럼 선택형을 제외하고 논술형만 치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의사시험의 경우 3과목(의학총론 2, 의학각론 5, 보건의약관계법규 1) 550문항을 전부 객관식으로 하고 있으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암기가 필요한 의학지식과는 달리 논리적 추론 등이 중요한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논술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능력 평가는 논술형의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법사위안은 따르기 어렵고 앞서 지적한 구술시험의 방식으로 법조윤리와 함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선택형을 존치한다면 적어도 과목수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고 기본3법에 대해서만 기본적 사항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③ 졸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에 대해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범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전원 교육에 대한 외부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항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특히 시험과목 이외의 교과목의 경우) 성적이 일정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학원 내에서 유급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④ 시험과목에 대한 문제는 출제수준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과목을 축소해도 출제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학회의 주도로 전공분야별 출제수준에 대한 워크숍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3)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위원회 구성은 합격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므로 가능한 한 법전원의 의사가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법학교수회가 아닌 법전원협의회가 법학교수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숫자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직역별 안배에 비추어 곤란하다면 적어도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합하여 과반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교수가 법전원에 대거 영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교수와 변호사를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비율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교수 4인, 법원 1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교육공무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4인)

(4) 합격률 내지 합격점수의 문제

합격률(80%)이나 합격점수를 명기하는 방법도 시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에 집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합격률 명시는 자격시험을 정하는 법이 가지는 일반적 입법방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합격률을 명시하지 않은 의사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한 국가시험 통계를 보면 2005년 이후 5년간 의사시험의 경우 평균 93.6%, 치과의사시험의 경우 90.5%로 나타나 있다.

합격점수를 명기하는 방식은 최소한도의 자격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합격점수는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의사시험의 경우 전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다른 관련법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5) 부칙 관련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예정인 자의 상당수가 법전원에 입학한 상태에서 법전원 재적자에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일본이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제도도입의 주된 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이미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예비시험 제도도 그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등

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비시험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과연 비인가대학의 법과대학이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있을 지도 모를 극소수를 위해 법전원 제도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시험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비생산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3. 맺음말

변호사시험제도를 파이 굵는 일에 비유한다면, 법안의 검토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통해 질 좋은 파이를 굵는 방법을 논의하는 장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질 좋은 파이를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저 모양 좋은 파이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뒀으로써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학계 내부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상호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개별 내용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기 전에 무엇보다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법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많은 기준들을 거의 '만점' 수준에서 충족시키면서 출발하고 있다. 20% 이상의 실무교수들, 특성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과정의 수립, 교원책임시간의 제한, 대학 내 다른 구성원들이 불만을 제기할 정도의 법전원에 대한 특혜(?), 학부나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장학제도 등은 현상적으로 과거의 법학교육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큰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잘 정비된 하드웨어를 토대로 내실 있는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장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 일단 교육을 책임질 주체들의 생각을 우선 시켜 시험법안을 만들고 시행에 따라 드러나게 될 문제점은 3년이나 그 후에 다시 검토하는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협의회 차원에서도 현실 정치권이나 비인가대학 등의 관심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기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타협과 절충의 자세로 대응하는 탄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009.3.14.

‘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 발제에 대한 토론

염 형 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로스쿨 제도도입의 주된 취지는 정부가 제출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2. 변호사시험법의 기본방향

따라서 변호사시험제도 또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충실한 법학교육’과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로스쿨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3차에 걸친 시험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자만을 뽑는 ‘선발시험’과는 다른 설계가 필요하다. 즉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에 관한 법률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현·민·형을 중심으로 한 기본 7법에 관하여 지나치게 어렵게 평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기본 7법에 관해 지나치게 어렵게 평가하는 방식의 시험이 되면 로스쿨 학생들은 기본 7법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3. ‘변호사시험법’이라는 별도 입법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정부안이나 법사위안 로스쿨협의회안, 참여연대안은 모두 기존의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아닌 ‘변호사(자격)시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변호사 자격시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변호사법에 자격과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률로 만들 필요나 이유가 없다. 기존의 직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시험은 의료법에, 변리사시험은 변리사법에, 법무사시험은 법무사법에 규율되어 있고 자격시험과 해당 직업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율된 법은 없다.

4. 시험과목 및 방식

시험과목 및 방식에 관하여 로스쿨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과목과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시험과목대로라면 로스쿨 수업은 등한시 한 채 사설학원에만 매달리게 될 것”, 혹은 “과거 사법시험으로 인한 법과대학의 수업과행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성화 내용과 전문성을 변호사 시험으로 가려내겠다고 하는 발상은 기존 사법시험과 같이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발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로스쿨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이 되어야 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려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5.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에 있어서 사법시험의 응시문제를 제쳐놓고 변호사시험만의 문제로 한정해놓고 보는 경우에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이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학부에서의 4년, 로스쿨을 준비하는 기간, 로스쿨에서의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에도 거액의 비용까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법무부의 주장대로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한다거나, 변호사 자격 없이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장기간 응시로 인해 국가적 인력 낭비가 초래된다고 하면서 응시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으로 국한하여서는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6.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문제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문제에 관하여 기존 정부안 부칙 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1항).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 제7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로스쿨 학생들의 사법시험 응시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로스쿨에서의 ‘충실한 법학교육’은 형해화되고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사법시험 응시를 막는 것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다.

좀더 넓게 보자면 학부의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기대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첫째 입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는 2012년 이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과 병행되는 시기를 정부안대로 2017년까지로 할 것이 아니라 2~3년 정도로 최소화시키

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에서도 현행 시법시험의 존치시기를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5년까지로 잡고 있다. 정부안대로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치루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제도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 결코 이롭지 않다.

7. 응시자격(예비시험 도입 여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 일각에서 ‘가난한 천재가 법조인이 되는 길을 차단한다.’,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로스쿨 이외에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변화된 이상 로스쿨 제도에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로스쿨 내에서 풀어야 하고 예비시험이라는 별도의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누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변호사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예비시험을 인정하는 의료법 제5조와의 형평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료법 5조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예비시험을 통해 국내 의료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가난한 천재가 법조인이 되는 길’을 열고, ‘국민들의 판·검사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변호사가 되는 사람에게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로스쿨의 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학생으로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입장

최종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우선 본 심포지움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법과사회이론학회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법의 쟁점과 방향에 대해 예리한 논증을 제공하신 김창록 교수님께 경의를 표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토론문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의 대표가 아닌 학생의 일원으로서 주관성이 배제된 외면적인 현상에 대한 보고나 불확실한 견해의 제공을 지양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결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대관계들을 의식하고 그것들 위에서 수립된 관점 하에¹⁾ 각 로스쿨의 전문자료들을 포함,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1.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현재 개교 2주차를 맞이한 각 로스쿨들에서는 의미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주목해 볼 만한 움직임은 일부 로스쿨의 학회, 동아리 및 스터디의 활발한 결성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기업금융법학회, 인권법학회, 과학기술과 법학회가 이미 결성되었고²⁾ 민법학회가 논의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공익인권법학회, 국제거래통상법학회, 금융경제법학회, 지적재산권법학회, Global Legal Clinic, 영문법률저널, 신문사 등이 결성되었다.³⁾ 연세대학교 로스쿨에서도 공익인권법학회를 필두로 국제기구학회, M&A학회, 기업금융법학회, 독서토론모임, 영문법률저널이 이미 결성되었다고 한다.⁴⁾ 이에 더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 방식을 효과적으로 수강하기 위한 학습모임이 조별로 또는 수업별로 결성되고 있으며, 일부는 교수들이 결성을 독려한 결과지만 대부분 자발적인 모임으로 구성되어 판례 검토 및 보충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새 학교에 적응할 학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회와 학습모임의 활발한 결성은 법학사들의 주도가 제한적인 점으로 보아 로스쿨 구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법학사들의 강한 학구열과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각기 특성화를 지향하는 분야의 학회 결성 또한 선발된 1기생들의 강한 특성화 달성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이 과거 「정부안」 및 「법사위안」 변호사시험법 제8조에 규정된 시험의 방식이다. 지난 2월 12일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법사위안」은 주지하다시피 7법을 포함하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실무능력평가를 포함한 논술형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비법학사 학생들은 현재 토론식 수업방식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형 필기시험의 도입에 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일부 비법학사 학생들은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선행학습과정과 별도로 과외 또는 학원 교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사법시험용 수험서 또는 수험용으로 사용되던 교과서 및 강의테이프를 사는 모습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박선영안」이 시험 방식을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정하였지만, 법조인력

1) J.G. Droysen, Historik에서의 '객관성'에 대한 드로이젠의 입장, [역사학개론] (이상신 저, 2005)에서 재인용.
2) 각 학회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인권법학회 26명, 기업금융법학회 36명, 과학기술과 법 학회 19명.
3) 각 학회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공익인권법학회 미상, 국제거래통상법학회 약 30여명, 금융경제법학회 약 10여명, 지적재산권법학회 7명 내외, Global Legal Clinic 25명 (기존활동인원 포함), 영문법률저널 10여명 내외. 그 외에도 각종 체육동아리와 종교모임의 결성이 보고되었다.
4) "[연세대 라이프] 개강 첫 주, 치열한 3월" - <http://www.whylaw.net/2268>

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을 재도입한 안을 발의할 경우, 언론 보도가 기사 제목으로 쓴 바와 같이 세계 최고의 시설 및 인력 인가기준을 갖춘 한국형 로스쿨이 고급 고시학원화되는 것과 비법대생의 선발 기피풍조 강화는 필연적으로 예측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상당수 로스쿨에서 아직 토론식 수업 방식이 교수 및 학생들 양자가 모두 적응하지 못한 상황이 '자격시험'화 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현실과 맞물려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열정적인 학습 의지를 감퇴시키고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

2. 더욱 우려되는 바는 과거 「법사위안」과 현재 「박선영안」이 과목별 배점 비율 / 과락 점수 / 시험 합격 점수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상당수 로스쿨, 특히 비수도권 로스쿨에서 '관리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리형 교육체제'는 겨울방학 동안의 선행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을 이미 입학 전에 실시한다거나, 높은 재시험 비율 / 학점 부과 비율 (30%) 및 유급 기준, 임의 분반 및 과목 배정, 선택과목 개설의 미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로스쿨에서는 여름방학 동안에도 강도 높은 선행학습프로그램을 예고하고 있어 특성화에 대해 강한 의욕을 갖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학사행정의 자율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전체 로스쿨별 '서열'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기대가 엄존한 상황에서 변호사시험법이 합격률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창록 교수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이는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시험'에 의지하려고 하는 '관성'으로, 로스쿨을 학교별 문화, 특성화 분야 및 졸업생 진출 분야로 평가받으려는 대신 손쉬운 합격률 평가에 의존하려는 결과로 보인다. 결국 '관리형 교육체제'는 애초 로스쿨이 의도한 풍부한 교양과 인간애 및 민주적 가치관을 갖춘 법조인의 배출을 막고, 극도의 효율성 추구하고 무한경쟁에 익숙한 사법시험형 법조인을 다시 양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로스쿨 지망생들의 입학 취지에 대한 공감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는 합격비율 명시 또는 합격점수의 명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중에서도 이해주체간의 정략적 조정 및 타협의 산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큰 합격비율 명시보다는 「참여연대안」과 같이 누구나 로스쿨 3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합격을 확신 가능한 합격점수의 명시가 상대적으로 타당할 것이다.⁵⁾

3.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바는 예비시험 도입 논란과 변호사법상의 의무연수제도이다. 두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3년 내 사법시험 공부와 사법연수원 과정을 압축할 수 있겠냐는, 다소 수리적으로 단순화된 불신과, 로스쿨을 기득권화하고 금권에 기반한 실험적 제도로 보는 언론의 상호작용이 깔려있다. 예비시험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수록 상당수 재학생에게 로스쿨 체제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고립 인식을 창출시키고 있으며, 장학금 제도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재학 중인 로스쿨의 사회적 정당성을 회의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수험생들도 현재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바, 예비시험이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다는 근거로 도입되면 로스쿨 2기의 다양성이 자발적으로 축소되고 연령대마저 제한되어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인적 구성의 지원을

5) 특히 합격비율이 최저기준이 아닌 고정 80%로 책정된다 하더라도 계산해 보면 4년 지속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5분의 1의 응시생들이 불합격해야 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또다른 인위적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예비시험이 최종 도입되면 로스쿨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진입장벽임을 자인하는 바가 되어 수험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자기 실현적 예언과 유사한 “강요된 예언의 실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상당수 학생들은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자신들이 반대할 경우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입학한 로스쿨생들이 밥그릇을 쟁기려 한다”라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도 방학 중 학외 파견연수 및 교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3월 20일 공청회 이전에 학생회가 결성된 로스쿨들의 공동 입장 표명이 논의되고 있지만, 4월 국회 통과 입장이 천명된 마당에 요식적인 과정이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만약 「박선영안」과 마찬가지로 소위가 제시하는 개정안에도 예비시험 제도가 명시될 경우 로스쿨생들은 스스로가 몸담고 있는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회의를 간직하고 학업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로스쿨이 도입 취지대로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대비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가로서의 소양은 물론 다양한 전공 배경에 기반한 학교별 특성화가 필수적이고, 많은 1기생들이 위와 같은 취지에 공감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였음을 토로한다.⁶⁾ 이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3년간 법학도의 길을 선택하였고, 안정된 직장과 가사를 뒤로 하고 1회 입시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면서 법적 실무가로서 훈련받기를 자청한 이들도이다. 이러한 재학생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 지나친 자체 / 전체 서열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2) 사교육에의 의존 필요를 절대적으로 감소시켜 법률가적 소양을 자율적으로 체득하고 특성화를 달성화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을 실제보다 약체화하고 동시에 진입장벽으로 묘사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이에 기반한 변호사시험법 개악 논의는 이같은 로스쿨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의지를 제도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의심의 핵심이 되는 비법학사들의 법학수학능력은 도마 위에 오른 상태고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법대생인 사람은 없으며, 이들이 학사과정과 사회경험에서 비롯된 가치관, 그리고 법학에 대한 수요를 지니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싶다. 만약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되고 합격 여부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며 예비시험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로스쿨생들은 법학 그 자체와 토론식 수업에 적응할 의지와 여유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특성화를 자율적으로 모색할 여력을 확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로스쿨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김창록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총 입학정원제의 폐지와 더불어, 1)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 참가를 제한하는 가 / 나 군 지원제의 개선, 2) 입학 전 장학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등록금을 선납부해야 하는데서 오는 금전적 부담의 감소, 3) 학교별 중복 우선선발된 인원내 대해 선등록하게 함으로써 3월까지 연쇄적인 학생 이동의 방지, 4) 야간 및 방송통신 로스쿨의 도입 등의 방안이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서 이러한 방안을 고려해 주신다면, 도입 취지를 한층 살리고 수학 능력을 보장하는 로스쿨 제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6) 로스쿨에 입학한 법학사들 또한 사법시험 및 연수원에서 제공되지 않는 특성화 교육을 통해 각 로스쿨별 특성화의 강력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재 사법시험과 로스쿨 사이에서 고민하는 법학부생들에게 일정한 유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국고지원의 바람직한 방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이 종 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 미국 법학교육의 역사

1. 고등교육 발전의 배경

미국의 건국자들은 국가가 성공적으로 기틀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Thomas Jefferson은 광범위하게 교육받은 대중의 기반 위에 건립된 미국을 마음속에 그리며 Virginia대학을 설립하였고, Benjamin Franklin은 Pennsylvania대학을 설립하였다. 1789년에 설립된 North Carolina대학은 사립대학인 William and Mary대학이나 Delaware 대학, 또는 Rutgers대학 보다는 뒤에 세워졌지만 공립대학으로서의 최초의 대학이다. 1638년에 설립된 Havard대학은 1936년 Massachusetts Bay 식민지 법원이 기부한 400파운드으로써 출발하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관여의 분수령이 된 것은 연방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을 통하여 공립대학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862년의 Morrill Act였다. 1887년의 Hatch Act는 각 주에 농업 실험실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오늘날 거액의 연방 연구자금 제공의 선구가 되었다.¹⁾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토지기부라는 개념은 1787년 Northwest의 법령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과 새로운 토지기부제도의 결합은 Northwest 외부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많은 주에서 공립 고등교육이 사립 고등교육보다 선호되었고, 주와 주민 사이에 적절한 등록금으로 자격 있는 모든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social compact)가 형성되었다.²⁾

공고등교육이 성장함에 따라 적절한 등록금에³⁾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공립대학들은 비즈니스, 치의학, 법, 의학, 간호학, 약학 등의 전문학교를 추가하였다. 공립 로스쿨은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등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인 1944년 미연방의회가 통상 GI법안이라고 불리는 군인 재조정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을 제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수백만 명의 퇴역군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제공하였다.⁴⁾ 20세기는 공고등교육의

1) Act of March 2, 1787; (1)ch. 314, 24 Stat. 440, 7 U.S.C. §361a, et. seq.

2) Paul Trible, State University Funding Crisis Deserves Outside-The-Box Thinking: The Social Compact that Supported Higher Education is Being Dismantled, Ann Arbor News, Apr. 28, 2005, at A10.

3) 예컨대, 캘리포니아 대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은 1967년까지는 등록금이 무료였다. Clark Kerr, The Gold and the Blue: a Personal Memoir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49-1967: Volume Two: Political Turmoil 319-320 (2003) 참조.

4) 이 GI Bill의 지원하에 교육받은 사람 중에는 14명의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미연방대법관, 12명의 연방상원의원, 24명의 풀리처(Pulitzer)상 수상자, 238,000명의 교사, 91,000명의 과학자, 67,000명의 의사, 450,000명의 엔지니어, 240,000명의 회계사, 17,000명의 저널리스트, 22,000명의 치과 의사, 그리고 1,000,000명의 변

상승기로서 건국의 아버지들의 비전을 실현시켜 주었다.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을 포함하여 대략 80%의 대학생과 60%의 대학원생, 직업학교의 학생들이 공립 대학에 다니고 있다.⁵⁾

사립의 로스쿨도 통합된 하나의 교육모델로서의 공립의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교육프로그램이나 공익을 추구한다는 목적 등의 면에서 사립의 로스쿨은 20세기 말까지 공립의 로스쿨과 거의 같아졌다. 그러나 등록금의 상당한 격차로 인한 접근성이나 비용감수성의 차이, 주립의 로스쿨의 자주 거주민(resident)에 대한 우대 등이 공립 로스쿨과 사립 로스쿨의 주된 차이로 남아 있다.

2. 법학교육의 발전

1700년대 후반 학교에서 법률을 가르치기 전에는 변호사 지망생은 공식적인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법적인 훈련이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⁶⁾ 많은 변호사들은 독학이었고 또 다른 변호사들은 도제로서 훈련을 받은 뒤에 경험 많은 변호사 밑에서 일하며 실무훈련을 쌓았다. 독학으로 공부한 변호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유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⁷⁾

최초의 로스쿨들은 한때 몇 명의 도제들을 고용했던 전문화된 법률사무소에서 발전해 나왔다. 이러한 종류의 초기 학교는 리브(Tapping Reeve) 판사가 1784년에 코네티컷주에 세운 린치필드(Litchfield) 로스쿨이 최초의 것이다.⁸⁾ 원래 로스쿨은 도제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생겨났으며 학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다방면의 법실무의 한 면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⁹⁾

하버드 로스쿨은 최초의 "대학 로스쿨(University Law School)"로서 1817년에 활동을 시작했다.¹⁰⁾ 그 때의 법학학위(LL.B.)는 대학원 학위(a post-graduate degree)가 아니었으며 사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입학요건이 아니었다.¹¹⁾ 하버드는 일류의 법학교육을 제공한 재정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개업변호사 밑에서 배우는 실무기술 훈련과는 경

호사, 간호사, 실업가, 예술가, 배우, 작가, 파일럿, 기타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Edward Humes, *Over Here: How the G.I. Bill Transformed the American Dream* 6 (2006).

5) 예를 들면, 2003년의 경우 3,500,000명(21%)이 사립대학에 다닌 것에 비해 13,100,000명의 학생들(79%)이 공립대학을 다녔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Table 210 (2006).

6) Kermit L. Hall, *The Magic Mirror: Law in American History* 218 (1989) 참조.

7) Susan Katcher, *Legal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A Brief History*, 24 *Wis. Int'l L.J.* 335, 339-42 (2006).

8) Marian C. McKenna, *Tapping Reeve and the Litchfield Law School* 59-60 (1986).

9) William P. Quigley, *Introduction to Clinical Teaching for the New Clinical Law Professor: A View From the First Floor*, 28 *Akron L. Rev.* 463, 465 (1995).

10) Harvard Law Sch. Ass'n, *Centennial History of the Harvard Law School 1817-1917* 4 (1918).

11) Lawrence M. Friedman, *A History of American Law* 465 (3d ed. 2005). J.D.(The Juris Doctorate degree)가 LL.B.(The Bachelor of Laws)를 대체해 버린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보통법 국가(예컨대, Canada, England, Turkey, Australia, Scotland, and South Africa)에서는 LL.B.가 법학에 있어서 주된 학위이다. LL.B.의 주된 목적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학문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LL.B.는 곧 직업적인 학위(a professional degree)로 간주된다. Bruce A. Kimball, *Students' Choices and Experience During the Transition to Competitive Academic Achievement at Harvard Law School, 1876-1882*, 55 *J. Legal Educ.* 163, 164-169 (2005) (이하 Kimball, *Students' Choices*).

쟁이 되지 못하였다.¹²⁾

1850년대에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가 법적이고 규제적으로 발전하면서 법적 조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였다. 1860년까지는 일종의 도제식 수련을 요구하는 주(州)가 거의 없어지고 21개의 로스쿨이 도제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기를 끌었다.¹³⁾ 이 시기에는 대학과 연계되지 않은 "사립의 로스쿨(proprietary law school)"들이 법학교육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들은 대학과 연계된 로스쿨보다 더 심도 있는 실무훈련을 제공하였다.¹⁴⁾ 그리하여 대학 로스쿨은 법의 이론과 역사 및 철학을 가르치는 임무를 자임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사립의 로스쿨과 달리 대학 로스쿨들은 실무기술은 훈련으로 체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운영되었다.¹⁵⁾

당시의 모든 로스쿨에서는 강의식 교수방법(lecture method)이 지배적이었다. 이 방식은 학생에게 많이 캐묻지도 않고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별로 제공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는 교수에게 크게 의존하는 것이었다.¹⁶⁾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로스쿨들은 변호사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경쟁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조직화이다. 하버드는 로스쿨의 통괄권을 분리함과 동시에 학장직을 신설하여 1870년 랑델(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이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1870년대 동안에 랑델 학장과 엘리엇(Charles William Eliot) 하버드대 총장은 법학교육을 법률가와 법률실무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하여 오늘날 미국에서 법학교육 모델의 전형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상소심 사건에 관하여 학생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사례분석 방식(case method)으로 가르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사법강좌(private-law courses)를 강의하는 3년제 대학원 과정이다.¹⁷⁾

(1) 랑델(Langdell)의 개혁

랑델이 학장으로 취임하던 때에는 입학할 위하여 언어능력 이외에는 어떠한 학문적인 요건도 요구되지 않았고, 교육기간은 18개월 정도였으며, 교육과정도 등급이 없이 기본적인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험이나 출석 요건도 없었으며 개업 또는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가르쳤다.¹⁸⁾ 랑델은 로스쿨을 대학원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육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입학시험, 졸업시험을 부과하고, 엄격한 코스워크와 사례분석식 강의 방법을 도입하였다.

랑델은 법을 과학으로 보고¹⁹⁾ 사건을 법을 구성하는 원칙과 원리를 배우는 토대로 보았

12) Michael L. Richmond, Teaching Law to Passive Learners: The Contemporary Dilemma of Legal Education, 26 Cumb. L. Rev. 943, 945-46 (1996).

13) William Quigley, supra note 9, at 465-66.

14) William R. Trail & William D. Underwood, The Decline of Professional Legal Training and a Proposal for its Revitalization in Professional Law Schools, 48 Baylor L. Rev. 201, 206 (1996).

15) Id. at 207.

16) Friedman, supra note 11, at 84.

17) Robert W. Gordon, The Case For (and Against) Harvard, 93 Mich. L. Rev. 1231, 1231 (1995).

18) Kimball, Students' Choices, supra note 11.

19) 랑델에 의하면, 법학교육은 과학(science) 교육이지 기술(craft)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법학교육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건국초기 이래 법률실무 훈련의 주된 무대가 되어 온 법률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uce A. Kimball, "Warn Students That I Entertain Heretical Opinions, Which They are not to Take as Law": The Inception of Case Method Teaching in the Classrooms of the Early C.

다. 그의 사례분석 방식은 핵심적 법원리를 배우는 방법의 하나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상소심 판결로부터 법을 추출해 낼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법 그 자체에 노출되는 것이고 어느 특정 교수에 의해 해석된 법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 랑델의 사례분석 방식은 법원리의 의미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정된 상소심 사건으로 기존의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교수방식으로 간주되었다.²⁰⁾

랑델은 교실에서의 토론에 사례분석 방식(case method)과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방식(Socratic dialogue)을 도입하였다.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은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대화를 유도하여 사건의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제거하고 적용할 법칙을 이끌어 낼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 암기보다는 법적 추론을 하도록 유도한다.²¹⁾

1870년대에 하버드대에서 시행된 랑델(Langdell)식 로스쿨은 높은 학생-교수 비율, 대형 강좌, 학생 1인당 저렴한 교육비,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무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교육과 등록금 의존적 재정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랑델의 사례분석식 강의방식은 교육학적인 교수방식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교수방식이다.

랑델이 급격한 변혁을 시도하면서 학생들과 동료교수들로부터의 양면적 저항에 부딪혔다. 배치helder(Samuel Batchelder)가 회상하는 바에 의하면, 그의 시도는 다른 교수들로부터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대부분의 학생으로부터의 공공연한 반항에 직면하였다.

랑델의 개혁 시스템을 맞이한 학생들은 입학시험의 부과, 엄격한 학사과정, 그리고 1년의 추가적인 교육기간 등 새로운 경쟁적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교수들도 3년의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강의부담이 증가하였고 사례분석식 강의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1870년에서 1883년 사이의 개혁기간에 전 과정을 위한 등록금은 100달러에서 450달러로 인상되었다. 1876년 3년의 교육과정이 시행에 들어갔을 때에는 등록 학생수가 199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882년에는 138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883년부터는 등록 학생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교수진도 확장되었으며 새로운 법률교육 문화도 마침내 정착하게 되었다.²²⁾

(2) ABA와 AALS의 규제

ABA는 1878년 8월 21일 21개 주 100명의 변호사가 설립한 단체다.²³⁾ ABA는 그 시작 초기부터 '법학교육 및 변호사자격 위원회(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단일한 자격요건을 확립하는 계획에 착수하였다. 3년 후 동 위원회는 (1) 모든 로스쿨은 3년 과정의 심도 있는 교육과정의 시행, (2) 로스쿨 졸업장 취득과 구두 및 필기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 자격 부여, (3) 로스쿨 재학 기간과 법률사무소 근무(훈련) 기간의 등가성 인정 등 3개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이 3개의 결의안은 1881년에 모두 채택되었다.²⁴⁾

C. Langdell, 1870-1883, 17 Law & Hist. Rev. 57, 125 (1999).

20) David D. Garner, The Continuing Vitality of the Case Meth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00 B.Y.U. Educ. & L.J. 307, 317-18 (2000).

21) Sandra R. Klei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13 Loy. L.A. Int'l & Comp. L.J. 601, 617-18 (1991).

22) Kimball, supra note 19.

23) Am. Bar Ass'n, Profile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1 (2005).

24) Edson R. Sunderland, History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its Work 72-73 (1953).

1890년 동 위원회는 법학교육의 상황을 분석하고 ABA에게 로스쿨에 적절한 (교과목)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1893년에는 법학교육 분과(The Section of Legal Education)가 생겨났으며,²⁵⁾ 이른바 '사라토가 시대(Saratoga Era)'²⁶⁾ 동안 법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동 분과, 동 위원회, 또는 ABA 전체회의에서 제기되고 논의되었다.²⁷⁾ 1916까지 ABA는 변호사 표준 자격기준과 로스쿨의 교육기준을 채택하였다. 2006-2007년에는 ABA는 56개의 해석이 첨부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²⁸⁾

좀 더 엄격하고 단일한 자격요건을 수립하기 위하여 ABA는 카네기재단(The Carnegie Foundation)을 압박하여 법학교육의 실태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카네기재단의 위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한 리드(Alfred Z. Reed)는 1921년 그의 보고서(The Reed Report)에서 다양한 변호사협회를 창설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리드의 결론에 불만을 가진 ABA는 단일한 변호사협회를 지지하는 루트 보고서(The Root Report)를 공표하였다.²⁹⁾ ABA가 법학교육의 통일적인 요건을 강력하게 지지한 결과 1930년대 말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로스쿨이 ABA 기준을 채택하게 되었다.

AALS는 1900년에 32개교가 가맹하여 설립되어 1971년에 교육에 관한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되었다.³⁰⁾ AALS의 목적은 "법학교육을 통한 법조 직역의 발전"이다. AALS는 로스쿨 교수를 위한 학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 더러, 연방정부와 여타의 연방국가 차원의 고등 교육 단체 및 학회에 대하여는 법학교육을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³¹⁾

2007년 현재 AALS 웹사이트에는 168개의 회원 로스쿨과 회비를 납부하는 27개의 비회원 로스쿨이 등록되어 있다.³²⁾ 회원 로스쿨은 정기적으로 AALS의 정관과 집행위원회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AALS의 연례 회의는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연중 워크샵과 컨퍼런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AALS 내의 분과위원회와 이익단체(interest groups)는 회원 로스쿨의 교수와 전임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2007년 11월 말 현재 89개의 분과에서 뉴스레터발행, 멘토링, 시험문제 교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³³⁾

25) Id. at 74.

26) ABA가 창립된 1878년부터 1902년까지의 기간이 '사라토가 시대'로 알려져 있다. ABA가 연례적으로 또는 2년에 한번씩 뉴욕 주(州)의 Saratoga Spring에서 회의를 열게 된 것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 Id. at 73-74.

27) 제기된 이슈들의 다양성과 범위는 로스쿨 입학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예비적인 교육 문제, 3년간의 로스쿨 교육기간, 로스쿨에서 수여할 학위, 건전한 법학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범주계와 일반 공중에 대한 수많은 청원, 법원 서기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영국과 캐나다 및 프랑스 등 외국의 법학교육, 법학의 학부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강의, 대학에 대한 로스쿨의 관계, 로스쿨에서의 시험,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 법률 사무소에서의 (실무)연구, 여성을 위한 분야로서의 법학, 귀납적인 법학교수 방법,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과목들의 위치 배정, 법조윤리, 민법(civil law), 연방 법체계, 의료법학, 보통법 절차, 비교법학, 법학교육 발전의 역사 연구, 당시의 법학교육의 상황 점검, 법학교육의 표준, 교수관행(teaching practice), 로스쿨 도서관 문제, 그리고 로스쿨 교수의 임금 문제 등이었다. Id. at 74-75.

28) A comparison of a school's self-study and mission statements (required by the 2006-2007 American Bar Association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Standards 202 & 203, available at <http://www.abanet.org/legaled/standards/2006-2007StandardsBookMaster.PDF>).

29) Michael Ariens, Law School Branding and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34 St. Mary's L.J. 301, 310 (2003).

30) ALLS Archive Homepage, <http://web.library.uuc.edu/ahx/aals/default.asp>(이하 AALS Archives); Ass'n of Am. Law Schools, What is the AALS?, <http://www.aals.org/about.php>.

31) Ass'n of Am. Law Schools, AALS Section on Contracts, <http://www.aalscontracts.com/index.htm>.

32) Ass'n of Am. Law Schools, Member Schools, http://www.aals.org/about_memberschools.php.

33) Ass'n of Am. Law Schools, Sections, http://www.aals.org/services_sections.php.

(3) 임상법학운동

20세기 이른 초반에 로스쿨들은 임상법학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훈련 준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에 대처하려고 하였다. 임상교육은 희망자에 한하여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연속강좌로 시작하였다. 몇몇 로스쿨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 실습실(legal dispensaries)" 또는 사무실을 열어 법률실무 훈련과 법적 분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또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으로 조력함으로써 사회정의에 기여하려고 하였다. 브래드웨이(John Bradway)와 프랭크(Jerome Frank)³⁴⁾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임상법학 방법론을 증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브래드웨이와 프랭크는 건전한 법학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교내 임상연구소의 필요성을 옹호하였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전반(前半)에 걸쳐 소수의 로스쿨만이 교내 임상과정을 설치하였다.³⁵⁾

강의식 법학교육의 주류에다가 임상연구를 통합하는 방법이 모색되던 1960대부터 1990대까지의 시기를 임상법학교육에 있어서의 제2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윤리를 위한 법학교육 협의회(The Council on Legal Education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c., CLEPR)는 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과 공동으로 로스쿨에게 임상법학연구소를 설립하게 하기 위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다.³⁶⁾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요소는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적합성 요구의 증대, 임상교육방법의 발전, 임상 프로그램의 개설과 확장을 위한 외부자금의 유입, 그리고 임상과목을 가르칠 능력과 관심을 가진 교수의 수적 증가 등이다.³⁷⁾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 이후 로스쿨의 커리큘럼에 법조윤리(legal ethics)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자, ABA는 이에 대응하여 모든 로스쿨 학생은 "직업윤리적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관하여 한 강좌를 이수하도록 요구하였다. 1996년 ABA는 로스쿨들이 무료봉사 행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듬해인 1997년에는 AALS의 "무료봉사와 공공서비스 기회위원회(Commission on Pro Bono and Public Service Opportunities)가 만들어졌다.³⁸⁾ 젊은 변호사에 의한 무료변론을 촉진하는 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무료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무료봉사 경험은 직장에서의 무료봉사 장려구조와 타인을 돕는다는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의 발로에 의한 무료봉사 경험의 경우보다는 실제로 무료봉사

34) 1933년에 프랭크는 모든 로스쿨이 임상 담당 전임 교수가 담당하는 법학임상강의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Jerome Frank, Why Not A Clinical-Lawyer School, 81 U. Pa. L. Rev. 907, 917 (1933).

35) Margaret Martin Barry et al.,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ical L. Rev. 1, 8 (2000).

36) William P. Quigley, Introduction to Clinical Teaching for the New Clinical Law Professor: A View From the First Floor, 28 Akron L. Rev. 463, 469 (1995).

37) 1990년대에는 로스쿨이 교내 임상프로그램과 임상교수의 직업 안정성 및 신분 보장을 해 준 관계로 임상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9년 말까지 183개의 미국 로스쿨이 임상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임상 프로그램과 관련 교수의 수적 증대는 임상법학 교육에 관한 학문성과 방법론을 발전시키기에 필요한 임계수치에 이르렀다. Margaret Martin Barry et al.,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ical L. Rev. 1, 30-32 (2000).

38) N. William Hines, Ten Major Changes in Legal Education Over the Past 25 Years, AALS News, Nov. 2005, at 4, available at http://www.aals.org/documents/aals_newsletter_nov05.pdf.

에 연결되는 정도가 훨씬 덜 강력했다고 한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그들의 적절한 직업적인 의무감을 주입시키는 것은 질 높은 법학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3. 공립 로스쿨의 준사립화

21세기, 새천년 들면서 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등록금은 두 자리수로 인상되었으며, 교수-학생수의 비율은 상승하였다.

공립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재량적 비용까지 지원하던 체계에서 필요비용만을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고등교육재정은 주정부의 예산에 있어서 커다란 재량이 인정되는 항목이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보험(Medicade)과 같은 의무적인 사항이 급속히 증가하여 재량적인 항목을 대체하고 있다.⁴⁰⁾

공립의 로스쿨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공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에 대한 재정삭감과 등록금 인상은 불비례적이었다. 의원들, 주립대학의 이사들, 그리고 대학경영자들은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학단위, 특히 로스쿨과 비즈니스스쿨에게 점점 더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그리하여 예전에 로스쿨에 지원했던 주정부의 자금을 이제 다른 대학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립대학들, 특히 로스쿨의 경우는 미시건(Michigan)대학이나 버지니아(Virginia)대학을 선택로 삼아 사립화(privatizing) 또는 준사립화(qusi-privatizing)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로스쿨(Berkeley)은 1994년에 예산의 60%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다가 2005년에는 30%로 주정부의 지원이 감축되었다.⁴¹⁾ 미시건대학과 버지니아대학의 경우는 더 극단적인 예가 된다. 미시건대학은 운영자금의 4%만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⁴²⁾ 버지니아대학은 주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⁴³⁾ 주정부의 재정지원의 감축은 주립로스쿨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내 거주자에 대해서조차 등록금이 상당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지원의 감축이 캘리포니아 대학조직 내에서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은 동 대학

39) Id.

40) 워싱턴(Washington)주와 같이 많은 주에서 고등교육관련예산은 매매일임계정(discretionary account)이 되었고 따라서 예산을 감축하려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항목이다. 워싱턴 주시사의 고등교육예산 담당보좌관 유(Theo Yu)에 의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은 많은 주의 헌법에서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최후에 결정되는 문제이다. 일단 다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의회는 예산표를 들여다 보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이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이 된다." Jeffrey Selingo, The Disappearing State in Public Higher Education, Chron. of Higher Educ., Feb. 28, 2003, at 2, available at <http://chronicle.com/free/v49/i25/25a02201.htm>. 마찬가지로, 위스컨신(Wisconsin)대학의 경우 주 예산의 9% 미만을 차지하지만, 2002-2003학년도에는 예산 삭감액의 23%를 차지했다. Id at 5.

41) 미네소타(Minnesota) 로스쿨은 1968년 학교예산의 82%를 지원받았으나 2005년에는 주정부로부터 연간예산의 3% 미만을 지원받았다. Similarly, the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dropped from 82% state funding in 1968 to less than 3% currently.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Why Give to the Law School?, <http://www.law.umn.edu/giving/why/html>.

42) 미시건(Michigan)로스쿨에 대한 대학본부(central campus)로부터의 지원은 1935년의 예산의 48.8%에서 1953년에는 40.9%로, 그리고 2004년에는 단지 3.9%로 떨어졌다.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Building on the Campaign f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aw School Fund, <http://www.law.umich.edu/campaign/why/fund.htm>.

43) Virginia Law, Facts & Statistics, <http://www.law.virginia.edu/html/about/factsstats.htm>.

의 재정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몇 년간 로스쿨과 비즈니스스쿨에 대한 주정부 일반자금의 지나친 감축은 특별한 부가적인 조치가 없이는 버클리 캠퍼스의 로스쿨과 비즈니스스쿨, 그리고 Davis 캠퍼스의 로스쿨 등이 주위의 다른 학교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 특별히 어렵도록 만들었다.⁴⁴⁾

이 로스쿨들은 뛰어난 교수들을 확보하고 최고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능력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Berkeley 로스쿨(Boalt)은 top five로 복귀하고 싶으나 학생·교수 비율과 학급 사이즈의 증가, 다른 우수한 대학에 비해 열악한 교수연봉, 학생서비스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⁴⁵⁾

그리하여 공립로스쿨들은 공립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정신)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맞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방안은 등록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이다. 공립로스쿨은 자주거주민에게 보통의 등록금으로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장기적인 대응전략은 저렴한 등록금으로 자격 있는 모든 주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로스쿨로부터 비싼 등록금으로 제한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로스쿨로의 전환을 통하여 법학교육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등주의적 법학교육 제도로부터 보다 엘리트주의적인 법학교육제도로 탈바꿈하는 상당히 다른 법학교육 모델이 정립될 것이다.

II. 미국 법학교육 현황

1. 등록금의 폭발적 인상

최근에 직업학교(professional school)에서의 등록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州民(state resident)에게 적절한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가 위협 당하고 있다. 공립 로스쿨에서의 자주민의 등록금이 1990년의 평균 3,236 달러에서 2003년 평균 10,820달러로 234%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⁴⁶⁾ 등록금은 미국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공립 로스쿨에서는 더 가파르게 인상되어서, 예컨대 U.C. 버클리 로스쿨에서는 1987년 자주민의 경우 1,500 달러, 비자주민의 경우 5,796 달러이던 것이 2006-2007학년도에는 자주민의 경우 24,370 달러로 인상되었다.⁴⁷⁾ 미시건 대학의 경우는 더 심한 경우로서 2004-2005학년도 기준으로 자주민 29,170 달러, 비자주민 34,170 달러로서 비자주민의 경우 사실상 최고의 사립 로스쿨과 맞먹는 등록금이다.⁴⁸⁾ 사실상 미시건 대학은 사립대학이나 마찬가지이다. 버지니아 대

44) Office of the President, University of California, 2006-07 Budget for Current Operations 60 (Nov. 2005), available at [http:// budget.ucop.edu/rbudget/200607/200607-budgetforcurrentoperations.pdf](http://budget.ucop.edu/rbudget/200607/200607-budgetforcurrentoperations.pdf) (이하 UC Budget).

45) 보고서에 의하면 UCLA와 UC Davis는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Id. at 245.

46) John A. Sebert, Cost and Financing of Legal Education, Syllabus at 1, 4 (vol. 35, no. 2, February 2004).

47) School of Law - Boalt Hall, Financial Aid, [http:// www.law.berkeley.edu/students/financial_aid/](http://www.law.berkeley.edu/students/financial_aid/) (last visited Nov. 15, 2006); UC Davis School of Law, Cost of Attendance, [http:// www.law.ucdavis.edu/financialAid/costs.shtm](http://www.law.ucdavis.edu/financialAid/costs.shtm);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2006-2007 Estimated Cost of Attendance, <http://www.uchastings.edu/?pid=4053> (last visited Nov. 15, 2006); UCLA Law, Tuition and Fees, <http://www.Law.ucla.edu/home/index.asp?page=1712> (last visited Nov. 15, 2006).

48) University of Michigan, Office of the Registrar, Tuition and Fees for Academic Year 2004-05, <http://www.umich.edu/~regoff/tuition/full.html> (last visited July 29, 2004). Similarly, the graduate MBA

학 역시 로스쿨과 비즈니스스쿨을 사립화하였다. 로스쿨의 2005-2006학년도 자주민 28,300 달러, 비자주민 33,300 달러의 등록금을 부과하였다.⁴⁹⁾

주정부와의 사회적 합의는 이제 끝났다. 미시건, 버지니아, Boalt, 그리고 UCLA 등은 미국에서 최상의 로스쿨들이고 따라서 최고의 등록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등록금 인상의 효과는 주민에게 고급의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적절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이들 뿐이 아니고 2003-2004학년도에 등록금 인상을 한 상위 12개 대학이 모두 공립 로스쿨이었다.⁵⁰⁾ (표 1, 2 참조)

<표 1> Resident Tuition

	Low	Median	High
1983-1984	\$ 120	\$ 1,640	\$ 4,250
1999-2000	\$ 2,072	\$ 6,695	\$ 19,115
2004-2005	\$ 3,891	\$ 11,118	\$ 29,358

<표 2> Non-Resident Tuition

	Low	Median	High
1983-1984	\$ 1,200	\$ 4,256	\$ 7,940
1999-2000	\$ 8,382	\$ 15,035	\$ 25,085
2004-2005	\$ 10,156	\$ 21,577	\$ 34,358

모든 공립 로스쿨이 똑 같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공립 로스쿨이 자주민에 대해서조차도 점차적으로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였다. 인상률이 아년 달러의 절대액수로도 지난 5년간에 걸쳐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자주민에게 부과된 등록금의 인상률을 중간대학(메디언)을 기준으로 보면 6,695달러에서 11,118달러로 66.7%이다.

1999년까지 North Carolina Central 로스쿨은 2,072달러로서 자주민에 대한 등록금이 가장 싼 로스쿨이었고 2005년 기준으로도 3,891달러로서 여전히 가장 저렴하다. 반면에 미시건 대학은 17,332달러로서 1위, 버지니아 대학은 15,319달러로서 2위였고, 2005년 기준으로도 각각 29,358달러, 26,100달러로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로스쿨이 등록금에 있어서 이렇게 양극단에 존재하는 이유는, North Carolina Central 로스쿨은 전통적으로 소수계층 출신에게 교육기회 접근성과 교육비용 적절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미시건 로스쿨의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로스쿨 중의 하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재정지원 삭감에 대한 대학들의 초기대응은 他州民 학생의 등록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이었다. 공립의 대학들의 재정지원은 주내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거권이 없는 비자주 거주민의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정치적 저

tuition and fees are \$33,688 for residents and \$38,688 for non-residents. Id.
49)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Facts and Statistics, <http://www.law.virginia.edu/home2002/html/about/factsstats.htm> (last visited Feb. 6, 2006).

50) The National Jurist, January 2004, at 16.

항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주민의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만으로 예산삭감의 겹을 메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산삭감, 비자주민 학생수 또는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는 자주민 요건을 획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비자주민 정책이 언제나 재정수입에 커다랗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립 로스쿨이 경비를 감축하게 되면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거대한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로스쿨에 있어서도 가장 커다란 지출항목이 교수와 직원의 인건비이다.

또 하나의 커다란 지출항목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로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부 항목이다. 재정지원은 쉽게 감축할 수 있으나 교육에의 접근성, 비용적절성, 그리고 학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지난 10여년 이상 공사립을 불문하고 로스쿨에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증가해 왔다. 예를 들면, 공립 로스쿨에 있어서의 가계곤란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비율은 1990-1991학년도에 14.28%에서 2003-2004학년도에는 50% 이상이 증가한 21.28%에 달하였다.⁵¹⁾

학생수(정원)를 늘리는 것, 특히 교수 충원률을 증가하는 속도로 학생수를 늘리는 것은 대학의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교수-학생 비율의 증가 뿐 아니라 입학생들의 객관적인 수준(LSAT's, GPA's)의 저하와 3년 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LSAT's, GPA's, 시험합격률, 그리고 채용과 비용 등은 U.S. News & World Report의 순위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전체 학생수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비(非)자주민 학생비율을 증가시켜 그들에게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학의 재정수입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자주민의 교육 접근성과 비용적절성을 희생시키는 면이 있다.⁵²⁾ 그러나 아무리 가파르게 비자주민 학생수와 그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부족을 메우기는 어려우며 결국 자주민 학생의 등록금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립 로스쿨의 급격한 등록금 인상은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된다. 공립 로스쿨의 등록금이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에 필적하게 되면 등록금이 싸다는 공립의 커다란 경쟁력 중의 하나를 잃게 된다.

2. 모금(Fundraising)

모금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공·사립의 총·학장은 모금행위에 종사해 왔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학장직의 하나의 척도가 아니라 학장직의 주된 기능이 될 우려가 있다. 프로그램 개발은 자금에 의존한다. 학장직 수행의 성공척도로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아니라

51) American Bar Association, Percent of Tuition Paid by Need and Merit Based Grants 1990-2004, <http://www.abanet.org/legaled/statistics/grants.html>. 장학금 수혜율은 사립대학의 경우는 1990-1991학년도에 10.42%에서 2003-2004학년도에는 17.51%로 증가하였다. Id.

52) 예를 들면, 만약에 어느 공립 로스쿨이 전통적으로 200명의 신입생 중에 80%가 자주민 학생인 경우, 그 비율이 75%로 떨어진다면 자주민 신입생이 15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변화는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효과는 자주민이 입학할 수 있는 틈이 줄어들어 필연적으로 자주민에게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

모금성으로 대체될 지도 모른다. 모금을 위한 노력이 아예 없거나 되는대로의 방식에서부터 직업적이고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수준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공립 로스쿨에서도 등록금 인상의 대안으로서 또는 보충으로서 상당 수준의 모금에 의존하여야 한다. Boalt가 예증한 바와 같이, 많은 로스쿨에서 모금행위는 우선순위가 높은 급박한 일이 되고 있다. 기부를 잘 하지 않는 졸업생을 사귀고 교화하여 모금하는 것은 많은 공립 로스쿨의 패러다임의 실질적인 전환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립대학들의 동창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공립의 로스쿨도 이제는 발전전략사무소에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모금의 기술은 잘 알려져 있으나, 동창회 중심의 모금행위는 문제일 수 있다. 많은 졸업생들은 州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많은 보조금을 충당하여 등록금이 매우 싼 시절에 로스쿨을 다닌 사람들이었다. 그 때는 교육기회의 접근성과 비용적절성의 문제가 오늘날만큼 심각하지 않았었다. 게다가 오늘날은 로스쿨을 졸업하여도 즉시 성공의 길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주정부가 태도를 180도 바꾸어 로스쿨에 다시 적절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거액의 모금은 조직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충성스럽고 성공한 동문들에게 모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3> Endowment Growth, 14 High Endowment Schools, 1991~2006

Institution	1991 Endowment	2006 Endowment	% Growth
Harvard	\$7,213.6	\$29,545.7	309.6%
Yale	3,969.2	18,423.5	364.2
Stanford	3,489.7	14,391.6	312.4
texas	4,680.1	13,523.2	189.0
princeton	3,538.4	13,329.1	276.7
MIT	2,210.0	8,550.4	286.9
Columbia	2,439.5	6,067.2	148.7
Emory	2,058.5	4,976.1	141.7
pennsylvania	1,267.6	5,429.0	328.3
Wash. U. -St. Louis	2,245.6	4,786.8	113.2
Northwestern	1,558.5	5,252.7	237.0
Chicago	1,584.9	4,973.0	213.8
Cornell	1,076.7	4,415.4	310.1
Rice	1,733.4	4,073.5	135.0
All 14 Above	39,065.7	137,737.2	252.6

<표 4> Endowment Growth Among Top Institutions, 1985~2006

Institution	1958	1980	2006	%increase
Harvard	\$3,891,564	\$4,027,123	\$29,952,767	670%
Yale	1,896,608	1,718,923	18,677,267	885
Chicago	1,234,168	871,960	5,041,558	308
MIT	1,048,107	1,084,178	8,668,186	727
Northwestern	1,043,940	775,268	5,325,038	410
Rochester	998,744	956,234	1,544,760	55
Princeton	978,681	1,392,073	13,512,755	1281

Cornell	790,171	644,898	4,476,179	466
Stanford	681,233	1,605,623	14,589,822	2042
Johns Hopkins	676,172	601,071	2,435,059	260

3. 교수(Faculty) 와 교육시스템의 비용

대학과 로스쿨의 랭킹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교수진의 명성이다. 교수진은 가르치는 능력 보다는 학문적인 명성에 의하여 평가된다. 교수의 연봉이 비교적 낮았던 1970년대에는 공립과 사립의 로스쿨의 교수들은 명성을 위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연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자 서서히 교수들은 재정이 튼튼하고 기부금이 많은 오늘날의 최고 사립 로스쿨로 이동하게 되었다. 공공의 재원을 경쟁적으로 썩여 할 곳이 많은 주정부로서는 로스쿨의 커다란 예산증가를 실질적으로 계속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졌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많이 임용된 교수들이 은퇴함에 따라 공립 로스쿨들은 뛰어난 젊은 교수들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들이 학문적 명성을 얻었을 때 그들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이다.

교수의 연봉이 가파르게 인상된 하나의 예를 보면, 1976-77학년도 미시건 로스쿨의 33명의 전임교원 중 중간위치에 해당하는 연봉은 37,600달러였으나⁵⁴⁾ 10년 후인 1986-87학년도의 중간 연봉은 90,000달러로 인상되었다. 1996-97학년도의 경우 35명의 전임교수의 중간 연봉은 149,000달러로서 20여년 동안 중간 연봉자의 인상률은 2,906%였다.⁵⁵⁾

<표 5> Michigan Law School의 교수연봉 인상률

	전임교수의 수	중간위자의 연봉	20년간의 중간위 연봉의 인상률
1976-1977	33	37,600	2,906%
1986-1987	N/A	90,000	
1996-1997	35	149,000	

2007년 11월 기준으로 평균 139,062달러의 연봉으로 40명의 전임교수가 재직하는 미국의 전형적 로스쿨을 가정하여 교육비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⁶⁾

전임교수 연봉 총액 = \$5,562,480

교수 1인당 기본 시수는 2 학기(semester)당 16학점이다.⁵⁷⁾

53) Bruce Oakley, Faculty Staffing and Salaries: The Long View, The U. Rec. Nov. 5, 1997 at table 2., available at http://www.umich.edu/~urecord/9798/Nov05_97/fac3.htm.

54) Bruce Oakley, Faculty Staffing and Salaries: The Long View, The U. Rec. Nov. 5, 1997 at table 2., available at http://www.umich.edu/~urecord/9798/Nov05_97/fac3.htm.

55) 분명히, 각 로스쿨의 상위연봉자 및 개인연봉 목록은 대단히 유익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급여, 주거수당, 교수개발 기금, 연구보조수당 등을 포함하는 교수처우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56) 정년이 보장된 로스쿨 전임교수의 전국적인 연봉평균은 다음 참조. Salary.com, Professor of Law-Higher Ed., <http://swz.salary.com> (search "Search By Keyword" for "Professor - Law - Higher Ed"; then follow the link).

57) See Michael Ariens, Law School Branding and the Future of Legal Education, 34 St. Mary's L.J. 301, 353 (2003) (많은 로스쿨이 1인당 연간 시수를 16학점에서 9학점으로 줄였다); Kent D. Syverud, The Dynamic Market for Law Faculty in the United States, 51 J. Legal Educ. 423, 423 (2001).

평균 학급 규모 = 24명

교육과정이 개설하고 있는 연간 학점 수 = 640학점

연간 640학점을 강의하는 데 소요되는 교수 연봉 = 5,562,480달러

학점당 교수 연봉 = 8,691.38달러

<요약 Summary>

정년이 보장된 40명의 교수 연봉 = 5,562,480달러

연간 강의 제공 학점 = 640학점

학점당 교육비용 = 8,691.38

4. 접근가능성의 제한을 통한 사회의 계층화

로스쿨의 재정문제는 주정부의 지원을 등록금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 그 자체는 주정부의 지원의 삭감에 대처하는 만병통치약식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지원을 삭감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로스쿨의 재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교육기회접근성과 비용적절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것은 등록금 인상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결국 그에 비례하여 보다 많은 학생재정지원의 증액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주정부가 학교에 대하여 1백만 달러의 지원을 삭감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예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등록금 수입을 실질적으로 1백만 달러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이 500명인 공립 로스쿨에 대하여 주정부가 1백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감축하면 학생 1인당 평균 2,000달러의 지원이 줄게 된다. 단순히 등록금을 2,000달러 인상하는 것으로는 재정지원 감축효과를 상쇄할 수 없다.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0달러가 인상된 재정지원이나 장학금 수혜가 필요하여 등록금 인상이 재정삭감 효과를 상쇄하지 못한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2,000달러의 등록금 인상분은 예정대로 운영비 항목으로 가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입학률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는 등록금 인상률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

캘리포니아대학(UC)은 모든 등록금 수입의 3분의 1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에 쓰기로 결정한 바 있다.⁵⁸⁾ 그러므로 주정부의 보조금이 1달러 줄어들 때마다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수입은 1.5달러씩 증액되어야 하는 데 등록금 인상분 중 3분의 2만이 주정부의 예산절감효과를 상쇄하는 데 충당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공립의 로스쿨 중에서 등록금의 인상분 중 얼마나 되는 금액이 실제로 성적 장학금이나 가계곤란자 장학금, 다양성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공익에 근무하는 졸업생에게 학자금 용자금을 면제하는 데 쓰일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액수가 특히 지원자와 등록자 수가 떨어지는 경제침체기에는 적어질 것이라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58) Office of the President, University of California, 2006-07 Budget for Current Operations 67 (Nov. 2005), available at [http:// budget.ucop.edu/rbudget/200607/200607-budgetforcurrentoperations.pdf](http://budget.ucop.edu/rbudget/200607/200607-budgetforcurrentoperations.pdf) (이하 UC Budget).

U.S. News & World Report지가 랭킹의 중요 요소로서 LSAT와 GPA를 강조함에 따라 로스쿨들은 로스쿨의 학문적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계곤란자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지원총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LSAT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빈곤층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규모가 감축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결국 州民에 대한 비용적절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소수인종들이 다니는 세 개의 로스쿨, 즉 North Carolina Central (NCC), Texas Southern, 그리고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로스쿨에서 바로 이러한 비용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NCC는 역사적 전통을 가장 존중하여 州民의 1984-85학년도 등록금이 730달러로서 모든 공립 로스쿨 중에서 6번째로 저렴한 것이었다. 1999-2000학년도와 2004-2005학년도에는 각각 2,072달러와 3,891달러로서 어떤 공립 로스쿨 보다 自州民의 등록금이 저가였다. 비교를 위해서 20년 전(1984-85)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NC) 본교의 등록금은 NCC 보다 불과 몇 달러가 비싼 정도였으나 (793달러) 2004-05학년도에는 11,118달러로서 州民에 대한 등록금 인상률이 NCC의 433%에 비하여 3배가 넘는 1,30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Texas Southern은 등록금 인상에 관하여 위와 비슷한 제한은 없었다. 1984-85학년도에 538달러로서 네 번째로 州民에 대한 학비가 싼 대학이었으나 1999-2000학년도에는 5,340달러, 2004-05학년도에는 9,644달러로서 20년동안 1,693%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립 로스쿨의 중간 수준인 UNC의 11,118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The University of District of Columbia는 1984-85학년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⁵⁹⁾ 이 대학의 등록금 정책은 세 번째의 방식으로서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7,135달러에 머물러 있다.⁶⁰⁾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요소가 졸업생들이 택할 수 있는 진로이다. 많은 빚을 진 졸업생들은 공익변호사로서의 길을 택하기가 어렵다.⁶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교육계는 채무면제 플랜을 채택했다.⁶²⁾ 그러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기부금이나 모금 또는 등록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등록금의 실질적인 인상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응책은 학생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교실의 경제적 계층화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로스쿨의 지원자 풀은 이미 학부의 입학전형절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점점 더 자기선택적으로 되었다. 게다가 높은 수준의 등록금은 저소득층의 지원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장애물로서 기능 한다.⁶³⁾

59) 그 전신은 사립 학교인 안티옥 로스쿨(the Antioch School of Law)였다.

60)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는 D.C.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에 등록금을 두 배로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다. Id.

61) ABA가 최근에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들은 80,000달러가 넘는 빚을 안고 있으며 10년 이상을 매월 1,000달러씩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A commission on Loan Repayments and For-giveness, Lifting the Burden: Law Student Debt as a Barrier to Public Service 9 (2003). 87%의 학생들이 법학교육의 비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며, 응답자의 3분의 2가 공익법 분야에서 활동하기에는 빚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였다. Id. at 9.

62) 2004년 11월 현재 81개의 ABA 인가 로스쿨들이 그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The National Jurist, November 2004 at 13.

63)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170,000명의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조차도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하고, 43%의 중산층 자녀가 4년제 대학을 다닐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June Kronholz, College Costs Play on Stump, Wall St. J., Feb 4, 2004, at A4. 뉴욕타임즈(The New York

공·사립을 막론하고 계층화는 전국 최고의 로스쿨에서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 Business Week지(誌)와의 인터뷰에서 Lawrence Summers 하버드대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고소득층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 사이의 불평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인생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두 계층 사이의 대학 진학률의 차이이다."⁶⁴⁾

Theodore Spencer 미시건 학부 입학처장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 대학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인상되어서 가계가 곤란한 많은 학생들은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⁶⁵⁾ UCLA 고등교육연구소(the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도 미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4년제 대학들의 신입생의 55%가 미국에서 소득이 상위 25%이내의 가계 출신으로서 1985년의 46% 보다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⁶⁶⁾ 학생에 대한 예전의 지원모델은 낮은 등록금에 많은 장학금 제도였다. 새로운 모델은 비싼 등록금에 적은 장학금과 많은 학자금 대부분서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 손실을 입히는 모델이다.⁶⁷⁾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산층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미국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점차 배제당하는 위협에 처해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등록금 인상을 감당해 낼 수 있지만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많은 교육기관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학생이 U.S. News & World Report의 기준에서 볼 때 훌륭한 것인지에 신경쓰는 나머지 대학의 입학전형절차가 교육수요 기초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려워 보이거나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할 거부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타주민 등록금은 대학財源으로서 아주 매력적이다.⁶⁸⁾ 공립 대학이 타주민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효과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州民의 입학허가 거부를 비용으로 삼아 신입생에 대한 학문적 수준은 올라가는 결과가 될 것이다. 州民이 입학허가를 받는 것이 어

Times)도 최근의 연구를 인용하여 상류층 가계가 명성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중산층 학생들을 점점 몰아내고 있다는 비슷한 보도를 한 바 있다. 예를 들면, 2003-04학년도 미시건 대학의 신입생의 경우 가계소득이 전국적인 중간위인 53,000달러 이하인 가계 출신 학생 수보다 연간 200,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모를 둔 학생이 더 많았다. David Leonhardt, As Wealthy Fill Top Colleges, Concerns Grow Over Fairness, N.Y. Times, April 22, 2004 at A1. 경쟁이 가장 치열한 40개의 주립대학 신입생의 40%가 가계소득 100,000달러 이상인 가계로서 4년동안에 8% 상승한 것이다. Id at A22. ETS(The Educational Testing Service)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46개 대학 2006년 신입생의 단지 3%가 가계소득 하위 25%인 가계 출신이었다. Id.

64) James Leynes, Plain Talk from Larry Summers, Business Week, November 5, 2004 at 73, 74.

65) David Leonhardt, As Wealthy Fill Top Colleges, Concerns Grow Over Fairness, N.Y. Times, April 22, 2004 at A22.

66) Dave Newbart, Wealthy Squeeze Out Low-Income Students at Many top Colleges: Economic Diversity Fading at Private, Public Schools Alike, Chi. Sun-Times, June 13, 2004.

67) 장기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중 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에 장학금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03-04 학년도의 재정지원은 2002-03 학년도에 비하여 13% 증가하여 총 1220억달러에 달했다. AASCU/NASULGC, Student and Financial Aid Changes, 2004-2005 8, table 2 and 9 (2005). 대부가 19% 늘어나는 동안 장학금은 단지 8% 증가하는 데 그쳤다. Id. 재정지원 중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인 반면에 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56%이다. Id. 1990-91 학년도에는 장학금이 48.1%로서 대부가 차지하는 비율인 49.3%와 거의 대등하였다. Id.

68) 예를 들면, 텍사스 주의회 의원들은 텍사스의 주립대학(University of Texas of Houston, Texas Tech 등)의 로스쿨 신입생 중 비텍사스 거주자 비율을 20%에서 35%로 증가시킬 수 있다. Matthew Tresavgue, UT Law Gets More Room For Non-Texans, Hous. Chron., June 15, 2005.

려워져 신입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스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격 있는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주(州)의회가 로스쿨 예산의 실질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한 주의회는 '자금력' 행사를 통하여 타주민 입학비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대학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에 비례한다.⁶⁹⁾

5. 랭킹

초기의 1987년 랭킹을 보면, 하버드와 예일이 공동 1위이고 그 다음이 미시건 로스쿨이었다.⁷⁰⁾ Columbia와 Stanford가 공동으로 4위에 오르고 그 다음으로 Chicago, Boalt, Virginia, NYU, Pennsylvania, Texas, Duke, Georgetown, UCLA, Cornell, 그리고 Northwestern이 뒤를 이었고, Illinois와 USC가 공동 17위 그리고 Minnesota와 Wisconsin이 top 20을 이루었다. 8개의 공립 로스쿨이 20위권 안에 들었고 그 중 3개는 10위권 안에 들었다. 1987년의 랭킹은 오로지 명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1990년까지는 LSAT's, GPA's, 교수-학생 비율, 취업률,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같은 객관적인 정량지표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입학허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용 등의 면에서 로스쿨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U.S. News & World Reports의 랭킹 평가에 포함되는 요소와 관련하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 로스쿨 출신을 단기간 고용하여 신입생 모집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LSAT's 성적이 나쁜 학생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도록 파트타임 등록생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위경도쟁 치열해졌다.⁷¹⁾

2005년에 랭킹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거의 탑에 올라 있던 미시건 대학이 7위로, 버지니아는 9위로 떨어졌다. 2006년에는 미시건과 버지니아는 공동 8위, Boalt는 2004년 10위에서 2005년에는 13위로 내려 앉았다가 2006년에는 11위, 그리고 2007년에는 미시건, 버지니아와 타이틀 이루었다. 2007년 현재 오직 6개의 공립 로스쿨만이 20위권 내에 남아 있다.⁷²⁾

Ⅲ. 미국 법학교육의 문제점

법학교육의 개혁과 쇄신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법학교육의 전통, 스트레스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인식 부재, 교육과정과 교육 및 평가 현실의 진부함, 로스쿨 랭킹, 교수진의 저항, 기술의 부적절한 이용, 그리고 법학교육의 비용증가 등을 들 수 있다.

69) 문서화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한 일화적인 증거는 주정부의 예산삭감에 대응하여 대학이 비주민 학생 등록률을 높일 때에는 입법부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시의 미시건 로스쿨의 행정가의 말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 주 의회가 비주민 학생을 30%로 제한했다고 한다. 지금은 미시건 로스쿨의 비주민 학생수는 75%이다.

70) Brains For The Bar, U.S. News & World Report, Nov. 2, 1987 at 73

71) Alex Wellen, The \$8.78 Million Maneuver, Education Life, N.Y. Times, July 31, 2005, at 18.

72) Michigan (8), Virginia (8), Boalt (8), UCLA (15), Texas (16) Minnesota (19). U.S. News & World Report, America's Best Graduate Schools 44 (2007 ed.).

1. 전통(status quo ante)의 유지와 교수진의 저항

현행의 법학교육체제는 어른인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커리큘럼은 변호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지도 않고 있고,⁷³⁾ 변호사로서의 직업을 강조함으로써 균형 있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점이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로스쿨 아닌 곳에서, 또 졸업 후에 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실무기술을 배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⁴⁾ 사실 미국은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위태로워진 고객을 향하여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을 풀어 놓는 유일한 국가일지 모른다.⁷⁵⁾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는 신규 변호사는 감독이나 피드백도 없이 고객을 담보로 하여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게 된다.

법체계를 사건별로 공부하는 것은 한 번에 나무 하나씩을 보면서 전체적인 숲을 연구하는 것과 유사하다.⁷⁶⁾ 법률이론을 사례분석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서로 다른 영역의 법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보지 못하며 실생활에 있어서의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⁷⁷⁾ 따라서 사례분석식 교수법은 모든 경우에 알맞은 접근방식이 아니다.⁷⁸⁾ 사례분석식 교수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업무에 필요한 것의 일부를 충족하도록 돕지만 유능한 법률가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작은 부분만을 제공해 줄 뿐이다.⁷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식 교수방식은 타성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수들은 어리석다거나 부적당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랑델식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수들은 "별거 벗은 임금님"처럼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고 단순히 타성에 젖어 로스쿨 강의의 현행 패러다임을 좇고 있다는 것이다.⁸⁰⁾ 사례분석 방식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식의 문답식 강의방식도 비효율적이다. 소크라테스식 강의실에서는 교수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학생들이 스스로 관련 법원칙을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⁸¹⁾ 대부분의 로스쿨의 1학년 클래스는 대규모

73) Filippa Marullo Anzalone, *It All Begins with You: Improving Law School Learning Through Professional Self-Awareness and Critical Reflection*, 24 *Hamline L. Rev.* 324 (2001).

74) John Sonsteng & David Camarotto, *Minnesota Lawyers Evaluate Law Schools, Training and Job Satisfaction*, 26 *Wm. Mitchell L. Rev.* 327, 330 (2000).

75) Klein, *supra* note 89, at 633; Jerome F. Kramer, *Scholarship and Skills*, *Nat'l L.J.*, Jan. 9, 1989, at 15. 미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교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은 공인이나 면허증을 받기 전에 반드시 감독이 따르는 훈련연수기간을 거친다. 이상한 것은 건강과 교육 및 재산이 위기에 처한 고객 뿐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는 실무훈련을 무시하고 단순히 일련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자세한 것은 Steven Keeva, *Stars of the Classroom: Will Top Profs Who Instruct via Internet Dominate Teaching?* 83 *A.B.A. J.* 18 (1997) 참조.

76) Sandra R. Klei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13 *Loy. L.A. Int'l & Comp. L.J.* 601, 628 (1991).

77) *Id.*

78) 사례분석식 강의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Stephen M. Feldman, *The Transformation of an Academic Discipline: Law Professors in the Past and Future (or Toy Story Too)*, 54 *J. Legal Educ.* 471, 482 (2004) 참조.

79) See Gerald F. Hess, *Heads and Hearts: Th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in Law School*, 52 *J. Legal Educ.* 75, 81 (2002).

80) Vernellia R. Randall, *Increasing Retention and Improving Performance: Practical Advice on Using Cooperative Learning in Law Schools*, 16 *T.M. Cooley L. Rev.* 201, 209 (1999).

81) Sandra R. Klei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13 *Loy. L.A. Int'l & Comp. L.J.* 601, 630 (1991).

이고, 규칙적으로 교실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⁸²⁾

법학의 학문적 공동체는 교육보다는 연구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교수들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연구와 교육의무를 조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가끔은 자기의 학문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욕구를 희생시키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된다(publish-or-perish)는 심리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을 통한 성취보다는 학문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연구에 투입하므로 법률 교과목의 개발이나 개선을 등한히 하게 된다. 교수들은 필연적으로 연구의 주제가 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므로 이렇게 학문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교육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⁸³⁾ 대학의 환경은 중대한 변화를 조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⁸⁴⁾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교수들 중에는 그들이 성공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 중의 하나는 그들이 과거에 뛰어난 학생들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실무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수들은 지금까지 실무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이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⁸⁵⁾

왜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배우느냐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교수들은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교수들은 사례분석식 교수방법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의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환영한다. 그러나 전통을 중히 여기는 학자들은 법학교육의 실무적인 측면은 로스쿨 바깥의 기회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로스쿨 교실에서는 실무훈련을 위해 이론교육을 희생시키는 데 대해 저항한다. 또 어떤 교수들은 소크라테스식 방법과 사례분석 방법을 더 선호하여 새로운 교육기술(실무훈련)을 도입할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⁸⁶⁾ 그리고 초심자 교수도 그러한 대안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기를 꺼려 할 것이다.

기존의 교수진의 환경적 전통과 가치와 일치하면서도 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의 혁신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체계전반에 걸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⁸⁷⁾ 혁신이 외부의 간섭이나 학교 밖에서의 영향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느껴질 경우 의심하고 적대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82) Jennifer S. Holifield, Taking Law School One Course at a Time: Making Better Lawyers by Using a Focused Curriculum in Law School, 30 J. Legal Prof. 129, 134 (2006).

83) William R. Trail & William D. Underwood, The Decline of Professional Legal Training and a Proposal for its Revitalization in Professional Law Schools, 48 Baylor L. Rev. 201, 213 (1996).

84) Lewis D. Solomon, Perspectives on Curriculum Reform in Law Schools: A Critical Assessment, 24 U. Tol. L. Rev. 1, 37 (1992).

85) Harry T. Edwards, A New Vision for the Legal Profession, 72 N.Y.U. L. Rev. 567, 571 (1997). 많은 젊은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서의 과당경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단지 몇 년 동안의 경험만을 쌓은 후에 교직을 찾는다. 이러한 교수들은 법률실무에 대해 지식이 적고 따라서 실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Id.

86) Steven Friedland, How We Teach: A Survey of Teaching Techniques In American Law Schools, 20 Seattle U. L. Rev. 1, 41 (1996).

87) Lewis D. Solomon, Perspectives on Curriculum Reform in Law Schools: A Critical Assessment, 24 U. Tol. L. Rev. 1, 35 (1992).

2. 구시대적 교육과정,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

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스타일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⁸⁸⁾ 더러는 교수 개인의 선호가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⁸⁹⁾ 변화에 대한 장벽은 실체법 과목과 실무훈련 과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교수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맥크레이트(MacCrate) 보고서가 실무 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실무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았던 교수들은 실무교과목을 맡으려 하지 않고, 또 나아가 실무를 가르치는 것을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명성이 덜 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⁹⁰⁾ 실무 교과목은 덜 분석적이고 이론적으로 덜 엄격해서 가르칠만한 것이 못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실무나 임상 교과목은 전통적인 이론강의에 비하여 로스쿨 예산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⁹¹⁾ 유감스럽게도 맥크레이트 보고서는 대단히 이론적이었으며 보고서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⁹²⁾

대다수의 로스쿨은 법학연구(legal research)와 법률문서작성(legal writing)을 1년차 과목으로서 별도로 부과한다.

"법대생 취업을 위한 전국연합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 Foundation, NALP)"는 매년 J.D. 졸업자들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취업고고와 연봉조사(The Employment Report and Salary Survey, ERSS)에 발표한다.⁹³⁾ 198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조사에 응한 졸업생들의 절반 이상은 첫 직업을 로펌에서 구했다. 조사는 또한 변호사가 2~10인 소형 로펌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⁹⁴⁾ 대형 로펌은 신규 채용자에게 사내 실무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에 작은 규모의 로펌들은 그러지 못하다.

20세기 전반(前半)에 임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프랭크(Jerome Frank) 판사는 법학교육을 비판하면서 도제제도를 약간 수정하여 일부를 받아들임으로써 임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버먼(John M. Burman) 교수도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많은 미국의 로스쿨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은 사실상 적어도 모든 변호사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기술의 절반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프랭크 판사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1969년 버거(Warren E. Burger) 대법원장도, 미국의 로스쿨은 나름대로 학생들을 법원리와 분석면에 있어서 잘 가르치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에

88) Andrew J. Pirie, Objectives in Legal Education: The Case for Systematic Instructional Design, 37 J. Legal Educ. 576, 582 (1987).

89) Harry T. Edwards, Another "Postscript" to "The Growing Disjunction Between Legal Education and the Legal Profession", 69 Wash. L. Rev. 561, 568 (1994).

90) Deborah Jones Merritt & Barbara F. Reskin, Sex, Race, and Credentials: The Truth about Affirmative Action in Law Faculty Hiring, 97 Colum. L. Rev. 199, 261 (1997).

91) Ann Juergens, Using the MacCrate Report to Strengthen Live-Client Clinics, 1 Clinical L. Rev. 411, 414 (1994)

92) Patrick R. Hugg, Comparative Models for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mproved Admissions Standards and Professional Training Centers, 30 Val. U. L. Rev. 51, 57 (1995).

93) NALP, Jobs & JD's: Employment and Salaries of New Law Graduates, <http://www.nalp.org/content/index.php?pid=304>.

94) NALP, Trends in Graduate Employment--1985-2004, <http://www.nalp.org/content/index.php?pid=274>.

의하면, 현대의 로스쿨은 인간지향적인 카운슬러이자 변화하는 세계의 분출하는 욕구충족의 조력자를 사회에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로스쿨 졸업자들의 결점은 법률지식이 모자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소재인 사실과 사람을 다루는 훈련이 모자란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⁹⁵⁾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들은 약간의 법률지식은 가졌으나 그것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는 빈약한 졸업생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다.

3. 교육비용의 사회적·경제적 정당성

(1) 교육비용

로스쿨의 예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 항목이다. 직접성 인건비에 다 각종의 부수적인 혜택을 합하면 로스쿨 교수 1인당 년평균 25만 달러에 이르는 경비가 소요된다. 교수와 비서와 사서 뿐 아니라 로스쿨에는 대규모의 정보기술(IT) 요원, 입학사무, 취업지도, 학생상담 등을 위한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봉급과 부수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임상의학자, 법률문서 작성과 연구를 위한 강사 등이 있다.

IT 관련비용을 도서관 경비에 포함시킨다면 도서관 운영의 총비용은 두 번째로 큰 지출항목이 된다. 도서관입비용은 예산증가 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IT의 출현은 정보의 획득은 증가시켜 주었지만 도서관의 운영비용을 감소시켜 주지는 못했다.

사립로스쿨에게 세번째로 큰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장학금 분야이다. 장학금제도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많은 로스쿨에서 등록금 수입의 15~20%를 차지한다. 등록금이 인상되게 되면 로스쿨은 두 방향에서 압력을 받게 된다. 하나는 더 많은 장학금에 대한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부터 동료학생의 교육비 보조에 대한 저항이다 (교외장학금과 기부금 등은 별개 문제이다).

<표 6> Percent of Tuition Paid by Need and Merit Based Grants 1990-2004

(단위 %)

	1990~ 1991	1991~ 1992	1992~ 1993	1993~ 1994	1994~ 1995	1995~ 1996	1996~ 1997
Public	14.28	14.50	15.65	20.45	18.02	20.81	19.72
Private	10.42	11.37	10.60	11.17	11.45	12.21	12.65
Total	11.09	11.92	11.34	12.63	12.53	13.57	13.89

	1997~ 1998	1998~ 1999	1999~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Public	20.99	20.36	21.33	22.60	22.96	22.64	21.28
Private	12.76	13.67	14.74	15.27	16.22	16.98	17.51
Total	14.23	14.93	15.99	16.67	17.53	18.19	18.31

95) William P. Quigley, Introduction to Clinical Teaching for the New Clinical Law Professor: A View From the First Floor, 28 Akron L. Rev. 463, 469-70 (1995).

특히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낮지 않으면서 비용이 저렴한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사립학교의 등록금을 부담스럽게 한다. 공립학교는 등록금이 낮으므로 여전히 등록금 인상을 통하여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 역시 교외의 자금지원을 추구한다. 일부 학교는 등록학생수를 늘림으로써 재정확충을 꾀하고 있으나 이는 LSAT 와 GPA를 희생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률교육은 변호사가 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003년 법대생이 대출총액은 25억 5천만 달러이다.⁹⁶⁾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공립 로스쿨의 경우 자주민 등록금은 5,530달러에서 13,145달러로 58%, 비자주민 등록금은 11,683달러에서 22,897달러로 49%, 사립 로스쿨의 경우 16,798달러에서 28,900달러로 42%가 인상되었다.⁹⁷⁾ 2006-07학년도 공립 로스쿨의 평균 자주민 등록금은 13,000달러, 비자주민 등록금은 26,000달러, 사립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29,000달러가 넘었다.⁹⁸⁾ 1992년에서 2002년 사이에 공립 로스쿨의 자주민 등록금 인상률은 134%였다.⁹⁹⁾ 같은 기간에 공립의 비자주민 등록금은 100%, 사립의 등록금은 76% 인상되었다.¹⁰⁰⁾ 로스쿨 졸업생의 평균 학자금 빚은 지난 5년 동안 2배로 늘어났다.¹⁰¹⁾ 2006년, 사립 로스쿨 졸업생의 평균 학자금 용자는 76,763달러이고, 공립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는 48,910달러였다.¹⁰²⁾ 연방 Stafford 론(federal Stafford loans)으로부터 학생들이 연간 대부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8,500달러이고 1993년 이래 이 액수는 증가되지 않았다.¹⁰³⁾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률은 매년 8%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률의 두 배가 넘는다. 이러한 속도라면 사립 로스쿨의 평균적인 교육비는 2015년까지 180,000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만약에 로스쿨의 등록금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일치한다면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교육비)은 96,000달러 이하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Public Resident Tuition

PUBLIC SCHOOL RESIDENT STUDENT Year	#of Schools in Calculation	Average Tuition/ Fees	Increase Over Previous Year	Median Tuition& Fees	Increase Over Previous Year
1985	74	\$2,006		\$1,792	
1986	74	\$2,206	10%	\$1,969	10%
1987	74	\$2,398	9%	\$2,124	8%

96) N. William Hines, Ten Major Changes in Legal Education Over the Past 25 Years, AALS News, at 1-2 (Aug. 2005), http://www.aals.org/documents/aals_newsletter_aug05.pdf.

97) Am. Bar Ass'n,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2005), www.abanet.org/legaled/statistics/charts/stats%20-%2005.pdf.

98) id.

99) Am. Bar Ass'n, American Bar Association Fact Sheet: Stafford Loan Program Increase (2003),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downloads/lrap/abafactsheetstaffordlimits.pdf>.

100) Am. Bar Ass'n, Meeting the Challenge of Law Student Debt: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s (LRAPs),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downloads/lrap/finallawschoollrapbrochure.pdf>.

101) id.

102) Leigh Jones, Salaries Rise, So Does the Debt, Pay Hikes Dwarfed by Law School Bills, Nat'l L.J. (Jan. 30, 2006).

103) Am. Bar Ass'n, Law School Tuition Average and Median (2005), www.abanet.org/legaled/statistics/charts/stats%20-%2005.pdf.

1988	74	\$2,608	9%	\$2,267	7%
1989	74	\$2,916	12%	\$2,573	13%
1990	74	\$3,236	11%	\$3,012	17%
1991	75	\$3,591	11%	\$3,225	11%
1992	75	\$4,015	12%	\$3,537	10%
1993	75	\$4,418	10%	\$4,086	16%
1994	76	\$5,016	14%	\$4,397	8%
1995	76	\$5,530	10%	\$4,879	11%
1996	74	\$5,955	8%	\$5,269	8%
1997	76	\$6,521	10%	\$5,956	13%
1998	77	\$6,943	6%	\$6,501	9%
1999	77	\$7,367	6%	\$6,752	4%
2000	78	\$7,790	6%	\$7,201	7%
2001	78	\$8,419	8%	\$7,738	7%
2002	78	\$9,392	12%	\$9,252	20%
2003	78	\$10,819	15%	\$9,979	8%
2004	80	\$11,860	10%	\$11,012	10%
2005	80	\$13,145	11%	\$12,107	10%
2006	80	\$14,245	8%	\$13,107	8%
2007	80	\$15,455	9%	\$14,313	9%

<표 8> Public Non-Resident Tuition(1985~2007)

PUBLIC SCHOOL NON-RESIDENT STUDENT Year	#of Schools in Calculation	Average Tuition/ Fees	Increase Over Previous Year	Median Tuition & Fees	Increase Over Previous Year
1985	74	\$4,724		\$4,786	
1986	74	\$5,160	9%	\$5,300	11%
1987	74	\$5,616	9%	\$5,706	8%
1988	74	\$6,017	7%	\$5,930	4%
1989	74	\$6,759	12%	\$6,687	13%
1990	74	\$7,365	9%	\$7,390	11%
1991	75	\$8,250	11%	\$8,006	11%
1992	75	\$9,070	10%	\$8,850	11%
1993	75	\$9,763	8%	\$9,640	9%
1994	76	\$10,667	9%	\$10,785	12%
1995	76	\$11,683	10%	\$11,656	8%
1996	74	\$12,419	6%	\$12,275	5%
1997	76	\$13,234	7%	\$13,297	8%
1998	77	\$14,056	6%	\$14,220	7%
1999	77	\$14,754	5%	\$15,152	7%
2000	78	\$15,683	6%	\$16,113	6%
2001	78	\$16,643	6%	\$17,538	9%
2002	78	\$18,146	9%	\$18,650	6%
2003	78	\$20,171	11%	\$20,110	8%
2004	80	\$21,905	9%	\$21,458	7%
2005	80	\$22,987	5%	\$23,506	10%
2006	80	\$25,227	10%	\$25,262	8%
2007	80	\$26,691	6%	\$26,432	5%

많은 로스쿨 졸업생들은 학자금으로 진 빚 때문에 급여가 낮은 공익분야에서 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은 평균 85,000달러(학부의 대부학자금 제외)의 빚을 갚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003년의 경우, 공립 로스쿨 졸업생 중 중간(median)에 해당하는 학자금 빚은 대략 45,000달러에 이르고, 사립 로스쿨의 그것은 약 69,000달러였다.¹⁰⁴⁾ 로스쿨 졸업생들이 빚 때문에 공익분야에서의 종사를 꺼리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표 9> Average Amount Borrowed for Law School (2001-2006)

Academic Year	Public	Private
2006-2007	\$57,170	\$87,906
2005-2006	\$54,509	\$83,181
2004-2005	\$51,056	\$78,763
2003-2004	\$48,910	\$76,563
2002-2003	\$45,763	\$72,893
2001-2002	\$46,499	\$70,147

<http://www.abanet.org/legaled/statistics/charts/stats%20-%2020.pdf>

평등정의구현(Equal Justice Works)이 2002년 학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66%가 학자금 빚 때문에 공익분야를 일터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답했으며, 반면에 공공분야의사용자의 68%는 필요한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였다.¹⁰⁵⁾

대형 로펌이 후한 초봉을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졸업생들을 유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성이 높은 대형 로펌이 우수한 로스쿨의 졸업생들, 그것도 소수에 대해 고액연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들은 이미 많은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학자금 빚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많은 빚을 진 학생들은 중소 로펌을 두고 경쟁하는데, 그러한 로펌에서의 빚-소득 비율은 주택할부금과 맞먹는다. 정부나 공공분야에 취업하는 학생들은 평균 35,000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그 수입을 85,000달러의 빚과 비교해 보면 금전적인 압박은 대단한 것이다.

과도한 빚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많은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상환지원 프로그램(LRAP)을 시행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프로그램은 법학교육의 비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소수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LRAP는 연방정부, 주변호사협회,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것이지만 2001년 이후 이 프로그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02년 기준으로 56개의 로스쿨과 6개 주(州)만이 LRAP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2006년 현재 LRAP 프로그램은 100개의 학교와 17개 주(州)가 두고 있고 9개 주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LRAP의 전형적인 모습은 연방 학자금을 대부분 받은 학생은 누구나 소득에 따른 일정한 분담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대부금 상환은 소득의 일정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하며 25년의 상환 후에도 남은 잔액은 면제하는 것이다.¹⁰⁶⁾ 그러나

104) N. William Hines, Ten Major Changes in Legal Education Over the Past 25 Years, AALS News, at 5 (Aug. 2005), http://www.aals.org/documents/aals_newsletter_aug05.pdf.

105) Equal Just. Works, NALP, & the P'ship for Pub. Serv., From Paper Chase to Money Chase: Law School Debt Diverts Road to Public Service 6 (2002), available at <http://www.equaljusticeworks.org/files/lrapurvey.pdf>.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결혼이나 자녀의 양육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25년간의 상환기간은 너무나 길다. ABA는 결혼으로 인한 손해나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줄이는 로비를 하기 위해 대부금 상환 및 면제위원회(Commission on Loan Repayment and Forgiveness)를 설치했다.¹⁰⁷⁾

(2) 미국 법학교육의 경제적 · 윤리적 측면

미국의 법학교육은 경제적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것인가? 미국 로스쿨은 점점 더 체질이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일류가 아닌 로스쿨들은 자동차 산업처럼 몰락할 것이 아닌가? 교육기관의 자기만족과 탐욕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은 아닌가?

미국 로스쿨의 등록금은 어떤 곳에서는 년 40,000달러가 넘고, 사립 로스쿨에서는 보통 30,000달러 대 중반이다.¹⁰⁸⁾ 주립 로스쿨에서조차도 어떤 곳은 20,000달러에서 30,000달러이다.¹⁰⁹⁾ 로스쿨은 3년제 대학원 과정이므로 학생들은 이러한 비용문제를 4년간의 대학을 마친 후에 마주치게 된다.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법학은 학부에서의 과목이며 통상 변호사시험과 모종의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몇 개의 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에서는 인가를 받은 로스쿨이 집단적으로 법학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독점권은 물론 법에 의해 인정된 것이고 따라서 법에 의해서 언제나 폐지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수십년 동안 집단적인 독점권에 의한 보호 아래 로스쿨은 학문적으로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번영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로스쿨은 과도한 지성적 야망이 부과되어 있지 않았다. 일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로스쿨의 교실에서의 강의는 원리적인 설명이었고, 교수진의 학문성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학제간의 학문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명성이 높은 로스쿨조차도 지성의 온상은 아니었으며 그래도 최상의 로스쿨과 나머지 로스쿨간에는 커다란 학문적 활동의 갭이 존재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사정이 달랐다. 대부분의 로스쿨은 교수의 학문성과 연구실적의 출판을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2차 대전 이후, 특히 1970년부터 미국의 법학교육의 지적 수준과 학문적 수준이 놀랍게 향상되었다. 법학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학문적 수준의 지평이 높아졌다. 몇몇의 엘리트 로스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많은 로스쿨에서

106) Am. Bar Ass'n, American Bar Association Fact Sheet: The Income-contingent Repayment Option of 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ending Program 1 (2003), <http://abanet.org/legalservices/downloads/lrap/abafactsheeticroption.pdf>.

107) ABA Comm'n on Loan Repayment & Forgiveness, Lifting the Burden: Law Student Debt as a Barrier to Public Service 38-39, available at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downloads/lrap/lrapfinalreport.pdf>.

108) Law: What are the priciest and cheapest private law schools?, U.S. News & World Rep.,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grad/law/private_cost (last visited June 4, 2008) (ABA 인가를 받은 모든 미국의 로스쿨의 2007-08 학년도 등록금(tuition and fees)).

109) Law: What are the priciest and cheapest public law schools?, U.S. News & World Rep.,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grad/law/public_cost (last visited June 4, 2008) (미국의 주립 로스쿨의 2007-08 학년도 등록금).

이루어졌다. 특히 교수진의 학문성이 어느 곳에서나 증진되었다.

교수의 학문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교실에서의 강의와 법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전체로서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강력한 학문적 가치를 갖는 로스쿨은 교수에게 지적인 압력 뿐 아니라 도덕적인 압력까지 가하여 교수직을 비즈니스 이상의 그 무엇이 되게 한다.

다방면으로 법학교육의 추세는 최근 수십년간 감탄할 만큼 변화되었다.

법학교육은 돈이 들며 등록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에의 접근성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의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는 등록금 인상률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률을 앞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로스쿨의 교육비용은 지속적이고도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로스쿨의 등록금은 공립·사립을 막론하고 일반 인플레이션률의 2~3배로 올랐다. 최근에 등록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률 보다 3배 이상인 학교도 많았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돈은 무엇보다도 법대 학생과 그 가족으로부터 나온다.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은 운영비와 예산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크게 의존한다. 불과 소수의 학교만이 기부금으로부터 실질적인 수입을 이끌어 낸다.¹¹⁰⁾ 2006년 기준으로 56개의 대학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¹⁾ 스와스모어(Swarthmore) 대학의 경우 13억 달러의 기부금을 축적해 놓고 있으며 그 수익금으로 대학운영 예산의 43%를 충당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스와스모어 대학은 학생 1인당 73,690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 중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학생의 부담은 1인당 41,000달러였다.¹¹²⁾ Levin 예일대 총장도 2006년 2000여명의 신입생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용의 절반은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¹¹³⁾

<표 10> 15 Schools With Over 500,000 Endowment Per Student, 2005

Institution	Endow/Student	3.5%Yield	4.6%Yield	6%Yield
Princeton	\$1,763,539	\$61,724	\$81,123	\$105,812
Yale	1,439,114	50,369	66,199	86,347
Harvard	1,409,498	49,332	64,837	84,570
Stanford	1,001,208	35,042	46,056	60,072
Grinnell	958,675	33,554	44,100	57,522
Pomona	902,899	31,601	41,533	54,174

110) 미국에는 2000개 이상의 대학(colleges and universities)이 있으나 그 중 14개의 대학이 모든 기부금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부금을 가지고 있는 대학조차도 기부금으로부터의 수익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기부금을 더 확충하는 데 사용하고 등록금이나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 See Richard Vedder, Federal Tax Policy Regarding Universities: Endowments and Beyond 11-20 (2008), http://www.collegeaffordability.net/Final%20Endowment%20Report_0130.pdf. See also Lynne Munson, Op-Ed., College Tuitions Rise While Endowments Simply Swell, USA Today, Oct. 18, 2007.

111) Fifty-six American universities have endowments exceeding a billion dollars. See Justin Pope, More Colleges Join an Elite Rank, Chi. Trib., Jan. 23, 2006, at 14.

112) Jonathan D. Glater & Alan Finder, In Tuition Game, Popularity Rises With Price, N.Y. Times, Dec. 12, 2006

113) Richard C. Levin, Preparing for Global Citizenship: The Freshman Address, Yale Alumni Mag., Nov./Dec. 2006.

Swarthmore	842,882	29,501	38,772	50,573
Rice	773,709	27,080	35,591	46,423
Amherst	763,398	26,719	35,116	45,804
MIT	719,214	25,172	33,084	43,153
Williams	697,313	24,406	32,076	41,839
Cal Tech	696,793	24,387	32,052	41,806
Wellesley	613,502	21,473	28,221	36,810
Berea	600,667	21,023	27,631	36,040
Dartmouth	513,222	17,963	23,608	30,793

로스쿨들도 상당한 공공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보조금은 주립대학에 속하는 공립의 로스쿨의 경우처럼 때때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로스쿨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학생대부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교수 급여가 로스쿨의 주요 운영비이고 상급 교수들의 연봉은 지난 30년 동안 불가상승률을 훨씬 앞질렀다. 로스쿨 교수들의 연봉은 일반적으로 대략 대학 (college and university) 교수의 평균 연봉의 2배 정도이다. 2006-07학년도의 로스쿨의 전임교수의 평균 연봉은 143,012달러였고; 학부의 문과대학 교수의 평균 연봉은 76,624달러였다. 2004-05학년도 로스쿨 교수의 평균연봉은 111,909달러인 반면 일반대학의 교수의 평균 연봉은 66,407달러였다.¹¹⁴⁾

로스쿨 교수의 연봉이 오른 반면에 강의부담은 줄었다. 30년 전의 미국의 많은 로스쿨에서는 교수는 학기당 3과목 내지 4과목을 가르쳤다: 일년에 6과목 이상 가르쳤다. 1990년대까지는 학기당 2과목, 일년에 4과목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에 최고의 로스쿨들에서는 통상, 한 학기에 2과목, 다른 학기에 1과목, 일년에 3과목(또는 10학점) 정도로 줄었다.¹¹⁵⁾ 최고라고 불리지 않는 다른 많은 로스쿨에서도 이 수준으로 강의부담을 줄여 왔다.

<표 11> Law Professor Teaching Loads

Institution	Courses	Credits
Yale	3	
Harvard	3	
Stanford		9 or 10
Columbia		10
New york		10
University of Chicago		11(quarter system)
University of pennsylvania		10
University of Michigan		10
University of Virginia		10
Northwestern	3	
Cornell	3	

114) Scott Jaschik, Faculty Salaries Up 3.2%, Inside Higher Educ., Apr. 1, 2005, <http://www.insidehighered.com/news/2005/04/01/salaries>.

115) Posting of Gordon Smith to Conglomerate: Business, Law, Economics, Society, Law Professor Teaching Loads, http://www.theconglomerate.org/2005/04/law_professor_t.html (Apr. 12, 2005).

Duke	3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10
Georgetown		10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10
University of Texas-Austin		10
Vanderbilt		1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3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10
Boston	3	
George Washington	3	
University of Iowa		12
Washington & Lee ...		10
University of Notre Dame ...	3(30 credits over 3 years)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3(no fewer than 9 credits)	

http://www.theconglomerate.org/2005/04/law_professor_t.html

높은 수준의 교수연봉과 낮은 강의부담만이 로스쿨의 교육비용을 높인 요소는 아니다. 최근 수십년간 많은 로스쿨에서 행정직원의 수와 연봉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다.¹¹⁶⁾ 로스쿨들은 새로이 획득가능한 IT기술에 대해서 뿐 아니라 건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 2~30년 전과 비교하여 낭비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적당한 정도로 법학 분야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은 그것이 학생이 부담한 등록금에서 나온 것이든 직·간접의 공적 보조금이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법학의 학문적 성취가 보다 나은 법학교육과 보다 나은 변호사업에 기여한다. 이러한 사실은 변호사업이 유례없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미국사회에서는 논리적인 생각이다.

물론 보조금의 성격과 정도는 문제로 남는다. 예를 들면, 학문적 노력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강의부담이 줄어들면 이것은 교수의 연구를 위한 암묵적인 보조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고등학교 교사의 통상적인 강의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특별히 헌신적이지 않다면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상위 2~30개 로스쿨에게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보다 하위에 랭크되는 로스쿨에게는 불확실하다. 그것은 분명히 법대 학생과 그 가족이 상당한 빚을 져 가면서 계속하여 기꺼이 등록금을 지불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자들은 대도시의 훌륭한 로펌에서의 매력적인 보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¹¹⁷⁾ 또한 정부의 보조금, 정부 보증의 학자금 대부 등이 계속 제공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오직 인가받은 로스쿨을 졸업한 자에게만 시험을 통하여 변호사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집단적 독점권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느냐에 달려 있다.

116) 미연방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2006년에 처음으로 전임행정직원의 수가 전임 교수의 수를 능가하였다. Scott Jaschik, The Shrinking Professoriate, Inside Higher Educ., Mar. 12, 2008, <http://insidehighered.com/news/2008/03/12/jobs>.

117) Debra Cassens Weiss, Big Salaries Linked to Big-Name Law Schools; Small Pay Is Larger Reality, A.B.A. J., Jan. 8, 2008. 58개의 로스쿨 졸업자의 초임이 연간 60,000달러인 남짓하다는 사실은 대형 로펌의 연간 초임이 160,000달러라는 사실에 묻혀버리고 만다.

냐에 달려 있다.

로스쿨의 비용과 사람들의 지불의사와 관계를 구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법학교육의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측면이다. 법학교육의 비용이 비싼 것은 부분적으로는 로스쿨 교수의 연구와 저작에 대한 보조금에 기인한다. (3~40년 전 보다 훨씬 많은 로스쿨에 보다 많고 좋은 학자가 있다).

덜 학문적이고 더 시장지향적인 현실적인 모델의 법학교육 모델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쨌든 거의 모든 엘리트 로스쿨에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적으로는 알파하고 도덕적으로는 덜 규범적인 법학교육, 즉 "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덜 철저한 법학교육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의 고등교육의 추세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법학교육을 포함한 영국의 고등교육은 학문적 성과와 책임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부가 감독하는 연구평가에 의해 변형되었다. 그것은, 적어도 신랄하게 비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직원에게 관료적인 힘이 부여되고 정량평가의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교수 각자는 몇 페이지 혹은 몇 단어짜리 연구논문을 발표했는지가 중요했다. 비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의의 수준이나 학문적 연구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학문적 도덕성만 급격하게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다.

(3) 규모의 문제

로스쿨 규모는 로스쿨의 경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장단의 복합적인 효과가 있어서 규모가 작아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작은 규모로 인하여 극복할 수 없는 문제도 많다.

① 교과목의 넓이와 깊이

모든 과목을 망라하는 교육과정, 다양한 교수법, 그리고 세련된 법학교육이 요구하는 기술적 훈련과정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만큼 작은 규모의 로스쿨에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러한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기인하는 덕분이다.

② 학생 1인당 높은 고정비용

규모가 작은 로스쿨의 비경제성은 레벨(Paul A. LeBel) North Dakota 로스쿨의 학장이 잘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의 로스쿨들 로스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재능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닌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행정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소규모의 로스쿨의 학생 1인당 초기 투자는 규모가 큰 로스쿨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소규모 로스쿨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두 방면에서의 압력이 있다. 하나는 등록금 인상이 우수한 학생의 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랜 전통의 디킨슨(Dickinson) 로스쿨은 법률지식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의 바다 속에서 학교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와 합병한 것은 소규모의 로스쿨의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단적인 예가 되었다. 당시의 프레이(Robert Frey) 디킨슨 로스쿨 학장은 "고급 기술에 대한 비용, 비용 및 노동집약적 임상법학교육, 늘어가는 새 분야에 유능한 교수를 유치할 필요성 등이 점증함에 따라 특히 소규모의 로스쿨로서는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며 버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⁸⁾

(4) 비용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의 모금행위

① 정책적 입법에 의한 접근

연방과 주(州)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비용 문제에 대한 다단계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07년 9월 27일 연방 대학비용감축 및 교육기회접근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H.R. 2669))이 서명되어 법률로 발효되었다. 그 법의 중요한 두 개의 규정으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수입에 기초한 상환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공익 서비스에 종사하는 졸업생에 대한 대부금 면제 규정이다. 수입에 기초한 상환 규정은 수입에 비하여 대부금의 비율이 높은 모든 졸업생에게 적용되는데, 연방 학자금 상환금을 가처분 소득(discretionary income)의 15% 이하로 한정하는 룰에 따름으로써 매월 상환금이 감축된다. 대부금 면제 규정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은 120회(약 10년)에 걸쳐 상환금을 지불하면 미이행 잔액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② 기부금품모집에 의한 접근

재정의 확충은 교수, 학생, 그리고 직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일 뿐 아니라 로스쿨의 학문적 목표를 증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학교는 재정의 확충 없이는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 등록금과 공적 자문에 의한 전통적인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사립의 로스쿨은 역사적으로 자선적 기부금으로 등록금 수입을 보충해 왔다. 사립의 로스쿨의 등록금은 비싸지만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학생수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에는 한계가 있다. 등록금 의존적인 사립의 로스쿨은 다양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금이 필요하다. 자선적 기부는 학교로 하여금 거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하는 것과 질 높은 교육기관의 목표에 상응하는 학생들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증대는 등록금 문제를 완화해 준다. 교수에 대한 지원, 도서관, 그리고 기술의 도입 등 학교전체를 위한 모금은 또한 학교의 등록금 의존도를 감소시켜 준다.

공립학교도 역시 사적인 모금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공립학교는 주정부의 세출경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립학교 만큼 등록금에 심하게 의존하지 않는다. 바로 공공예산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공교육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의 지원이 공립 로스쿨의 해결사는 아니다. 공공 자금의 지원은 회계연도 마다 다르고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공적 자금은 쓰일 곳이 많아서 주정부의 예

118) Charles Thompson, Dickinson Trustees Felt Now Was the Time/Changes in Legal Business Helped Prompt Merger with Penn State, Harrisburg Patriot, Jan. 19, 1997, at B3, 1997 WL 7504843.

산은 공립 로스쿨에게 일정하게 지원하지 못한다. 대학은 항상 예산배분을 위해 로비를 하여야 한다. 소위 많은 ‘주립’기관들은 기관예산의 많은 부분이 주정부의 자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충당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주로부터 지원받는’ 또는 ‘주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관에 불과하다. 사적인 모금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교육비용과 주정부의 부족한 지원의 차액을 벌충하여야 한다.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금된 재원으로 주정부의 책임에 속하는 기본적인 운영비나 유지비를 충당할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의 학문적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모금이 쓰여야 한다. 자선에 의한 모금은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축된 주정부의 지원을 벌충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립학교 지도자들은 입법부에 대해서 자기 학교를 변호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은 대학본부가 떠맡아야 하는 일이지만 로스쿨 학장도 주정부의 지원이 모자람을 애석해 하고 있 기만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들도 사립학교의 지도자들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고 자선적 기부, 보조금, 그리고 기업가적 창의력 등을 발휘해야 한다. 그들은 교수들의 여행경비, 연구 보조, 그리고 계절학기 연구 자금 등을 공급해야 한다. 오늘날은 학장의 이러한 모금에 대한 수완 없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공립학교는 없다. 만일에 학장이 위대한 일의 수행자라면 그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동료교수에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자금을 모아야 한다.

매년 학계와 법조계가 법학교육에 새로운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공사립을 불문하고 재정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값비싼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의 로스쿨은 지속적으로 컴퓨터실, 무선 인터넷 시스템, 그리고 멀티미디어 강의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최신화해야 한다. 그들은 법정에서 훌륭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동문들을 위한 기술훈련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21세기 법학교육에서 필수적인 것은 재판에서의 변론, 다양한 임상프로그램의 제공, 잘 관리되는 학외 연수 등이다. 이러한 실무적인 법률업무에 더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에 관한 문제를 심사숙고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학생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로서의 법률의 의미를 주입시키는 것을 돕고 공동사회에서 타인을 돕는다는 모든 법률가의 의무를 학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그러한 교육과정은 학생-교수비율이 낮아야 하고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100명의 학생들을 극장 스타일의 커다란 강의실에 집어넣고 강의하는 것은 제한적인 핵심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교수법이 갖는 한계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학생들을 적절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도 다른 교과목의 경우처럼 점점 더 실험실 같은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작은 그룹과 다양한 교과과정의 제공은 더 많은 교수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교육과정은 다방면으로 팽창하고 있다. 실무기술을 훈련하는 과목이 보다 많아졌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귀중한 법률정책적 배경을 제공하고 한 때에는 학생들에게 법체계나 규범 및 전후 맥락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사고하는 만족감을 주었던 이론강좌도 많이 늘었다. 오늘날의 로스쿨은 다른 캠퍼스의 교과목, 예컨대 정치학, 역사학, 경영학, 철학, 경제학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학, 세법, 환경법, 국제법,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법과 기술, 그리고 화이트칼라 범죄 등의 상위레벨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에도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로스쿨은 계속하여 선택과목을 추가함으로써 교수비용(instructional costs)이 더 필요하지만 여전히 핵심 필수과목도 가르쳐야 한다. 국제적인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전통성과 참신성을 동시에

배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전문성을 가져야 하며 또는 한 과목 이상에서 최적의 배움터이어야 한다. 로스쿨의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여야 하며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전문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로스쿨의 도서관은 또 하나의 재정수요가 많은 곳이다. 수년 동안 로스쿨은 적어도 재원의 5분의 1을 할당하여 새로운 책을 사들이느라고 두 자리 수의 예산팽창을 경험하였다. 일년에 10%의 인플레이션률을 전제로 하면 100만달러의 도서구입 예산은 10만달러의 도서구입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만 구매력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된다. 도서관에는 훌륭한 사서와 기술자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여러 그룹의 고객에게 봉사한다. 훌륭한 교수진으로부터의 훌륭한 강의와 학생의 연구물 생산은 같은 정도로 훌륭한 법학 도서관으로부터 나온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뿐 아니라 공립대학의 주정부의 지원도 도서관의 이러한 점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지는 못한다.

요컨대 사립학교에서의 등록금에도 최고 한도가 있고 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주정부의 지원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날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문제는 법학교육이 어느 때 보다 고비용 구조로 바뀔수록 명백해졌다. 법학교육에 있어서 진보를 위해서는 로스쿨의 학장이 열정적인 모금활동가일 필요가 있다. 학장은 로스쿨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숙고하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 한다. 어떤 아이디어는 저절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그리고 다른 학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얻게 된다. 학장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모금운동은 학교의 지도자로서의 학장지위의 일부분이다.

IV. 법학교육의 개혁에 대한 연구보고서

ABA가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제하기 시작한 직후에 법학교육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법학교육의 효율성, 로스쿨을 졸업할 당시의 변호사로서의 준비된 정도, 그리고 변호사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곳 등을 조사·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들은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무시되고 말았다.

1. 리드 보고서(The Reed Report)

1921년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의 후원으로 나온 리드 보고서(Reed Report)¹¹⁹⁾는 법률실무 준비를 위한 교육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법률이론에 관한 지식(theoretical knowledge of the law)', 그리고 '실무훈련(practical skills training)'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¹²⁰⁾ 사례분석 교육을 통한 법적 분석은 오직 법률이

119) 이 보고서는 의학교육 분야의 실태를 점검·보고한 1910년의 이른바 Flexner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1910년에 공표된 Flexner 보고서는 부분적으로는 메디컬스쿨의 수와 학생수의 감축을 통하여 메디컬스쿨(medical school)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braham Flexner, *Medic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10) 참조; 이에 대하여는 Boyd처럼 Flexner 보고서가 시간제로 운영되거나 시설 또는 교수진이 부실한 메디컬스쿨들이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Susan K. Boyd, *The ABA's First Section: Assuring a Qualified Bar* 25 (1993)), Starr는 1906년 이후 많은 메디컬스쿨이 문을 닫게 된 원인은 Flexner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현상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Paul Starr,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118 (1982) 참조).

론에 관한 지식 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일반교육 부분의 충족 요건으로서 Reed 보고서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 2년의 로스쿨 이전단계의 교육이었다. ABA는 1921년 초에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추진하였으며, 1936년까지 32개 주가 최소한 2년의 대학교육을 로스쿨에의 입학허가 요건으로 삼았다.¹²¹⁾ 그러나 Reed 보고서가 권고한 실무기술의 훈련은 그리 열렬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2. 크램튼 보고서(The Crampton Report)

1979년 ABA는 Roger Cramton이 이끄는 위원회에 법학교육의 실상과 개혁을 위한 권고안 작성을 위임하여 이른바 크램튼 보고서(Crampton Report)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강제된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실습이 로스쿨 교육에 훨씬 효과적인 길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보고,¹²²⁾ 로스쿨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28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¹²³⁾ 모든 변

120) Alfred Z. Reed, Training for the Public Profession of the Law 276 (1921)

121) Edson R. Sunderland, History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its Work 147 (1953) (citing 1 ABA Rep. 26 (1878)).

122) Am. Bar Ass'n Section of Legal Educ. and Admissions to the Bar,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Lawyer Competency: The Role of the Law Schools 3 (1979) (이하 Crampton Report).

123) 크램튼 보고서는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28개 사항을 권고하였다.

1. 합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변호사로서의 경쟁력에 중요한 자질과 기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원자가 감소하더라도 유능한 변호사가 될 잠재력은 지니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해서는 안된다.
3. 로스쿨은 유능한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본적 기술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
4. 로스쿨과 교수는 개별화된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강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로스쿨은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공부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6. 로스쿨과 교수는 학업성취도를 정형적인 기말시험에 의한 평가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7. 로스쿨은 비록 교수의 자율성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커리큘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로스쿨은 기본적 법률실무에 관한 집중강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로스쿨은 유능하고 경험 있는 변호사나 판사에 의한 광범위한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교수-학생비율은 개선되어야 한다.
11. 로스쿨은 교수의 잠재력과 성적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12. 로스쿨과 교수는 법원, 의원, 그리고 변호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그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떻게 습득되었으며, 법률 서비스는 보다 개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작동 중인 법률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 ABA의 인가와 심사절차는 교수가 로스쿨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자체분석하게 하는 방식을 요구하여야 한다.
14. ABA와 그 관련단체들은 변호사의 기본적 기술 습득에 필요한 강의교재와 강의방법 개발과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 분과위원회(The Council of the 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변호사의 역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실험적 법학교육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6. ABA는 전국공판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가 개발한 것과 같은 교육과정 연구과제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증액하여야 한다.
17. ABA 소송분과(The ABA Section of Litigation)는 공판기술 연구그룹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매

호사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기술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즉, 그것은 법률문제 분석력, 법적연구 수행능력, 사안을 수집하여 분류하는 능력, 효과적인 문서작성 능력,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구두변론 능력,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을 동시에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의 수행능력(예컨대, 인터뷰, 상담, 협상 등), 법률적 업무를 체계화하고 처리하는 능력 등이다.¹²⁴⁾

이 보고서는 로스쿨은 전통적인 법학교육에서 경시해 왔던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예를 들면, 로스쿨은 지식과 관련 기술을 적절한 직업적 경험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에 불가결한 태도와 가치관 및 업무습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변호사의 특수한 영업 분야에 초점은 둔 통합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¹²⁵⁾ 이 보고서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커리큘럼에는 임상교육 프로그램이 첨가되는 것 빼고는 리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크램튼 보고서의 제안도 대체적으로 무시되고 말았다.¹²⁶⁾

3. 맥크레이트 보고서(The MacCrate Report)

1989년 로스쿨의 교육과 실제 변호사업무의 갭을 좁히는 연구를 위해 ABA산하에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되고 1992년에 MacCrate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로스쿨들은 실무기술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¹²⁷⁾

년 전국적으로 로스쿨공판기술 경연대회(모의재판)를 후원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8. 로스쿨에서 어떤 특수한 교과목을 이수하였느냐의 여부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19. 변호사 시험당국은 로스쿨이 학사일정을 개혁하거나 교육과정이 임상경험 혹은 소송기술 훈련 등에 비중을 둬으로써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20. 변호사 및 다른 법률업무의 고용자는 로스쿨 졸업생을 고용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시험방법으로 측정된 분석능력 기술 보다는 실무기술의 성취도와 능력 등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21.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래의 변호사의 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22. 로펌 및 다른 고용인은 소속 변호사가 로스쿨의 교육프로그램에의 참가를 요청받은 경우에 신간을 할애함으로써 법학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23. 법조계(The organized bar)는 변호사 및 고용인의 법학교육을 조력하고 지원할 의무를 명시하고 신봉하여야 한다.

24. 연방정부는 로스쿨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25. 연방정부는 또한 변호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의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26. Title IX 하에서의 로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확장되어야 하고, 임상교육에 대한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27. 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인단, The Legal Services Corporation)은 내실 있는 교육적 경험을 부차적으로 가져다 주는 로스쿨 임상프로그램이 고객에게 제공한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8. 주정부는 법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주립 로스쿨의 재정지원에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Cramton Report, supra not 132, at 3-7.

124) Id. at 9-10.

125) Id. at 17-18.

126) 이 점에 대해서는 John J. Costonis, The MacCrate Report: Of Loaves, Fishes, and the Future of American Legal Education, 43 J. Legal Educ. 157 (1993) 참조.

127) MacCrate Report, at 6.

이 보고서는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익혀야 하는 10가지 그룹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 문제해결(Problem solving)
- 법적분석 및 추론(Legal analysis and reasoning)
- 학문적 연구(Legal research)
- 사실관계 조사(Factual investigation)
- 의사소통(Communication)
- 상담(Counseling)
- 협상(Negotiation)
- 소송 및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 법적 업무의 구성 및 처리(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legal work)
-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해결(Recognizing and resolving ethical dilemmas)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고객과의 상호접촉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ABA는 로스쿨이 반드시 임상코스를 이수하도록 할 것을 의무로 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모든 변호사 시험 당국은 변호사 지망생들에게 실무기술을 테스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MacCrate 보고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무기술 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지만,¹²⁸⁾ 법학교육은 여전히 1992년과 비슷한 모습이다. 임상법학교육 강좌수가 많이 증가하였지만 진정으로 커리큘럼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적다.¹²⁹⁾

4. 빈더와 버그만 조사(The Binder and Bergman Survey)

David A. Binder와 Paul Bergman는 2003년 407명의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통하여 로스쿨의 임상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60%의 변호사가 실무훈련이나 연습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첫 진술녹취서를 받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게다가 절반은 그들이 받아낸 진술녹취서를 상급 변호사와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¹³⁰⁾

5. 셸든과 크리거의 연구(H. Sheldon and Krieger Research)

Kennon Sheldon과 Lawrence Krieger는 장기에 걸쳐 소재지역과 교육목적이 서로 다른

128) Am. Bar Ass'n, The Report of the 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 Narrowing the Gap (1992), [http:// www.abanet.org/legaled/publications/onlinepubs/maccrate.html](http://www.abanet.org/legaled/publications/onlinepubs/maccrate.html) 참조. 맥크레이트 테스트 코스의 목적은 새로이 진입하는 신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것이었다. Ann Juergens, Using the MacCrate Report to Strengthen Live-Client Clinics, 1 Clinical L. Rev. 411, 411-12 (1994).

129) Michael Hunter Schwartz, Teaching Law Students to be Self-regulated Learners, 2003 Mich. St. DCL L. Rev. 447, 468 (이하에서는 Schwartz, Teaching Law Students).

130) David A. Binder & Paul Bergman, Taking Lawyering Skills Training Seriously, 10 Clinical L. Rev. 191, 206-07. (2003)

두 부개의 로스쿨과 그 학생들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¹³¹⁾ 한 로스쿨(LS 1)은 로스쿨의 랭킹을 상승시키기 위해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성과를 기준으로 교수를 채용한 학교였고, 다른 로스쿨(LS 2)은 변호사업과 공익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교수를 채용한 학교였다. LS 2는 LS 1 보다 많은 수의 실무기술과 전문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강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는 LS 1의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더 낮은 동기부여 수준을 보인 반면, LS 2의 학생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율성(autonomy)과 참여도(engagement)를 나타냈다. Sheldon과 Krieger의 연구는 실무기술 교육과정이 변호사의 역량, 스트레스 대처, 개인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변호사로서의 개인의 능력개발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6. 「변호사 교육」에 관한 카네기재단의 보고서(「Educating Lawyers」 Report)

2007년 「변호사 교육(Educating Lawyers)」이라는 이름의 교육역량증진을 위한 카네기 재단(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의 보고서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5가지 주요 관측이 실려 있다.¹³²⁾ 첫째, 로스쿨은 법적 사고의 기준에 있어서 조급한 사회화(rapid socialization in the standards of legal thinking)를 초래한다. 둘째, 로스쿨은 주로 사례분석식(case-dialogue method) 강의를 통하여 그러한 사회화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나치게 가르치는 것(teaching)에 의존한다. 셋째, 사례분석식 강의방식은 가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온다. 넷째,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방식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법학교육의 발전은 포괄적이 아니고 점진적이다.

나아가 「변호사 교육」은 다음과 같은 7개의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즉, 로스쿨은, (1) 세 파트로 구성된 통합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 파트의 교육과정이란 법률이론과 분석에 대한 교육, 실무의 여러 측면에 대한 소개, 변호사업의 근본 목적과 일치하는 고유성의 탐구와 인수(assumptions)가 그것이다. (2) 초기부터의 실무기술 훈련과 법률적 분석 훈련의 결합, (3) 로스쿨의 2년차 및 3년차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 (4) 교수의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연구의 지원, (5) 교수와 학생이 서로 다른 지식과 기술을 엮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6) 공통적인 목적의 인식, (7) 교내 그리고 로스쿨간의 협동 연구 등이 그것이다.

7. 보고서의 시사점

대다수의 변호사가 필요한 법률실무 및 경영기술을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 변호사 자신의 경험 (The lawyer's own experience)
- 로스쿨에서의 법률관련 연구 (Law related work while in law school)

131) Kennon Sheldon & Lawrence Krieger, Understanding the Negative Effects of Legal Education on Law Students: A Longitudinal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33 Personality & Soc. Psychol. Bull. 883 (2007).

132) William M. Sullivan et al.,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Educating Lawyers: Preparation for the Profession of Law 185-191 (2007).

- 다른 변호사로부터의 조언 (Advice from other lawyers)
- 다른 변호사의 업무 관찰 (Observations of other lawyers)

등이다.

로스쿨은 17개 분야의 법률실무 기술 중 8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나 나머지 9개 분야의 실무기술은 다른 곳으로부터 습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법학교육의 도제제도에서처럼 현대의 변호사들이 받는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은 공식적인 법학교육제도의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100년에 걸친 연구는 공식적인 법학교육의 과정은 로스쿨이 변호사를 훈련한다는 약속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학교육제도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는 많은 비판과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체제는 여전히 1800년대 후반의 교육체제와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³⁾

IV. 미국 법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 변화의 의미

하나 주의할 점은 주정부의 지원 감축을 등록금 인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것은 실로 커다란 위협을 수반하는 것이고 법학의 공교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된다. 요즘의 등록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주정부의 지원을 대체하는 것이지만 대학의 성장이나 팽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과 다른 여러 로스쿨에 의한 가파른 등록금 인상은 기실 학교예산을 증액시키지는 못하였으며 그 이유는 주정부의 로스쿨에 대한 자금배분의 감축으로 등록금 인상효과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이사회와 경영자들은 실질적인 등록금을 인상을 하기 어려운 (단과)대학을 위해서 주정부의 자금할당에 다시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 대학은 교육기회접근성, 교육비용적절성, 신분상승, 공공의 이익, 서비스, 교수-학생 비율, 신망과 평판, 그리고 모대학과의 재정안분 등의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 법학 공교육의 사립화 또는 준사립화의 과제는 포괄성, 신분상승을 위한 교육접근성, 비용적절성과 공공서비스라는 공립 로스쿨의 중요한 특성들을 상실함이 없이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공립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공립 로스쿨은 등록금에 의존하여 준사립화되는 커다란 위협에 처해 있다. 여기서 많은 사립 로스쿨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만성 모델

미시건과 버지니아 로스쿨은 공립 중에서 가장 명성이 높으며 그 뒤를 Boalt가 바짝 뒤쫓고 있다. 미시건 로스쿨은 지난 10년 동안에 주정부의 지원은 거의 명목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자주민 학생에게도 높은 등록금을 부과함으로써 준사립화하였다.¹³⁴⁾ 미시건 로스

133) John O. Sonsteng, Donna Ward, Colleen Bruce, Michael Petersen, A Legal Education Renaissance: A Practical Approa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34 WMLR 303, 333 (2007).

134) 대학을 사립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정부의 예산지원, 주정부의 규제, 그리고 주정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

쿨 학생 중 75%가 타주 거주민이다. 명성이 거의 대등한 버지니아 로스쿨도 미시건과 비슷한 길을 걸었으나 타 주민 학생비율이 조금 더 낮고¹³⁵⁾ 등록금도 근소하게 적은 액수이다.

버지니아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2001-2002학년도에 채택한 "재정자립계획(financial self-sufficiency plan)"에 따라 등록금 전액과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대학이 보유한다. 미시건과 버지니아의 준 사립화 전략의 성공은 다른 공립의 로스쿨들에게 매력적인 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시건 로스쿨의 2003-2004학년도 자주민 등록금은 27,884달러로서 미국 로스쿨 중에서 33위에 올랐으나, 전체학생 중 75%를 차지하는 비자주민 학생 등록금은 32,884달러로서 Columbia, NYU, Northwestern, USC, Yale, Penn and Cornell를 바짝 뒤 쫓으며 8위에 올랐다.¹³⁶⁾ 미시건 로스쿨과 버지니아 로스쿨이 최상위에 랭크될 수 있는 원인은 최상위의 사립 로스쿨들과 등록금이 비견될만큼 높은 데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공립의 로스쿨을 사립화하는 패러다임으로서는 따를 것이 못할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장기 전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여러 다른 공립 로스쿨들의 등록금 인상조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닌 임시적으로 재정지원 삭감을 보충하려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시건이나 버지니아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른 로스쿨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기부금 재원을 가지고 있다. 두 학교는 각각 2억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모았고¹³⁷⁾ 방대한 모금전문가 조직을 갖고 있다.¹³⁸⁾ 또한 두 학교의 커다란 규모의 동문들은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으며, 기부를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 로스쿨에 대한 개인 증여금은 2003-2004학년도에 1,250만달러를 능가하였으며, 연중의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도 800만 달러가 모금되었다.¹³⁹⁾ 2005-2006학년도 예산에도 380만 달러의 증여금, 800만 달러의 기부금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¹⁴⁰⁾ 반면에 Boalt의 기부금 수입은 8,000만 달러에 머물렀으며 학장에 의하면 세계적인 로스쿨이 되기 위해서는 3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버지니아 로스쿨은 방대한 재정을 고액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접근성, 비용적절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04-2005학년도에 879명의 학생이 411,822,768달러의 학자금 용자를 받은 반면, 559명이 610만 달러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립하는 것이다. 준 사립화(Quasi privatization)는 본질적으로 등록금과 기부금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운영에 대한 법적 권한은 공적인 관리위원회가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과 로스쿨은 세출예산 지원, 세제혜택, 낮은 이율의 공채(state bond) 발행 등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정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135) 비자주민 학생의 비율은 대체로 Virginia는 60%, Michigan은 75% 정도이다.

136) Anne McGrath, U.S. News & World Report Ultimate Guide to Law Schools 89, 92 (2004).

137)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Facts & Statistics, <http://www.law.virginia.edu/home2002/html/about/factsstats.htm> (last visited Apr. 18, 2006).

138) 2005년 7월 현재 미시건 대학 웹사이트에 의하면 2 개의 빈 자리와 보조 직원들을 제외하고도 11명이 펀드레이징에 종사하고 있다. <http://www.law.umich.edu/alumnianddevelopment/devinfo/index.htm>.

139) Forty-seven percent of Virginia's alumni participated in the 2003-04 annual fundraising campaign. The University of Virginia Law School Foundation, 2003-2004 Annual Report 5, <http://www.law.virginia.edu/pdf/annualreport04/annualreport04.pdf> (이하에서는 UVA 2003-04 Annual Report).

140) Office of Budget and Planning, Law School, Contents of the Budget Planning Workbook at 6 (11-Feb-05).

공익관련법(public interest law)에 중사하게 되면 용자금을 면제해 주는 버지니아 대학의 용자금회수포기 프로그램이다. 다른 많은 로스쿨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버지니아 로스쿨만큼 공익을 넓게 규정하는 곳은 없다. 버지니아는 수입의 수준에 따라 버지니아주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졸업생들이 용자금회수포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3. 패러다임의 변화

주정부의 재정지원 삭감과 등록금 인상현상은 미국의 법학교육 모델이 바뀌면서 실질적인 비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1960년대의 미국의 법학교육은 그로부터 100년 전에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이었던 Langdell이 보급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판례집으로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로스쿨은 전형적으로 커다란 교실과 의자, 책상, 흑판, 분필, 그리고 기껏해야 시청각 시스템(AV system)을 갖추고 있는 정도였다. 세미나실을 갖추는 것은 예외에 속했다. 교수들의 처우는 열악했다. 임상교육은 1960년대 후반에서야 시작되었고, 인턴십이나 해외유학 프로그램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법학연구(legal research)나 글쓰기(writing) 프로그램은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정교하지 못하였으며 가끔 임시직이 가르치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책은 제본된 것과 가제식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로스쿨은 한 종의 저널을 지원하고 있었다. 등록금도 낮은 수준이었고 로스쿨 학장은 대체로 학문적인 명성에 따라 임명되었다.

오늘날의 로스쿨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차별화된 프로그램, 세미나, 심포지움, 임상법학연습, 연구소 등을 갖추고 있다. 로스쿨들은 다양한 저널들을 발간하고 legal research와 writing program은 조그만 그룹으로 나누어 주로 전임교원이 가르친다. 튜터링과 성공적인 공부프로그램도 추가되었다. 1996년 동의판결(consent decree)¹⁴¹⁾에 의하여 중단될 때까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승인절차는 점차 교수들의 연봉을 인상시켰다. 교실강의는 엄격한 스파르타식 분위기에서 인터넷을 통한 유선형식으로 변모되어 갔다. 강의는 대형의 전체적인 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는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오늘날 로스쿨의 학장의 가장 주된 임무는 운영자금(발전기금) 모금이다. 거기다가 모든 로스쿨들은 간접비를 비롯하여, 도서관과 정보기술, 건강보건, 탁아, 육아휴직, 공과금 등과 관련하여 비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이 비용들은 사회일반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비용상승 압력은 물론 로스쿨 설립주체의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조짐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83년 U.S. News & World Report지가 대학의 랭킹을 매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이다. 대학원 진학안내(The Guide to Graduate Schools)가 1987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¹⁴²⁾ U.S. News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강조함에 따라 로스쿨들은 랭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41) See U.S. v. Am. Bar Ass'n., 934 F. Supp. 435 (D.D.C. 1996).

142) 교육의 질, 학생들의 능력, 교수의 교수능력은 U.S. News & World Reports가 LSAT 성적, 중간위 GPA, 동문들의 기부행위 참여율, 취업률 또는 다른 통계 수치를 사용하여 선정한 학교의 명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뛰어난 강의는 가끔 덜 유명한 로스쿨에서 이루어진다.

V. 결어 : 미국 법학교육 현실로부터의 교훈

- 한국 현실에 대한 시사점

1. 국가의 책무 — 공·사립 로스쿨에 대한 공평한 지원의 필요성

공립의 대학과 거기에 속하는 로스쿨 사이에는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공립대학은 州民에 게 대량으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정부의 의무를 반영한 것이어서 규모가 크다. 예를 들면, 2003-2004학년도 10대 공립대학의 학부 등록생은 평균 29,043명으로 사립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의 평균 7,141명에 비하여 크게 앞선다.¹⁴³⁾

그러나 거꾸로, 2004년 20대 로스쿨 중에서 공립은 Texas와 Hastings 두 곳 뿐이다.¹⁴⁴⁾ 한편, ABA 인가한 로스쿨로서 등록 학생수가 적은 20개 중에서 13개는 공립이다.¹⁴⁵⁾ 미국의 경우 많은 사립 대학들이 로스쿨을 독립채산제의 이익책임단위로서 경영하여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의 많은 비율을 간접비용(overhead)으로 떼는 것이 현실이다.¹⁴⁶⁾ 그리하여 단과대학들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지와 보안을 위한 비용을 대학본부가 축적해 놓은 간접비로써 충당해 줄 것과 대학의 운영비의 일정 부분 할애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우 문제는 로스쿨이 대학운영비를 불균형적으로 할당받아 로스쿨의 수입으로 다른 대학단위를 보조하는 데 쓰이게 될 때 생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등록 학생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로스쿨의 운영이 대학본부와 타 단과대학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법학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55.5%)을 감안하여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설립주체의 공·사립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143) 이러한 등록학생 숫자는 Edward B. Fiske, Fiske Guide to Colleges 2005 (21st ed. 2004)에 근거하여 등록학생 수를 평균하여 얻은 수치이다. Brown (6,030), Columbia (7,593), Cornell (13,655), Dartmouth (4,079), Harvard (6,684), Pennsylvania (9,133), Princeton (4,613), Yale (5,339), Illinois (28,947), Indiana (30,752), Iowa (20,487), Michigan (24,412), Michigan State (34,559), Minnesota (28,103), Ohio State (37,605), Penn State (27,604), Purdue (30,908), and Wisconsin (27,553).

144) 다음은 Full time 학생수와 Part time 학생수를 합한 숫자이다. Thomas M. Cooley (2,303), Georgetown (1,862), Suffolk (1,668), Harvard (1,654), Widener (1,637), George Washington (1,555), New York (1,551), Fordham (1,546), Texas (1,532), Brooklyn (1,515), American University (1,389), New York University (1,346), John Marshall (1,329), Loyola of LA (1,313), South Texas (1,289), Seton Hall (1,277), Columbia (1,225), Hastings (1,225), Denver (1,192), and Miami (1,181). Michigan은 1,149명으로 21위이다. Anne McGrath, U.S. News & World Report, Ultimate Guide to Law Schools 81 (2004).

145) Id. at 84. 그 중 공립 로스쿨은 다음과 같다. Louisville (390), Southern Illinois (383), Cincinnati (365), Northern Illinois (333), New Mexico (316), Idaho (308), Hawaii (301), Maine (278), South Dakota (255), Wyoming (243), Montana (241), and North Dakota (200). Id.

146) ABA는 로스쿨이 간접비용의 징수의 최고한도를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등교육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적 교육재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은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의무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로스쿨의 규모에서 파생하는 문제

법학교육의 재정 여건을 어렵게 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의 주요 수입원(收入源)인 수업료를 부담할 학생의 수는 엄격한 제한으로 인하여 매우 작은 규모로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Dickinson 로스쿨이 소규모의 비경제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 합병당한 것은 소규모의 로스쿨의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다.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다양성 확보와 고도의 기술적 훈련과정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만큼 작은 규모의 로스쿨에게 어려운 점은 없다.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 덕분이거나 다른 분야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규모 로스쿨은 등록금 인상과 학생 유치의 두 방면에서 끊임없이 상반되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설립 초기에는 행정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소규모의 로스쿨의 학생 1인당 초기 고정비용의 투자는 규모가 큰 로스쿨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로스쿨에 대한 재정지원의 의무를 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는 로스쿨의 설립에 있어서 설립인가주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통한 엄격하게 정원을 제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함으로써 로스쿨의 소규모성(40~150명)은 국가가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등과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식의 중전의 태도를 지양하고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립의 로스쿨도 통합된 하나의 법학교육모델로서의 공립의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12> Most Popular Schools for Law(1개 학년 학생수 기준)

Rank	School Name	Students	Total On-Campus Cost
1	Thomas M. Cooley Law School	764	N/A
2	Georgetown University	652	\$51,466
3	Harvard University	574	\$48,550
4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527	\$53,110
5	Suffolk University	509	\$41,232
6	Fordham University	495	\$48,110
7	New York University	493	\$49,190
8	American University	486	\$45,137

9	Brooklyn Law School	470	N/A
10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454	\$20,286
11	University of Florida	427	\$14,437
12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	422	N/A
13	The John Marshall Law School	418	N/A
14	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413	\$49,260
15	Loyola Marymount University	395	\$46,559
16	University of Miami	386	\$46,472
17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372	\$21,657
18	New York Law School	372	N/A
19	University of Virginia-Main Campus	365	\$19,325
20	Boston University	363	\$48,900
21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362	\$39,674
22	DePaul University	360	\$37,618
23	South Texas College of Law	359	N/A
24	University of Denver	355	\$45,403
25	Stetson University	353	\$39,368
26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346	N/A
27	University of Houston	343	\$18,600
28	Golden Gate University-San Francisco	343	\$13,440
29	Yeshiva University	342	\$42,195
30	Seton Hall University	335	\$42,060
31	University of San Diego	333	\$47,838
32	Seattle University	329	\$39,142
33	Temple University	321	\$24,220
34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	318	N/A
35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316	\$24,103
36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308	N/A
37	St. John's University-New York	307	\$43,760
38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306	\$25,309
39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305	\$33,250
40	Duke University	302	\$47,975
41	New England School of Law	297	N/A
42	University of Baltimore	295	\$8,334
43	Southwestern Law School	295	N/A
44	Widener University-Delaware Campus	291	\$13,660
45	University of the Pacific	288	\$41,718
46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Indianapolis	281	\$18,154
47	Santa Clara University	281	\$48,144
48	Hofstra University	280	\$40,670
49	Loyola University Chicago	277	\$40,798
50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76	\$18,155
51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275	\$20,158
52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273	\$43,098
53	Tulane University of Louisiana	271	\$47,100
54	Saint Louis University-Main Campus	271	\$44,286
55	University of Maryland-Baltimore	263	N/A
56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	359	N/A
57	Rutgers University-Newark	259	\$23,508
58	Boston College	256	\$48,384

59	University of Pittsburgh-Pittsburgh Campus	256	\$24,936
60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254	\$49,796
61	Northwestern University	254	\$49,779
62	University of Pennsylvania	253	\$49,080
63	Rutgers University-Camden	252	\$22,763
64	SUNY at Buffalo	251	\$16,295
65	Villanova University	246	\$47,160
66	Pepperdine University	245	\$49,430
67	University of South Carolina-Columbia	240	\$20,067
68	Whittier College	238	\$41,410
69	Albany Law School	238	N/A
70	Loyola University NewOrleans	235	\$38,096
71	St Marys University	235	\$30,863
72	Florida State University	233	\$15,817
7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232	\$15,750
74	Texas Tech University	231	\$17,393
75	University of Georgia	231	\$16,054
76	Ohio State University-Main Campus	226	\$22,275
77	Vanderbilt University	224	\$49,834
78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22	\$23,150
79	University of Iowa	221	\$17,863
80	Emory University	221	\$46,956
81	Lewis&Clark College	221	\$43,090
82	Saint Thomas University	219	\$31,141
83	Hamline University	218	\$35,856
84	Touro College	218	\$23,106
85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17	\$45,826
86	Pace University-New York	217	\$43,178
87	Thomas Jefferson School of Law	215	N/A
88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214	\$44,275
89	Capital University	211	\$36,430
90	Georgia State University	208	\$18,824
91	Drake University	207	\$35,012
92	Syracuse University	207	\$45,280
93	George Mason University	206	\$17,374
94	University of San Francisco	206	\$46,120
95	Northeastern University	205	\$46,019
96	Marquette University	204	\$37,748
97	Texas Southern University	202	\$16,598
98	University of Detroit Mercy	199	\$39,060
99	Arizona State University at the Tempe Campus	198	\$17,071
100	College of William and Mary	198	\$19,349

<http://www.stateuniversity.com/program/Law-LL.html>

3.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지원

국가는 로스쿨의 인가기준을 통하여 각 로스쿨은 특정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여 「인적·물적 여건, 사회적·환경적 맥락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렇게 수립된 추진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로스쿨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이념(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삼는다.

소규모의 개별 로스쿨이 내세운 특성화 분야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직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여 국가의 지원 없이는 특성화 분야에 치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표 13> 각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

대 학 명	정 원	특 성 화 분 야
서울대	150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고려대	120	GPL(국제법무)
성균관대	120	기업법무
연세대	120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이화여대	100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100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경희대	60	글로벌 기업법무
서울시립대	50	조세법
아주대	50	중소기업법무
인하대	50	물류법, 지적재산권
중앙대	50	문화법
한국외대	5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강원대	40	환경
건국대	40	부동산관련법
서강대	40	기업법(세부특성화 : 금융법)
충남대	100	지적재산권
충북대	70	과학기술법
전남대	120	공익인권법
전북대	80	동북아법
원광대	60	의생명과학법
제주대	40	국제법무
경북대	120	IT법
영남대	70	공익·인권

대 학 명	정 원	특 성 화 분 야
부 산 대	120	금융·해운통상
동 아 대	80	국제상거래법
25개교	2,000명	

4. 재정지원을 통한 등록금의 적정성 유지

미국의 경우 등록금에 의존하는 로스쿨은 학생을 유지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금 수입을 통하여 재정적인 필요를 메우기 위해서 학생의 수를 늘려 전체의 질적인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는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원을 감축하느냐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 학생수를 유지하느냐 하는 딜레마이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많은 사립대학의 로스쿨들은 교수의 임용, 교직원의 급여, 교수의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입학허가 규모, 그리고 시설투자 등의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린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보험(Medicade)과 같은 의무적인 사항이 급속히 증가로 인하여 미국의 공립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필요적 비용만을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로스쿨(Berkeley)을 비롯하여 미시건 대학과 버지니아대학의 로스쿨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주정부의 재정지원의 감축의 영향은 주립 로스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주민에 대해서조차 등록금이 상당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만으로 예산삭감의 곁을 메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대안으로서 타주민 학생에게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등록금을 부과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재정지원의 감축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은 교육 접근성과 비용적절성을 희생시키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로스쿨의 등록금은 국가의 지원과 일종의 배척관계(trade off)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쟁이 치열했던 로스쿨의 유치전에서 각 대학이 등록금을 적절하게 책정할 수 없었던 원인은 바로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경쟁을 조건으로 로스쿨이 인가되었다는 점이 로스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거의 전적으로 개별 대학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개별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 기존의 국고지원, 법인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등록금의 커다란 인상을 막아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 장학금의 전액 국고부담

고등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서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고등교육법이 마련한 것이 고등교육에의 균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제도와 학자금융자제도이다.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financial aid) 분야로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부 항목이 바로 로스쿨의 커다란 지출항목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축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이상 공사립을 불문하고 로스쿨에서의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증가해 왔다. 예를 들면, 공립 로스쿨에 있어서의 가계곤란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비율은 1990-1991학년도 14.28%에서 2003-2004학년도에는 50% 이상이 증가한 21.28%에 달하였다.¹⁴⁷⁾

그러나 이에 비하여 우리 로스쿨들의 경우는 지나치게 장학금 수혜율이 지나치게 높다.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비율이 전국 로스쿨 평균 45.3%에 이른다. 이것은 곧 45.3%의 등록금 인하 효과를 가져 온다는 의미임을 감안하면 국가는 법학교육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 장학금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로스쿨 재정에 대한 지대한 부담이 되므로 규모면에서 열악한 우리의 로스쿨이 경쟁적으로 학생유치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초기 로스쿨의 법학교육은 파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공립 로스쿨이 면제한 등록금(즉, 장학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사립 로스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장학금이 재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사립대학 재학생의 학부모에 대하여 2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법학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을 비롯한 모든 장학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야말로 로스쿨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된다.

<표 14>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현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내부자료 ('09.03.05 기준)

학교명	입학정원 (명)	연간등록금 (만원)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설치인가기준)	現 전액장학생 수혜자비율(%)	비고
강원대	40	1,000	100.0%	100.0%	-
건국대	40	1,600	75.0%	75.0%	-
경북대	120	1,014	21.3%	29.7%	예정보다 8.4% 증가
경희대	60	1,760	25.0%	25.0%	-
고려대	120	1,900	20.0%	30.0%	예정보다 10% 증가
동아대	80	1,800	34.2%	34.2%	-
부산대	120	945.6	30.0%	30.0%	-

147) 장학금 수혜율은 사립대학의 경우는 1990-1991학년도의 10.42%에서 2003-2004학년도에는 17.51%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공·사립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율은 11.09%에서 18.31%로 증가하였다.
<http://www.abanet.org/legaled/statistics/grants.html>.

서강대	40	1,440	37.5%	37.5%	-
서울대	150	1,350	25.2%	25.2%	-
서울시립대	50	910.6	41.9%	46.9%	예정보다 5% 증가
성균관대	120	2,000	37.3%	37.3%	-
아주대	50	1,800	25.0%	25.0%	-
연세대	120	1,950	32.0%	32.0%	-
영남대	70	1,840	48.8%	50.0%	예정보다 1.2% 증가
원광대	60	1,500	43.0%	45.3%	예정보다 2.3% 증가
이화여대	100	1,680	41.7%	41.7%	-
인하대	50	1,800	44.7%	72.7%	예정보다 28% 증가
전남대	120	963.2	24.7%	24.7%	-
전북대	80	930	50.0%	50.0%	-
제주대	40	1,000	32.0%	32.0%	-
중앙대	50	1,530	55.1%	55.1%	-
충남대	100	863	36.2%	36.2%	-
충북대	70	980	25.0%	67.0%	예정보다 42% 증가
한국외대	50	1,600	20.0%	35.0%	예정보다 15% 증가
한양대	100	1,800	55.0%	55.0%	-
평 균			39.2%	43.7%	

6. 임상법학연구소의 설립지원

변호사에게 필요한 17가지 실무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3가지 원천을 조사한 미네소타 조사(The Minnesota survey)에 의하면,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실무기술을 익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⁸⁾

응답자들은 대부분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실무기술을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다양한 업무영역을 훈련하는 데에는 로스쿨 밖에서도 많은 중요한 것을 배운 것으로 답했다. 로스쿨 바깥에서 실무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4가지 원천으로서 (1)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 (2) 로스쿨 학생시절 법률과 관련된 일의 경험, (3) 다른 변호사로부터의 충고, (4) 다른 변호사에 대한 관찰 등을 들었다.¹⁴⁹⁾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적합성 요구의 증대, 임상교육방법의 발전, 임상 프로그램의 개설

148) John Sonsteng & David Camarotto, Minnesota Lawyers Evaluate Law Schools, Training and Job Satisfaction, 26 Wm. Mitchell L. Rev. 327, 336 (2000).

149) Id. at 352.

과 확장을 위한 외부자금의 유입, 그리고 임상과목을 가르칠 능력과 관심을 가진 교수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지자, 미국 법조윤리를 위한 법학교육 협의회(The Council on Legal Education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c., CLEPR)는 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과 공동으로 로스쿨에게 임상법학연구소를 설립하게 하기 위하여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에는 각 로스쿨이 교내 임상프로그램과 임상교수의 직업 안정성 및 신분 보장을 해 준 관계로 임상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9년 말까지 183개의 미국 로스쿨이 임상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임상 프로그램과 관련 교수의 수적 증대는 임상법학 교육에 관한 학문성과 방법론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법조윤리,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판결문·소장(訴狀)·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과목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은 위의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각 로스쿨들의 교육과정을 보면 실무기술의 훈련에 대하여는 교외연수(externship)를 실시한다는 것과 교육과정 중 '○○○ 연습'이라는 과목을 다수 포함시켜 놓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사법연수원이 폐지될 것임을 고려하면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법률이론과 실무훈련을 조화롭게 연마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내에 실무기술을 연구할 임상법학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타

(1) 학자금대출제도의 확립

대학 등록금 인상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Financial Aid)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학자금의 대부제도에 관하여는 이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율과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지나친 재정적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2)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법무법인(로펌)의 설립 문제

대학 스스로 재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 제도 하에서 대학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사업으로는 '대학병원 사업'과 2003년부터 인정되는 '학교기업제도'를 들 수 있다. 학교기업제도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 모두 인정되는 제도로서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대학 스스로에 의한 재원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대학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기업제도의 형식으로 교육을 위해 대학 내에 로펌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면, 첫째, 대학병원은 3차 진료기관으로서 지역의 소규모 또는 개인 병원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나 로펌의 경우는 법률시장의 성질상 인근 지역의 로펌 및 개인 변호사와 경쟁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수익면을 차치하면 교육·연구면에서는 임상법학연구소가 로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교수·직원의 직무 전념의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대학병원의 경우와는 달리 대학 로펌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한 세제 등의 개혁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정치자금 기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면 소액 기부금 문화가 확산되어 (사립)대학 기부금 수입을 통한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일정한도까지 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개인의 기부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의미가 있다.

<부록> 미국 각주의 최근 10년간의 고등교육기관 운영비지원 현황(단위: \$1,000)

STATES	FY 99	FY 04*	FY07	FY 08	FY 09	1 - y Change	r2 - y Change	r5 - y Change	r1 0 - y r Change
Alabama	1,042,954	1,167,537	1,685,067	1,959,750	1,754,251	-10.5%	4.1%	50.3%	68.2%
Alaska	170,403	217,245	286,725	296,910	315,239	6.2%	9.9%	45.1%	85.0%
Arizona	836,389	863,472	1,106,044	1,227,971	1,227,594	0.0%	11.0%	42.2%	46.8%
Arkansas	556,447	667,357	785,273	862,049	858,501	-0.4%	9.3%	28.6%	54.3%
California	7,250,661	8,450,942	11,098,331	11,552,691	11,759,821	1.8%	6.0%	39.2%	62.2%
Colorado	676,520	591,511	681,903	737,724	802,400	8.8%	17.7%	35.7%	18.6%
Connecticut	623,692	748,226	923,719	1,034,204	1,001,601	-3.2%	8.4%	33.9%	60.6%
Delaware	164,115	190,289	233,226	243,130	242,868	-0.1%	4.1%	27.6%	48.0%
Florida	2,501,857	2,808,468	3,659,076	3,668,708	3,344,365	-8.8%	-8.6%	19.1%	33.7%
Georgia**	1,483,818	1,891,270	2,217,101	2,428,859	2,606,982	7.3%	17.6%	37.8%	75.7%
Hawaii	322,258	398,836	503,627	554,292	612,780	10.6%	21.7%	53.6%	90.2%
Idaho	266,522	318,828	365,998	399,382	424,692	6.3%	16.0%	33.2%	59.3%
Illinois	2,411,068	2,701,159	2,787,716	2,935,504	3,011,705	2.6%	8.0%	11.5%	24.9%
Indiana	1,147,819	1,360,318	1,456,561	1,528,494	1,594,375	4.3%	9.5%	17.2%	38.9%
Iowa	784,987	737,752	804,488	873,709	935,161	7.0%	16.2%	26.8%	19.1%
Kansas	604,704	685,832	788,720	825,698	839,517	1.7%	6.4%	22.4%	38.8%
Kentucky	888,700	1,104,797	1,253,192	1,312,462	1,283,253	-2.2%	2.4%	16.2%	44.4%
Louisiana	859,036	1,208,995	1,430,956	1,702,159	1,715,878	0.8%	19.9%	41.9%	99.7%
Maine	199,149	233,695	259,089	274,767	266,399	-3.0%	2.8%	14.0%	33.8%
Maryland	942,748	1,140,033	1,435,940	1,548,379	1,646,880	6.4%	14.7%	44.5%	74.7%
Massachusetts	975,360	828,405	1,029,545	1,051,518	1,038,416	-1.2%	0.9%	25.4%	6.5%
Michigan	1,882,500	1,984,293	2,040,389	2,033,709	2,061,066	1.3%	1.0%	3.9%	9.5%
Minnesota	1,239,394	1,287,455	1,400,500	1,574,499	1,576,292	0.1%	12.6%	22.4%	27.2%
Mississippi	751,195	795,963	904,205	1,043,246	1,070,923	2.7%	18.4%	34.5%	42.6%
Missouri	859,461	838,596	895,376	935,281	1,027,185	9.8%	14.7%	22.5%	19.5%
Montana	129,929	150,576	169,434	189,506	204,029	7.7%	20.4%	35.5%	57.0%
Nebraska	440,095	498,854	571,039	607,938	632,901	4.1%	10.8%	26.9%	43.8%
Nevada	290,363	483,134	597,852	621,534	627,980	1.0%	5.0%	30.0%	116.3%
New Hampshire	91,156	112,446	123,966	133,093	138,512	4.1%	11.7%	23.2%	52.0%
New Jersey	1,448,860	1,740,829	1,987,225	2,044,508	1,984,924	-2.9%	-0.1%	14.0%	37.0%
New Mexico	517,261	644,996	861,447	959,313	901,770	-6.0%	4.7%	39.8%	74.3%
New York	3,104,892	3,752,758	4,807,447	5,136,537	5,304,386	3.3%	10.3%	41.3%	70.8%
North Carolina	2,149,972	2,474,773	3,389,715	3,730,894	3,920,102	5.1%	15.6%	58.4%	82.3%
North Dakota	173,107	201,545	215,719	253,901	253,901	0.0%	17.7%	26.0%	46.7%
Ohio	1,934,587	2,071,035	2,207,680	2,287,796	2,499,847	9.3%	13.2%	20.7%	29.2%
Oklahoma	725,450	739,651	955,483	1,015,150	1,025,024	1.0%	7.3%	38.6%	41.3%
Oregon	568,079	584,025	649,643	727,612	791,373	8.8%	21.8%	35.5%	39.3%
Pennsylvania	1,773,094	1,946,617	2,153,998	2,193,274	2,242,118	2.2%	4.1%	15.2%	26.5%
Rhode Island	143,100	171,225	182,343	174,972	162,333	-7.2%	-11.0%	-5.2%	13.4%
South Carolina	774,648	775,569	900,400	999,200	822,493	-17.7%	-8.7%	6.1%	6.2%
South Dakota	125,322	152,725	175,831	192,911	201,521	4.5%	14.6%	32.0%	60.8%
Tennessee	967,969	1,088,680	1,254,677	1,346,366	1,255,834	-6.7%	0.1%	15.4%	29.7%
Texas	3,527,867	4,939,809	5,449,196	6,058,375	5,773,809	-4.7%	6.0%	16.9%	63.7%
Utah	489,878	603,196	705,073	799,241	826,345	3.4%	17.2%	37.0%	68.7%
Vermont	59,173	77,153	85,217	88,195	88,257	0.1%	3.6%	14.4%	49.2%
Virginia	1,299,919	1,346,281	1,854,731	1,885,554	1,899,318	0.7%	2.4%	41.1%	46.1%
Washington	1,146,399	1,344,701	1,630,945	1,767,760	1,876,675	6.2%	15.1%	39.6%	63.7%
West Virginia	362,261	353,169	389,611	456,747	470,705	3.1%	20.8%	33.3%	29.9%
Wisconsin	1,040,341	1,114,812	1,174,980	1,242,558	1,292,042	4.0%	10.0%	15.9%	24.2%
Wyoming	139,711	198,634	261,214	282,692	313,646	10.9%	20.1%	57.9%	124.5%
Totals	52,865,196	60,788,467	72,787,637	77,800,737	78,527,98	0.9%	7.9%	29.2%	48.5%
	0	7	3	0	9				

<http://www.grapevine.ilstu.edu/fiftystatessummary.htm>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참고

신 우 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I. 일본 법과대학원 개요

1. 전문직대학원 체제의 출범

이론과 실무를 가교하는 교육을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직업인 양성에 특화된 ‘전문직대학원’ 제도가, 문부과학성의 주도로 출범한 것은 2003년도부터였다(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1> 참조). 그 배경으로는 ① 대학원에 있어 사회적·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도의 전문직업인 양성에 대한 기대가 급속히 높아진 점, ② 종래의 대학원 구조 내에서 제도설계로 실천적 교육을 전개해 나가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점, ③ ‘프로세스’를 통한 법조양성제도의 중핵적 교육기관으로서 법과대학원 신정비 구상이 제기된 점 등이 지적된다.¹⁾

1)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senmonshoku/gaiyou.htm

<표 1> 일본 전문직대학원 체제의 기본내용²⁾

	전문직대학원(일반) 2003년도 출범	법과대학원 2004년도 출범	교직대학원 2008년도 출범
수업연한	2년	3년	2년
수료요건	30단위 이상	93단위 이상	45단위 이상 + 학교실습(10단위이상)
실무가교원	3할 이상	2할 이상	4할 이상
수업방법	소수인 교육을 기본으로 쌍방향·다방향 토론·질의응답·사례 연구·현지조사 등에 의해 실천적 교육을 행함		
학위	○○수사 [*] (전문직)	법무박사(전문직)	교직수사 [*] (전문직)

※ 일본의 ‘수사(修士)’ 학위는 우리의 ‘석사(碩士)’ 학위에 해당

‘전문직대학원’ 체제의 출범에 앞서, 「학교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2. 11. 29. 법률 제118호)³⁾에 의거, 그 법적 근거규정(“대학원 중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학교교육법 §99①])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법과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에 특화된 교육(사법시험법 §4① 1호 및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참조)을 담당하는 ‘전문직대학원’의 하나로 위치하게 된다.

2008년 현재(2009년 개설예정 포함), 일반 전문직대학원은 ‘비즈니스기 술경영’ 전공 32개 학과, ‘회계’ 전공 17개 학과, ‘공공정책’ 전공 8개 학과, ‘공공위생 등’ 전공 3개 학과, ‘지적재산’ 전공 2개 학과, ‘임상심리’ 전공 5

2)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senmonshoku/gaiyou.htm

3)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houan/09/021018/gakkou_h.html

개 학과, 기타 전공 17개 학과 등, 총 84개가 개설되어 있다. 법과대학원은 총 74개, 교직대학원은 총 24개가 개설되어, 전체 전문직대학원은 총 182개에 달한다.⁴⁾

이하 일본에서 법과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전체 ‘전문직대학원’ 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법조양성이 지니는 공공적 의미(“공공성의 공간을 떠받치는 기둥”)를 고려한 특수한 배려가 추가되고 있다.

2. 관련 법제의 제·개정/정비

우선, 「사법시험법 및 재판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2. 12. 6. 법률 제138호)⁵⁾에서는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 ‘신사법시험’의 기본내용을 규정하고(“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 및 사법수습생의 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실시함”[사법시험법 §1③]), 동시에 종래 1년 6개월 동안 실시하던 사법수습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재판소법 §67①)(일본의 사법수습[-修習]·사법수습생[-生]은 각각 우리의 사법연수·사법연수생에 해당).

또한,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2002. 12. 6. 법률 제139호)⁶⁾에서는 법조양성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법과대학원

4)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senmonshoku/08060508.htm

5)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hourei/021129sikenhoukaisei.html>

6)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hourei/021129renkei.html>

교육과 사법시험·사법수습의 유기적 연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조 양성에 관한 국가대학의 책무와 법과대학원 교육활동 상황에 대한 적격 인정 및 법무대신과 문부과학대신의 상호협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과대학원에의 재판관 및 검찰관 기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2003. 5. 9. 법률 제40호)⁷⁾에서는, 법과대학원 교육이 사법수습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실무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밀접한 제휴·협력을 통해 이론·실무 능력을 겸비한 우수·다양한 법조를 양성해야 함에 비추어, ‘국가의 책무’로서, 재판관 및 검찰관 기타 일반직공무원이 법과대학원에서 교수·조교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도록 파견하는 제도를 창설·정비했다.

법률 이외의 제도정비로서, 「전문직대학원 설치기준」(2003. 3. 31. 문부과학성령 제16호)⁸⁾과 「전문직대학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건」(2003. 3. 31. 문부과학성고시 제53호)⁹⁾이 제정되었는데, 전문직대학원 일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형식이지만, 주로 법과대학원에 관한 것들이 그 내용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전자는 총 26개 조항 중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가[제6장], 후자는 총 7개 조항 중 제2조 3항부터 제7조까지가, 각각 법과대학원에 대한 것임). 아무튼 법과대학원의 기본적인 제도설계는 위 두 문서에서 골간과 세칙을 정하고 있다.

7)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hourei/haken-hou.html>

8)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ka/03050101.htm

9)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ka/03050102.htm

II.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1. 법과대학원의 현황(정원/학비)

2004년 전문직대학원으로서의 법과대학원 체제가 정식 출범한 이래, 총 74개교(정원 총 5,795명)의 법과대학원이 개설되었다(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2> 참조). 그중, 국공립이 25개교(정원 총 1,900명[공립 2개교 정원 총 140명 포함]/32.8%), 사립이 49개교(정원 총 3,895명/67.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법과대학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비 규모를 살펴보면, 입학료를 제외한 연간 총 납부액이 국공립의 경우 15억 2천7백60만엔(수업료표준액 80만4천엔 × 1,900명), 사립의 경우 53억7천3백 79만엔에 달한다(1인당 평균납부액 138만엔)(아래 <표 2> <표 3> 참조).

<표 2> 일본 법과대학원 개설현황 분석(문부과학성자료¹⁰⁾ 기초)

구분	대학원명	연구과명/전공명 (괄호 안은 학비[사립]*)	입학 정원	개설 연도
국립	北海道大学大学院	法學研究科/法律実務専攻	100	'04
국립	東北大学大学院	法學研究科/總合法制専攻	100	'04
국립	千葉大学大学院	専門法務研究科/法務専攻	50	'04
국립	筑波大学大学院	ビジネス科学研究科/法曹専攻	40	'05
국립	東京大学大学院	法學政治学研究科/法曹養成専攻	300	'04
국립	一橋大学大学院	法學研究科/法務専攻	100	'04
국립	横浜国立大学大学院	国際社会科学研究科/法曹実務専攻	50	'04
국립	新潟大学大学院	実務法學研究科/実務法學専攻	60	'04
국립	信州大学大学院	法曹法務研究科/法曹法務専攻	40	'05

10)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senmonshoku/08060508.htm

국립	静岡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	30	'05
국립	金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	40	'04
국립	名古屋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実務法曹養成専攻	80	'04
국립	京都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法曹養成専攻	200	'04
국립	大阪大学大学院	高等司法研究科/法務専攻	100	'04
국립	神戸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実務法律専攻	100	'04
국립	島根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曹養成専攻	30	'04
국립	岡山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	60	'04
국립	広島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	60	'04
국립	香川大学大学院	香川大学・愛媛大学連合法務研究科/法務専攻	30	'04
국립	九州大学大学院	法務学府/実務法学専攻	100	'04
국립	熊本大学大学院	法曹養成研究科/法曹養成専攻	30	'04
국립	鹿児島大学大学院	司法政策研究科/法曹実務専攻	30	'04
국립	琉球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	30	'04
공립	首都大学東京大学院	社会科学研究科/法曹養成専攻	65	'04
공립	大阪市立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法曹養成専攻	75	'04
사립	北海学園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972)	30	'05
사립	東北学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実務専攻(1,450)	50	'04
사립	白鷗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400)	30	'04
사립	大宮法科大学院大学	法務研究科/法務専攻(1,850)	100	'04
사립	獨協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曹実務専攻(1,400)	50	'04
사립	駿河台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曹実務専攻(1,250)	60	'04
사립	青山学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00)	60	'04
사립	学習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300)	65	'04
사립	慶應義塾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815)	260	'04
사립	國學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職専攻(1,500)	50	'04
사립	駒澤大学大学院	法曹養成研究科/法曹養成専攻(1,550)	50	'04
사립	上智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法曹養成専攻(1,135)	100	'04

사립	成蹊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500)	50	'04
사립	専修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15)	60	'04
사립	創価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00)	50	'04
사립	大東文化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560)	50	'04
사립	中央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700)	300	'04
사립	東海大学大学院	実務法学研究科/実務法律学専攻(1,500)	50	'04
사립	東洋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530)	50	'04
사립	日本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080)	100	'04
사립	法政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20)	100	'04
사립	明治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340)	200	'04
사립	明治学院大学大学院	法務職研究科/法務専攻(1,542)	80	'04
사립	立教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91)	70	'04
사립	早稲田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300)	300	'04
사립	神奈川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50)	50	'04
사립	關東学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実務法学専攻(1,150)	30	'04
사립	桐蔭横浜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950)	70	'04
사립	山梨学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300)	40	'04
사립	愛知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300)	40	'04
사립	愛知学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100)	35	'05
사립	中京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900)	30	'04
사립	南山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00)	50	'04
사립	名城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000)	50	'04
사립	京都産業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460)	60	'04
사립	同志社大学大学院	司法研究科/法務専攻(1,238)	150	'04
사립	立命館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曹養成専攻(1,275)	150	'04
사립	龍谷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500)	60	'05
사립	大阪学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650)	50	'04
사립	關西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曹養成専攻(1,210)	130	'04

사립	近畿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300)	60	'04
사립	関西学院大学大学院	司法研究科/法務専攻(1,250)	125	'04
사립	甲南大学大学院	法学研究科/法務専攻(1,300)	60	'04
사립	神戸学院大学大学院	実務法学研究科/実務法学専攻(1,200)	60	'04
사립	姫路獨協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200)	40	'04
사립	広島修道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102)	50	'04
사립	久留米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務専攻(1,110)	40	'04
사립	西南学院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曹養成専攻(1,230)	50	'04
사립	福岡大学大学院	法曹実務研究科/法務専攻(1,120)	50	'04

※ 적시된 사립 법과대학원 학비는 각 법과대학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액수(홈페이지 미제기 시 <http://www.mi-gaku.to/l/guide/index.html> 소재 정보 참조)로서, 입학금·회비를 제외한 수업료·시설(설비)비·교육충실비·연구자료비·연습(실습)비·정보통신비 등의 연간(원칙적으로 '08년도/3년제 기준) 총 납부액임(단위: 천엔[백단위 반올림]). 국립 법과대학원의 수업료표준액은 80만4천엔이며(국립대학 수업료표준액 52만8백엔), 입학금은 28만2천엔임(법과대학원별 편차 없음).

<표 3> 일본 법과대학원 숫자/정원 및 학비규모

구분	숫자/정원(%)	전체(%) / 1인당 연간납부액(입학금/회비제외)
국·공립	25개교/1,900명(32.8)	1,527,600,000엔(22.1) / 804,000엔
사립	49개교/3,895명(67.2)	5,373,790,000엔(77.9) / 1,380,000엔
전체	74개교/5,795명(100)	6,901,390,000엔(100) / 1,191,000엔

2. 법과대학원의 향후과제

일본 법과대학원 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타협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소지를 안고 출발한 불완전한 것이었다.¹¹⁾ 최근에는 신사법시험의 합격률 저하문제(‘느슨한 인가’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서)를 둘러싸고 정원 축소 등 여부가 중요이슈로 논란되고 있다.¹²⁾

11) 비교적 초기의 문제점 분석으로서 김창록, “일본 법과대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4-1(2003), 16-19쪽은 ① 느슨한 인가, ② 법학부라고 하는 ‘굴레’, ③ 예비시험이라고 하는 ‘지뢰’, ④ 지역편중 등을 지적하면서, “법과대학원제도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의 “가장 큰 이유”로서 “법학부의 존속과 예비시험제도”를 들었다. 또한, 김창록,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경과와 내용,” 「법과사회」 24(2003), 48쪽은 “다양한 이해 갈등과 타협에 의해 점철된” 결과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제도를 ‘법조양성의 중핵’으로서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도 도입의 의의를 멸실시킬 수도 있는 법학부의 존속,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사법수습의 존속이라는 선택을 동시에 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밖에 동 42-43쪽은 법과대학원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현역 재판관·검찰관 파견에 따른 급여보전 문제와 고액의 수업료 부담문제(“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비난과 함께,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넓히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어, 제도 도입의 의의가 멸실될 위험성도 있다.”)를 지적하고 있다. 유사한 분석으로서, 박세화,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현황 및 평가,” 「연세법학연구」 11-1(2005), 27쪽(“과격적인 장학금 지급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부실 우려”), 32-36쪽(“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문제점 검토”)도 참조.

12) 이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논문으로, 後藤昭, “助走距離とバーの高さわ合っているか?—日本の司法試験制度,” 「국제 심포지움: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2008. 11. 17), 5쪽 이하 및 岡村周一,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教育の現状と課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19(2007), 289-291쪽; 浦川道太郎,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教育の現状,”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학논총」 27-2(2007), 376-378쪽 등 참조.

법과대학원협회 이사장 아오야마 요시미츠(青山善充)는 “법과대학원은 사법제도개혁·고등교육개혁의 첨병·톱플래너”라고 강조하면서, 그 성과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그 ‘초기오작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기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것을 주장한다.¹³⁾ 그리하여 그 자기점검의 과제로 ① 입학자 엄선, ② 고품질 교육 실현, ③ 엄격한 성적평가수료인정, ④ 수료생 진료모색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¹⁴⁾ 아울러, “2010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0명 정도로 한다.”는 2002년 3월의 각의결정과 관련하여, “신사법시험 합격자의 질 저하 및 법조자격자의 취직곤란”를 이유로 내건 최근의 증원재고론에 대해서도 “경쟁”의 관점에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¹⁵⁾

III. 국고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1. 국고지원의 필요성 제기

법과대학원이 고액의 학비로 인해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비교적 일찍부터 제기되었다.¹⁶⁾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사립 법과대학원들이 경쟁적으로 학비(수업료)를 인하하고 파격적 조건의 장학금을 제

13) 青山善充, “所感「法科大学院を取りまく現状について」,” 법과대학원협회 홈페이지 소재(<http://www.lawschool-jp.info/info20080607.html>), 2. 對應の具體策.

14) 青山善充(주 13), 2. 對應の具體策.

15) 青山善充, “法曹養成制度をめぐる最近の議論について,” 법과대학원협회 홈페이지 소재(<http://www.lawschool-jp.info/20080807.pdf>).

16) 김창록(주 11),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경과와 내용, 43쪽 및 박세화(주 11), 35-36쪽 참조.

시하는 와중에, 그것이 사립대학의 재정적자 및 재정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의 소리들이 있었다.¹⁷⁾

이러한 우려들에 앞서 이미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법과대학원에 관련한 재정지원을 구하는 성명」(2002. 11. 7)을 회장명의로 발표하였다. 동 성명에서는 법과대학원의 수료(3년)에 수업료와 생활비를 포함하여 1인당 1,000만엔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비추어 법조지망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과대학원 입학에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국가의 구체적 재정지원 조치로서 ① 법과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통한 입학금·수업료 고액화의 회피, ② 일본육영회 등의 장학금지급액의 발본적 확충을 지향하는 재정지원·세제조치 등, ③ 금융기관에 의한 학생본인의 융자를 촉진하는 환경의 정비(정부보증제도의 창설 등), ④ 자치체·민간기업 등의 법과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진하는 환경의 정비(지방재정법·지방재정재건촉진특례조치법 등의 개정, 세제상의 조치 등) 등의 시책들을 늦어도 2003년 여름(2004년 4월 개원 이전)까지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¹⁸⁾

한편, 문부과학성이 2004년도 예산으로 요구(개산액)한 국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지원 부분과 관련하여, 재무성이 “개인이 고도의 자격을 얻기 위한 대학원에, 특별한 공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방침을 분명히 하자, 나고야변호사회에서는 「법과대학원에의 재정지원에 관한 회장성명」(2003. 11. 28)을 발표하여, “법과대학원은 단순히 개인이 고도의 자격을 얻

17) 김창록(주 11), 일본 법과대학원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14-15쪽 및 박세화(주 11), 27쪽 참조. 관련 보도자료로서 「讀賣新聞」(2003. 12. 14), 조간 39면(“法科大學院 授業料値下げ過熱 早稻田大まず75萬 中央大30人免除”) 기사도 참조.

18) 일본변호사연합회 : http://www.nichibenren.or.jp/ja/opinion/statement/2002_15.html

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변호사검찰관재판관 등은 사회전체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중요기관”인바, 그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인프라 확충”으로서의 의미를 각별히 강조하면서, 문부과학성이 요구한 법과대학원에 대한 보조금 예산조치를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¹⁹⁾

2.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

일찍이 법과대학원 신정비 구상을 담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이하 개혁심의회)의 최종의견서(2001. 6. 12)에서부터, 비록 법과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구체화·특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 대해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에 관하여 특단의 배려를 할 일”을 요청하고 있었다.²⁰⁾ 이어 제정된 「사법제도개혁추진법」(2001. 11. 16. 법률 제119호)²¹⁾도 그 제6조에서 “정부는 전조에 정한 기본방침에 기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법에 따라 내각에 조직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는 법조양성검토회를 구성하여 법과대학원 체제의 설차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광범하게 논의하게 되는데,²²⁾ 특히 그 제12회(2002. 9. 18)·제13회(2002. 9. 30) 회의에서는 「법조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

19) 아이치현변호사회 : <http://www.aiben.jp/page/frombars/topics2/142zaiseisien.html>

20) 「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2001. 6. 12). V. 第3.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ikensyo/index.html>

21)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hourei/011116suisinhou.html>

22)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법조양성검토회의 활동개요에 대해서는 김창록(주 11), 일본의 법학교육·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 경과와 내용, 13-15쪽 참조.

의 유기적 연계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검토하면서, “일종의 인 프라정비인 사법변혁 시기, 최초 10년 동안은 일반학생들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문제될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고(동 제12회), “(법과대학원 체제에서는) 전체로서 양성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학생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단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정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는 등(동 제13회), “재정조치에 관한 규정, 구체적으로는 법조양성의 기본이념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동 제13회).²³⁾

이상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성안된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2002. 12. 6. 법률 제139호)은 제3조(국가의 책무)의 마지막 제5호에서 “정부는 법조양성의 기본이념에 따라 법조를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법과대학원에서의 법조양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그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법과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부담경감 배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3)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法曹養成検討会(第12回) 議事録(2002. 9. 18)」 및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法曹養成検討会(第13回) 議事録(2002. 9. 30)」 중 “法曹養成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 부분 참조.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12/12gijiroku.html>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13/13gijiroku.html>

참고로 제12회 회의에 배포된 법률안(입안방침)에는 재정조치 부분이 빠져있으며, 제13회 회의에 배포된 법률안(원안)에는 국가의 책무 부분 말미에는 “재정적 조치에 관한 규정(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12/12siryou2.pdf>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13/13siryou3.pdf>

IV. 국고지원의 기본내용

1. 사립 법과대학원 경상비보조

법과대학원의 출범 이래 교육조건의 유지·향상과 학생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의 목적을 위해, 문부과학성 예산의 사립대학등경상비보조금 중 대학원고도화추진특별경비(특별보조) 항목으로, 법과대학원지원경비(전문직대학원등지원경비)가 매년 책정되었다. 출범 첫해인 2004년도에는 사립 법과대학원의 수업료 인하분을 포함한 경상비보조금으로, 50억엔의 개산요구액이 제시되어 그 절반인 25억엔의 예산액이 최종 결정·집행되었는데, 이 액수는 사립 법과대학원 학생 1인당 연간 약 50만엔의 수업료 인하를 커버하는 수준이었다.²⁴⁾

이 사립 법과대학원지원경비(전문직대학원등지원경비)는 단계적으로 액수가 증대되어, 2005년도에는 개산요구액 50억엔의 80%인 40억엔의 예산액이 최종 결정·집행되었으며,²⁵⁾ 2006년도에는 개산요구액 55억엔의 87.3%

24) 平成16年度 文部科學省 概算要求主要事項(2003. 8. 29), 11쪽,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について(再掲)」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houdou/15/08/03082902/006.pdf

平成16年度 文部科學省 予算主要事項(2003. 1), 12쪽,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について(再掲)」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houdou/16/01/04011603/003.pdf

25)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顧問會議(第17回) 配付資料(2004. 9. 8),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について(平成17年度概算要求)」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omon/dai17/17siryou4.pdf>

中央教育審議會 大学分科会 法科大学院特別委員會(第1回) 配付資料(2005. 6. 10),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平成17年度予算)」

인 48억엔의 예산액이 최종 결정·집행되었고,²⁶⁾ 2007년도에는 개산요구액 48억엔의 전액 그대로 48억엔의 예산액이 최종 결정·집행되었다.²⁷⁾ 2008년도 문부과학성 예산관계 자료에는 법과대학원지원경비를 포함한 전체 전문직대학원등지원경비로서, 2007년도와 동일하게 57억엔의 예산액이 결정·집행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²⁸⁾

<표 4>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문부과학성 경상비보조(억엔)

연도/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개산요구액	50	50	55	48	미확인
예산액	25 (50%)	40 (80%)	48 (87.3%)	48 (100%)	57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gjirou/05062401/sankou/007.htm

26) 平成18年度 文部科學省 概算要求主要事項(2005. 8. 31), 5. 個性豊かな教育研究の推進等私学助成の充実, 私立大学等經常費補助法科大学院支援経費 항목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houdou/17/08/05083103/006.htm

中央教育審議会 大学分科会 法科大学院特別委員会(第8回) 配付資料(2006. 1. 27),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平成18年度予算案)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gjirou/06051204/001.htm

27) 中央教育審議会 大学分科会 法科大学院特別委員会(第11回) 配付資料(2006. 9. 5),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平成19年度概算要求)」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gjirou/06091911/001.htm

中央教育審議会 大学分科会 法科大学院特別委員会(第13回) 配付資料(2007. 3. 15),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平成19年度予算案)」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gjirou/07071306/004.htm

28) 中央教育審議会 大学分科会 法科大学院特別委員会(第19回) 配付資料(2008. 3. 27),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平成20年度予算案)」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gjirou/08033113/005.htm

비고	사립 학생 1인 당 50만엔 상당				전체 전문직대 학원 지원경비
----	-----------------------	--	--	--	--------------------

2. 법과대학원 재학생 장학금지원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대여장학금 사업 중, 법과대학원 부분으로서 2004년도에 총 85억엔(대여인원 4,800명, 무이자 25억엔, 이자부 60억엔)의 개산요구액을 제시하였으나(학생수에 대한 대여율 80% 확보), 그 80%인 68억2백만엔(대여인원 3,500명, 무이자 13억5천7백만엔, 이자부 54억4천5백만엔)의 예산액이 최종 결정·집행되었다(학생수에 대한 대여율 63%[3,500명/5,560명]).²⁹⁾ 2005년도에는 개산요구액 총 137억엔(대여인원 7,000명)의 76.6%인 총 105억엔의 예산액(대여인원 5,800명)이 최종 결정·집행되었으며,³⁰⁾ 2006년도에는 개산요구액 총 129억엔(대여인원 7,369명)의 전액 그대로 총 129억엔의 예산액(대여인원 7,369명)이 최종 결정·집행되었고,³¹⁾ 2007년도에는 개산요구액 총 138억엔(대여인원 8,344명)의 93.8%인 총 129.4억엔의 예산액(대여인원 7,544명)이 최종 결정·집행되었고,³²⁾ 2008년도에는 128.7억엔의 예산액(대여인원 7,576명)이 최종 결정·집행되었다.³³⁾

29) 앞 각주 24 소재 자료 참조.

30) 앞 각주 25 소재 자료 참조.

31) 平成18年度 文部科學省 概算要求主要事項(2005. 8. 31), 4. 大学改革の推進 - 21世紀を担う人材養成と大学等の質の向上 -, 法科大学院に学ぶ学生のための奨学金制度 항목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houdou/17/08/05083103/006.htm

中央教育審議会 大学分科会 法科大学院特別委員会(第8回) 配付資料(2006. 1. 27), 法科大学院への財政支援(平成18年度予算案)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gijiroku/06051204/001.htm

32) 앞 각주 27 소재 자료 참조.

<표 5> 일본학생지원기구의 대여장학금 사업 중 법과대학원 부분(억엔)

연도/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개산요구액 대여인원	85 4,800명	137 7,000명	129 7,369명	138 8,344명	미확인
예산액 대여인원	68.02(80%) 3,500명	105(76.6%) 5,800명	129(100%) 7,369명	129.4(93.8%) 7,544명	128.7 7,576명
비고	무이자 13.57 이자부 54.45				

3. 법과대학원 형성지원(프로젝트)

국공립과 사립을 통틀어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대학원에 대한 형성지원 경비로서, 교육내용·방법의 개발·충실 등을 주제로 한 단독 또는 공동 프로젝트(“법과대학원 등 전문직대학원 교육추진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예산이 계획·배정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78억엔의 개산요구액에 대해 그 19.3%인 15억5천만엔의 예산액이 최종 결정·집행되었고, 2005년도에는 25억엔의 개산요구액에 대해 그 72%인 18억엔의 예산액이 최종 결정·집행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16억2천만엔의 예산액이(개산요구액 미확인), 2007년도에는 13억1천만엔의 예산액이(개산요구액 19억2천5백만엔의 68%), 2008년도에는 13억5천만엔의 예산액이(개산요구액 미확인) 각각 최종 결정·집행되었다(2008년도부터 “전문직대학원 등에 있어서 고도전문직업인양성 교육추진프로그램”으로 명칭변경).³⁴⁾

참고로 2009년도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의 개산요구액 중에는 “(법과대

33) 앞 각주 28 소재 자료 참조.

34) 앞 각주 24, 25, 26, 27, 28 소재 각 연도 자료 참조.

학원) 지원자 수 감소와 정원확대에 따른 입학생의 질 저하 및 향후 사법 시험 합격률 저하”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중점적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법과대학교육수준고도화사업’ 예산 500만엔이 신규로 책정되었다.³⁵⁾

<표 6>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대학원에 대한 형성지원 경비(억엔)

연도/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개산요구액	78	25	미확인	19.25	미확인
예산액	15.05 (19.3%)	18 (72%)	16.2	13.1 (68%)	13.5

4. 실무가교원 파견과 급여의 보전

I장(2. 관련 법제의 제·개정/정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재판관 및 검찰관 기타 일반직공무원이 법과대학원에서 교수·조교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도록 파견하는 제도를 창설·정비했는데, 그 근거법인 「법과대학원에의 재판관 및 검찰관 기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2003. 5. 9. 법률 제40호)은 ① 직무와 함께 교수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파견(법 §4)과 ② 오로지 교수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파견(법 §11)을 나누어 각각에 대해 보수·급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①의 경우, 재판관에 대해서는 교수 등 업무에 따른 보수 등을 추가로

35) 平成21年度 文部科學省 概算要求主要事項(2008. 4. 1), 高等教育局主要事項 - 平成21年度概算要求, 法科大學院教育水準高度化事業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b_menu/houdou/20/09/08082905/013.pdf

지급하지도 않고 그 본래의 급여를 감액하지도 않지만, 파견되는 법과대학원의 설치자는 그 교수업무에 상당한 금액(정령으로 규정)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법 §6), 검찰관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와 파견되는 법과대학원 설치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되(상당액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함), 그 본래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지만, 파견되는 법과대학원 설치자로부터 받은 보수 등의 액수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감액분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법 §7). ②의 경우, 파견된 검찰관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임명권자는 법과대학원 설치자와의 약정에서 상당액의 보수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함), 파견되는 법과대학원 설치자로부터 받은 보수 등의 액수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급여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법 §13). 즉, 여기서 감액·미지급 급여에 대한 100분의 50 이내의 보전부분(법 §7②, §13②)은 결국 파견되는 법과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되는 셈이다.

5. 사법수습생 급비제의 대여제 전환

재판소법의 개정으로 법과대학원 수료 후(또는 예비시험 합격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수습 기간이 1년으로 개정되면서(앞 I. 2. 참조), 종래 사법수습생에 대한 급비제 존폐문제가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의 법조양성검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³⁶⁾ 여기

36)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法曹養成検討会(第14回) 議事録(2002. 12. 20)」;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法曹養成検討会(第18回) 議事録(2003. 7. 14)」;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法曹養成検討会(第21回) 議事録(2004. 2. 6)」;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法曹養成検討会(第23回) 議事録(2004. 6. 15)」;
 「司法制度改革推進本部事務局 法曹養成検討会(第24回) 議事録(2004. 9. 1)」;

서는 “수익=부담의 관점 및 관민 역할분담의 관계” “국가공무원 신분 미소 지자에 대한 예외적 급여지급 문제” “법조인구의 정세에 있어 커다란 변화” 등의 주장과 함께 급비제를 대역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는데(동 제18회), “사법수습생의 수습전념의무 및 법조지망자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든 신중론(법무성·최고재판소)과 “(변호사를 포함한) 전체로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근거로 든 유지론(일본변호사연합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부담(국민의 경제부담) 경감”을 근거로 한 폐지·전환론이 우세를 점했다(동 제21회).

기존 급비제의 유지를 촉구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지역변호사협회의 결의·성명이 잇달았음에도 불구하고,³⁷⁾ 법조양성검토회는 “국가(최고재판소)가 사법수습생에 대해 그 신청에 따라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수습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를 신사법시험 합격자 대상의 신사법수습이 개시되는 2006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동 제23회·제24회). 이어 「재판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 12. 10. 법률 제163호)³⁸⁾에 의거, 최고재판소가 사법수습생에게 무이자 수습자금(사법수습생이 수

중 “司法修習生の給費制の在り方について” 부분 참조.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14/14gijiroku.html>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18/18gijiroku.html>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21/21gijiroku.html>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23/23gijiroku.html>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kentoukai/yousei/dai24/24gijiroku.html>

37) 「司法修習給費制の堅持を求める決議」(2003. 8. 22)

일본변호사연합회 : http://www.nichibenren.or.jp/ja/opinion/report/2003_43.html

「司法修習給費制の堅持を求める緊急声明」(2004. 6. 14)

일본변호사연합회 : http://www.nichibenren.or.jp/ja/opinion/statement/2004_15.html

38) 수상관저 : <http://www.kantei.go.jp/jp/singi/sihou/hourei/saibansyo-hou.html>

습에 전념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그 신청에 따라 대부하는 제도(대여제)를 정식 도입(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가 결정)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법 §67의 2, 부칙 1). 이로써 국가의 재정지원이 법과대학원에 더욱 집중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V. 국고지원의 방식과 기준

1. 사립 법과대학원지원경비 배분

사립대학등경상비보조금 중 법과대학원지원경비는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장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거하여 각 법과대학원 별로 배분된다.³⁹⁾

- ① 당해 연구과(법과대학원)의 수업 또는 연구지도를 행하는 전임교원의 수에 1인당 2,509,000엔을 곱한 액(α)을 산정한다.
- ② 당해 연구과(법과대학원)의 수용정원(재적학생수가 수용정원을 채우

39) 「私立大学等經常費補助金(私立大学教育研究高度化推進特別補助) 配分基準(平成17年度)」(2006. 2. 3. 高等教育局長)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zyuujitu/05071101.htm

「私立大學等經常費補助金(私立大學教育研究高度化推進特別補助) 配分基準(平成18年度)」(2007. 1. 23. 高等教育局長), 4-5쪽.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nkou/07021403/002/002/014/001.pdf

「私立大學等經常費補助金 配分基準別記7(特別補助)」(2008. 1. 日本私立学校振興・共済事業団), 18-19쪽.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 http://www.shigaku.go.jp/s_tokuhoh19y.pdf

지 못한 경우는 재적학생수로 함)에 1인당 122,000엔을 곱한 액(β)을 산정한다.

- ③ (a)와 (β)의 합계액에, <표 7>에 의거 당해 연구과(법과대학원)의 교육연구 활동상황을 기초로 산출되는 각 구간의 점수 합계액에 응하여, <표 8>에 의해 얻어지는 조정률을 곱한 액을 증액한다.

<표 7> 교육연구 활동상황 점수

구	분	점수
1. 수용정원에 대한 재적학생수의 비율(4점 만점)	94-106% 미만	4점
	88-94%미만, 106-112%미만	3
	82-88%미만, 112-118%미만	2
	76-82%미만, 118-124%미만	1
	76%미만, 124%이상	0
2. 입학생 중 실무 등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법학미수자의 비율(2점 만점)	32%이상	2점
	32%미만	0
3. 담당교원 수에 대한 재적학생수의 비율(4점 만점)	6명 미만	4점
	6-8명 미만	3
	8-10명 미만	2
	10-12명 미만	1
	12명 이상	0
4. 담당교원 수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교원 수의 비율(4점 만점)	25%이상	4점
	20-25%미만	2
	20%미만	0
5. ‘전문직대학원등교육추진프로젝트’ 법과대학원의 교육방법·내용 개발·충실 부문 단독채택 유무	단독으로 채택된 경우 2점	
6. ‘전문직대학원등교육추진프로젝트’ 법과대학원의 교육방법·내용 개발·충실 부문 공동채택 유무	공동으로 채택된 경우 1점	

- (주 1) 각 구간에 있어서, 해당하는 인원건수가 없는 경우 점수는 0점으로 함.
 (주 2) 3.에 있어서, 재적학생수가 수용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함.

<표 8> 점수 합계액에 따른 조정률

점수	조정률
13점	130%
12	120
11-10	110
9-8	100
7-6	90
5	80
4	70
3	60
2	50
1	40
0	0

2. 대여장학금의 종류와 액수

법과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대여는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생지원기구(<http://www.jasso.go.jp>)에서 담당한다. 여기에는 무이자 대여방식(제1종장학금)과 이자부 대여방식(제2종장학금)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2004년도 기준 월 8만7천엔으로 책정, 2005년도부터 8만8천엔으로 증액되어 현재(2008년도)에 이르고 있으며, 후자는 원래 월 5만엔·8만엔·10만엔·13만엔의 4종류였던 것이 법과대학원이 출범한 2004년도부터 각각 월 4만엔·7만엔의 증액대여를 신설하여, 법과대학원 재학생은 월 17만엔·20만엔까지 대여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2008년도부터는 원래의 월 5만엔·8만엔·10

만엔·13만엔 이외에 월 15만엔(신설)·19만엔(증액)·22만엔(증액) 등으로 선택폭이 재차 확대되었다(월 19만엔·22만엔의 경우는 법과대학원 재학생만 선택할 수 있음⁴⁰⁾).⁴¹⁾

한편, 상기 대여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기준과 가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무이자 대여방식(제1종장학금)은 이자부 대여방식(제2종장학금)보다 두 기준이 모두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가계기준의 경우, 무이자 대여방식은 본인·배우자의 연간 수입합계액 416만엔 이하(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541만엔까지 허용)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자부 대여방식은 본인·배우자의 연간 수입합계액 595만엔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⁴²⁾ 이자부 대여방식(제2종장학금)의 경우, 그 이율은 연리 3%를 상한으로 하되 재학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⁴³⁾ 무이자 대여방식(제1종장학금)과 이자부 대여방식(제2종장학금)을 병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가계기준이 본인·배우자의 연간 수입합계액 316만엔 이하로 강화되어 있다.⁴⁴⁾

대여장학금의 반환은 수령자로 하여금 반환서약서 제출 전 ‘릴레이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이 구좌에서 졸업 후 월부 출금되는 액수가 다시 차세대 장학생에게 ‘릴레이 대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⁴⁵⁾ 반환조건은 무이자 대여방식(제1종장학금)의 경우 월 12,571엔을 168회에 걸쳐 14년 동안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자부 대여방식(제2종장학금)의 경우 월

40) 일본학생지원기구 : <http://www.jasso.go.jp/saiyou/daigakuin.html#getugaku>

41) 앞 각주 24, 25, 26, 27, 28 소재 각 연도 자료 참조.

42) 일본학생지원기구 : <http://www.jasso.go.jp/saiyou/daigakuin.html#zsaiyoh>

43) 일본학생지원기구 : <http://www.jasso.go.jp/saiyou/daigakuin.html#zsaiyoh>

44) 일본학생지원기구 : <http://www.jasso.go.jp/saiyou/daigakuin.html#zsaiyoh>

45) 일본학생지원기구 : <http://www.jasso.go.jp/saiyou/daigakuin.html#henkan>

대여액에 따라 156회에 걸쳐 13년 동안 반환하는 것, 192회에 걸쳐 16년 동안 반환하는 것, 240회에 걸쳐 20년 동안 반환하는 것 등 세 종류가 있다 (수업연한 3년제 기준).⁴⁶⁾

3. 교육추진프로젝트 등 선정내역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대학원 교육추진프로젝트”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과대학원등전문직대학원형성지원프로그램선정위원회」가 법과대학원과 기타 전문직대학원으로 나누어 설치되는 「심사부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그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행 첫해인 2004년도의 사업은 “교육고도화추진프로그램”과 “실천적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동·단독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전자는 총 50건이 신청되어 그중 21건이 선정되었으며 후자는 총 46건이 신청되어 그중 27건이 선정되었다.⁴⁷⁾ 2005년도부터는 규모가 대폭 줄어서 공동 프로젝트 1건과 단독 프로젝트 3건이 신청되어 그중 공동 프로젝트 1건과 단독 프로젝트 1건이 선정되었다.⁴⁸⁾ 연도별 선정 프로젝트 내역은 <표 9> <표 10>과 같다.

46) 일본학생지원기구 : <http://www.jasso.go.jp/henkan/henkanrei/daigakuin/index.html>

47) 그 구체적 신청·선정상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houka/report/04091501/002.htm

48) 그 구체적 신청·선정상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할 것.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houka/report/05082601/002.htm

<표 9> 법과대학원형성지원프로그램 선정 프로젝트('04년도)49)

구분	공동 단독	참여대학	프로젝트 명칭
교육 고도 화추 진프 로그 램	공동	名古屋·早稲田·慶應義塾·上智·同志社·大阪·岡山·広島·香川·熊本·鹿児島大学	실무기능교육교재 공동개발공유 프로젝트
	공동	京都·東北·東京·一橋·名古屋·神戸·中央·早稲田·関西·関西学院大学	실무기초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조사연구
	공동	九州·熊本·鹿児島大学	쿠우슈우3대학 연계 법조양성프로젝트
	공동	國學院·東海·獨協·明治学院大学	공설법률사무소를 활용한 임상법학교육
	공동	専修·中央·鹿児島大学	지적재산에 관한 선단적 영상교재의 개발
	단독	東京大学	트랜스내셔널 로 프로그램즈
	단독	一橋大学	과목횡단적 법조윤리교육 개발프로젝트
	단독	名古屋大学	자신의 기량을 수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구축
	단독	京都大学	실천적 이론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단독	大阪大学	과학기술 리터리시를 구비한 선단적 법조양성
	단독	大阪市立大学	중소기업법 임상교육 시스템
	단독	大宮法科大学院大学	올데이 클리닉의 설계·시행·평가
단독	獨協大学	어린이 구제·지원 리걸 센터 구상- 어린이 구제·지원을 둘러싼 법실무와 법이론의 가교 및 법과 복지·의료·보건·교육 등 관련 제 영역의 이론과 실무와의 가교	

49)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houka/06052910.htm

			를 지향하여
	단독	慶應義塾大学	워크숍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전개- 국제성·학제성·선단성을 구비한 법조양성을 위하여
	단독	上智大学	중재·ADR·교섭의 연구와 실천
	단독	創価大学	법과대학원에 있어서 요건사실 교육의 충실과 발전
	단독	早稲田大学	국제/실무통합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독	桐蔭横浜大学	전문적·실천적 컴플라이언스 스킬 교육
	단독	同志社大学	국제적 시야와 판단력을 지닌 법률가 양성
	단독	立命館大学	국제공헌형 <지구시민법조> 양성 프로그램
	단독	関西学院大学	모의법률사무소에 의한 독창적 교육방법의 전개- 가상사건을 통한 이론실무의 총합적 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실천적교육추진프로그램	공동	新潟·九州·青山学院大学	재판과 법실무의 국제적 체험연수프로그램
	단독	北海道大学	데이터베이스 이용 총합 전자교육 시스템
	단독	千葉大学	「실천 케이스 스터디」의 개발
	단독	横浜国立大学	지속가능한 실무교육체제와 교재개발- 「요코하마모델」의 도입
	단독	新潟大学	법학미수자를 향한 도입교육프로그램 개발
	단독	金沢大学	호쿠리쿠(北陸) 법정보센터
	단독	島根大学	실무가와의 협동에 의한 리걸 클리닉
	단독	岡山大学	의료·복지에 특화된 지역연계형 법조교육- 다각연계형 의료복지 네트워크 세미나에 의한 실천적 교육 시스템 구축
	단독	広島大学	법률상담사례를 활용한 실무기초교육의 충실
	단독	香川大学	리걸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단독	熊本大学	사이버 클리닉 시스템의 구축- 21세기의 사법을 담당할 법조양성을 향해

단독	琉球大学	일미 간의 리걸 파트너십의 확립- 법과대학원에 있어서 단위호환제도를 향해
단독	東北学院大学	독자 영상교재 등에 의한 학습지원체제의 고도화
단독	駿河台大学	법학초학자 학습지원 시스템의 개발
단독	学習院大学	철저한 소수인교육에 의한 법조육성
단독	中央大学	법조양성을 위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형성
단독	東海大学	지적재산법의 구미형 실천교육 프로젝트
단독	日本大学	지적재산교섭 룰 플레이
단독	明治大学	「프로세스」 학업평가 시스템
단독	明治学院大学	원격수업 시스템과 IT를 활용한 실무교육 - 임상실무 및 실무관련과목의 충실을 위하여
단독	立教大学	원 소송자료 온라인 공유 시스템의 구축
단독	山梨学院大学	법실무교육 버추얼교재 개발과 지역이용
단독	中京大学	시각장애인교육에 관한 추진 프로그램
단독	南山大学	IT 활용에 의한 교육학습기회의 확충- 법률기본과목군의 효율적 자학자습의 실현에 관하여
단독	名城大学	사회인 법조양성 실천 프로그램
단독	関西大学	사법과소문제 해소에 공헌하는 법조의 양성- 「리걸 클리닉」의 지방전개
단독	近畿大学	기초지역 및 학습도달도 확인 시스템 구축

<표 10> 법과대학원형성지원프로그램 선정 프로젝트('05년도)⁵⁰⁾

공동 단독	참여대학	프로젝트 명칭
공동	静岡·新潟·北海 学園大学	지역의 국제화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독	筑波大学	야간사회인학생용 실천적 학습지원 시스템- 고속네트통신 활용에 의한 리걸 클리닉 지원시스템과 학외학습 보조시스템의 개발

VI. 한국 현실에 대한 시사점

1. 국가간여에 상응한 재정지원 요청

로스쿨 제도의 도입·운영에 대한 국가의 간여 정도를 따졌을 때,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인가주의’를 취한 우리의 경우가, ‘변호사협회’ 주도의 ‘준칙주의’를 취한 미국이라든가, ‘정부(문부과학성)’가 주도하되 ‘준칙주의’를 취한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총 입학정원 2,000명의 경직적 한계 속에서 지방 뿐 아니라 여성(교원/학생)과 사회적 약자(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까지 대학 측에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유례없이 강력한 국가통제 방식으로 -그것도 대학 측의 대가없는 희생을 전제로- 진행된 것 또한 분명하다. 미국일본의 경우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국가의 개입강도에 비례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0) 문부과학성 :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houka/report/05082601/003.htm

담분(장학금)이 508만7천원, 학생부담분이 933만6천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일본 법과대학원의 1인당 연간납부액(국공립 80만4천엔, 사립[평균] 138만엔, 전체[평균] 119만1천엔)과 대비하더라도 결코 낮지 않은 금액인데, 일본에서는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경상비보조금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고(1인당 약 50만엔의 수업료 인하 효과) 또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의한 무이자이자부 대여장학금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순전히 대학(장학금)과 학생 개인의 부담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표 12>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주요현황 분석(교육과학기술부자료 기초)

대학명	입학 정원	전액장학 생비율	연간등록금[만원] (총액 : 학교부담분/학생부담분)	입학금 [만원]
강원대(국)	40	100%	1,000(40,000 : 40,000/0)	18.6
경북대(국)	120	21.3%	1,014(121,680 : 25,918/95,762)	17
부산대(국)	120	30%	945.6(113,472 : 34,042/79,430)	19.1
서울대(국)	150	25.2%	1,350(202,500 : 51,030/151,470)	30
서울시립대(공)	50	41.9%	910.6(45,530 : 19,077/26,453)	19.4
전남대(국)	120	24.7%	963.2(115,584 : 28,549/87,035)	18.6
전북대(국)	80	20.1%	930(74,400 : 14,954/59,446)	20
제주대(국)	40	32%	1,000(40,000 : 12,800/27,200)	18.7
충남대(국)	100	31.4%	863(86,300 : 27,098/59,202)	19
충북대(국)	70	25%	980(68,600 : 17,150/51,450)	20
건국대(사)	40	75%	1,600(64,000 : 48,000/16,000)	92.6
경희대(사)	60	25%	1,760(105,600 : 26,400/79,200)	100
고려대(사)	120	20%	1,900(228,000 : 45,600/182,400)	113
동아대(사)	80	34.2%	1,800(144,000 : 49,248/94,752)	80
서강대(사)	40	37.5%	1,440(57,600 : 21,600/36,000)	120
성균관대(사)	120	37.3%	2,000(240,000 : 89,520/150,480)	100

아주대(사)	50	25%	1,800(90,000 : 22,500/67,500)	100
연세대(사)	120	32%	1,950(234,000 : 74,880/159,120)	292.5
영남대(사)	70	48.8%	1,840(128,800 : 62,854/65,946)	80
원광대(사)	60	43%	1,500(90,000 : 38,700/51,300)	100
이화여대(사)	100	41.7%	1,680(168,000 : 70,056/97,944)	100
인하대(사)	50	44.7%	1,800(90,000 : 40,230/49,770)	100
중앙대(사)	50	55.1%	1,530(76,500 : 42,151.5/34,348.5)	150
한국외대(사)	50	20%	1,600(80,000 : 16,000/64,000)	160
한양대(사)	100	55%	1,800(180,000 : 99,000/81,000)	100
국공립	890	35.16%*	$\frac{1,020.3^{**}}{270,618[304.1]/637,448[716.2]}$	20.04*
사립	1,110	39.62%*	$\frac{1,780.6^{**}}{746,739.5[672.7]/1,229,760.5[1107.9]}$	119.2*
총계	2,000	37.84%*	$\frac{1,442.3^{**}}{1,017,357.5[508.7]/1,867,208.5[933.6]}$	79.54*

※ 연간등록금은 국공립대 : 수업료+기성회비, 사립대 : 수업료

*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한 수치임.

** 1인당 연간등록금(∑학교별정원×학교별등록금 값을 전체정원으로 나눔).

3. 대학학생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강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은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면서(법 §3),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법 §3②). 그러나 기실, 국가의 법과대학원·법과대학원재학생에 대한 ‘의미 있는’ 재정지원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동 법률은 “법과대학원의 물적 기준”을 정하면서(법 §17),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

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제를 오로지 대학 측에 떠넘기고 있다(법 §17②).

일본 법과대학원의 경우, ①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경 상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그 학비격차를 줄이고(국가/대학지원), ② 일본학 생지원기구의 대여장학금 사업 확충을 통해 그 학비부담을 완화하고(국가/ 학생지원), ③ 개별 법과대학원의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비부담 문제를 보 완하는(대학/학생지원) 방식으로 재정지원·경제부담이 단계화·분산되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①②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오로지 ③의 한 점에만 모든 경제적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개인 과부하’ 체 제는 불원간 ‘악한 축’에서부터 오작동·고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한편으 로는 대학의 재정악화와 장학금 편중문제(“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 를 일으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진 법조인의 극단적 이익추구 경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쏟아 부은 본전생각에 기울어질 정의의 저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 그 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법치인프라 구축 및 법조시장 경쟁력강화라는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문화되 다시피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법조인 양성 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경 상비보조금 지원과 유사한 방식으 로, 국공립과 사립 사이의 학비격차(1인당 연간등록금 국·공립 1,020만3천 원, 사립 1,780만6천원)를 줄이고, 특히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중한 장학 금 부담(1인당 연간등록금 중 학교부담분[장학금] 국·공립 304만1천원, 사립 672만7천원)을 덜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해서도,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의한 대여장학금 제도를 참고하

여, 다양한 형태의 장기저리 학자금대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별도의 국가연수제도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일본은 1년의 사법수습 규정), 그 한도에서 실무연수교육의 일정부분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맡겨져 있는 셈이며,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및 그 재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가일층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기존 사법연수원이 판사 검사연수기관으로 기능한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변호사연수까지 국가에서 일괄 담당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존 사법연수원 관련 예산의 예상되는 감액부분(특히 연수생봉급수당)을 법학전문대학원 및 그 재학생 지원에 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2008. 2. 18] 참조). 여기에는 사법수습생 급비제를 대여제로 전환한 일본의 경험도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4. 재정지원 규모·기준에 대한 고려

재정지원 규모·기준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험 가운데 수정해야 할 점은 다음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일본의 경우 국공립 법과대학원은 학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고 원칙상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원은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경상비보조에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도 사립과 마찬가지로 각각 처한 재정여건이라든가 학비·장학금기준에 편차가 매우 크므로, 국공립이라고 하여 국고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를 제외한 국립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두 지방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에 있어 일본처럼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여부가 일률적 판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체 국고지원 액수를 획정함에 있어서도 일본의 예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구총생산·재정규모 등의 차이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혹심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소송건수증가율 및 사법작용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법치기반=공공인프라’로서의 의미 또한 국가 재정지원 총액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연간 2,000명이라는 전체 학생수는 엄격한 정원통제=인가주의의 소산임에 비추어, 이 숫자를 연간 5,795명의 일본 경우와 단순 비교하여 재정지원 총액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본다.

셋째,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경상비보조 배분기준(앞 V. 1. 참조), 특히 이를 교원 수와 학생 수에 따라 각각 약 20 : 1 비율(교원 1인당 2,509,000엔 : 학생 1인당 122,000엔)로 할당하는 기준은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입학정원 100명 미만의 중소형 법과대학원은 준칙주의 범위 내에서 개별 대학이 선택한 결과인 반면, 우리의 경우 그것은 엄격한 정원통제=인가주의의 결과로 개별 대학에 강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중소형 법학전문대학원에 떠넘겨진 ‘규모의 불이익’(특히 교원/학생비율의 과잉)을 고려하고, 오로지 학생 측에 넘겨진 학비부담과 오로지 대학 측에 넘겨진 장학금 부담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배분에서는 ① 교원/학생비율과 ② 학비/장학금총액의 두 기준이 주요지표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토 론 문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발제문을 통해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가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다.

법과대학원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구성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곳으로서 “공공성의 공간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공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그 의미를 고려한 특수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도 전체에 걸쳐서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지원(경상비 보조), 학생에 대한 지원(장학금 지원), 교수에 대한 지원(형성지원) 등이 그것이다.

법과대학원 학생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왜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해 지원하는가? 사립 법과대학원도 국립 법과대학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데도 구조적으로 등록금이 국립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으므로, 그 차액만큼은 보전해주어야 공평하기 때문이다. 왜 교수들에 대해 지원하는가?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그 노력을 지원해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조치이다. 21세기에 필요한, 질과 양 모두 풍부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새로운 틀을 도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가지만 학생과 대학과 교수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워야 하니,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본 변호사단체들의 처신이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일변련과 나고야 변호사회의 성명도 생각해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법과대학원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며, 법과대학원생은 예비변호사이다. 기존의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 낳는 일’을 해주는 곳이며, 장래의 후배이다. 좋은 자식, 좋은 후배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부모라면, 선배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그러니 변호사단체야말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과대학원을, 그 학생들을 지원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한 것이다.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이런 지원 속에서 ‘새로운 교육’의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학생이 바뀌었고, 교수가 바뀌었고, 그래서 강의실이 바뀌었다. 법과대학원제도를 열심히 챙기고 있는 일본의 법학교수들은 입을 모아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이 사법시험 출신 법률가들 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물론 문제는 있다.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편으로, ‘질이 떨어진다’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기댄 법무성과 일부 변호사단체들의 숫자 통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까닭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법시험은 여전히 최고 3,000명으로 묶여 있는 정원제 선발시험에 머물러 있고, 그 3,000명조차도 더 줄이려고 하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도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낡은 ‘기득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도는 탄탄하다.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받은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 길게 보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그 성과가 만들어낼 미래의 일본 법률가는 ‘괄목상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한국의 현실로 돌아오면 대비가 너무나도 선명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서는, 국가,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는 하다(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하지만, 발제문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과정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국가통제 방식”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강도에 비례한 재정지원”은 커녕 모든 부담을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에게 떠넘겨 “대가없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돈스쿨’이 아니냐는 비난이 확산되자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서둘러 대여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이 입학한 지금까지 그 제도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교수들에 대한 지원은, 법과대학원의 교재 개발 사업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로부터 끌어온 10억원(2008년 5억원, 2009년 5억원)이 전부이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역시 전무하다. 판사·검사 파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변호사단체들이 법과대학원 교원이 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법과대학원측에 제공한 것과는 달리, 한국의 변호사단체들이 실무교원 충원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와준 것은 없다. 한국의 변호사단체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실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변호사단체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 교육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¹⁾ 「법률」에 의해 대한변협 소속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그 평가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정착을 위해 실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평가와 관련하여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발목은 많이 잡았다. 대법원은 총입학정원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제장치를 발명해냈다. 대한변협은 그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니 “1,200명”이라고 법률에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총입학정원을 가급적 적은 수로 정하도록 ‘협의’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도 2년간 변호사수습을 거쳐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원서접수율을 한껏 떨어뜨려 놓았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보다 더 ‘무거운’, 법조가 관리하는 시험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을 만들었으며,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보다도 더 강화된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냈다.

1) 다만, 사법연수원은 2008년 9월 22일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설명회를 한 차례 개최한 적이 있다.

3.

왜 이렇게 되었나? 토론자가 누누이 강조했듯이²⁾ 총입학정원 때문이다.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숫자 통제라는 낡은 폐습을 버리지 않은 때문이다. 새 술을 헌 부대에 쭈서 넣으려고 한 때문이다.

총입학정원이 도입되는 순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기준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인가를 받고자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기준의 충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단지 ‘선착순’의 순위 안에 드는 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입학정원의 정신’은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이미 설치인가기준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다. 인가심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는 그것을 더 끌어올렸다. 법학교육위원회로서는, 마치 사법시험 출제 위원들이 ‘뒷탈’이 없도록 시험을 어렵게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방어벽’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은 그 천정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웠고, 또 대학 내의 다른 영역들에 지웠다. 그래도 적자이다. 그리고 적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게 된다. 그래서 부담의 전가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총입학정원의 구조 속에서는 지원 요청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독과점의 특혜’를 누리는 특권층이 되어 버렸다. 비슷한 수준임에도 총입학정원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안팎으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보니 ‘법학전문대학원의 홀로 뒤집어쓰기는 독과점의 특혜를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총입학정원은 한국 로스쿨제도 전체에 대한 심각한 족쇄일 뿐만 아니라, 인가받은 로스쿨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희망은 있다. 치이다 보면 ‘헝그리 정신’이 더 강하게 발동하는 법이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예비강의를 해보고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교수들도 조금씩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다. 무엇보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로스쿨’에 들어선 다양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마침내 ‘로스쿨’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등장했다.

하지만, ‘헝그리 정신’은 희소한 영웅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탄탄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제도의 맹점은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다. 총입학정원을 폐지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높아진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인식, 법학전문대학원이 하는 일이 공적인 일이라는 인식,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과 교수들에 대해 그 역할에 걸맞는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사회적 과제이다. 하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법률가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과 학문(법학)의 구성원들에게 있다. ‘로스쿨’과 ‘비로스쿨’로 나뉘어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만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가 잘 해야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가양성제도 전체를 챙겨야 한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2) 「법학전문대학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憲法學研究』(韓國憲法學會), 10-4, 2004.12 ; 「사개추위 초안의 구조적 문제점」, 『법과사회』 28, 2005.6 ;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 논의」, 『法學研究』(부산대) 48-1, 2007.8 ; 「한국의 법조시험」, 『사회와 역사』 77, 2008.3 ; 「韓國における로스쿨制度の導入」, 『法社会学』(日本法社会学会) 69, 2008.9

법학전문대학원의 국고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오세희(인제대학교 교수)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두 분 발표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발표 원고에 대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 해 처음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당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가장 큰 숙제중의 하나가 발표자들께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재정적인 부분일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및 미국의 법학교육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록 미국과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와는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잘 벤치마킹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낼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리의 개발, 재정지원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로 하여금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대상, 분야,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넘어서 정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어떠한 논리와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기능이 외부효과(externality)를 지니고 있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대학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을 들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최고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 학생의 등록금이 비싸게 되고, 가정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대학교육 기회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에 의한 경제적 재생산구

조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학생 개인에게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실질적인 근거로서 헌법을 비롯한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률을 들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대학교육 재정운영의 현실적 여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재원은 공적 지원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충당되어 왔기에 재정이 열악한 편이다. 특히 학생등록금에 의한 의존도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편이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의 향상을 위한 대학의 노력도를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거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통한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은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의 비교

구분	간접지원	직접지원
의의	정부가 중간기구를 통해 대학에 지원	정부가 개별대학에 직접 지원
주관 기관	한국사학진흥재단,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 부처소속 기관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중심)
주요 사업	대학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한 자금의 용자사업(사립의 경우), 연구비 지원	대학교육역량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

또한 재정지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 교수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국고지원 필요성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사회적으로 외부효과를 유발하고,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Affirmative Action)에서 학교에 대한 고등분담도 필요하나 정부의 책무성 역시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법률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고등교육재정 운영상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비 지급 등과 같은 방안 보다는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점점 더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종근 교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듯이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학정책의 방향은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연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법조인 양성이란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소요 예산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